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386호

2016. 12. 22.(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6-2462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
제2016-2472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6
제2016-2473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

◆ 고 시

제2016-409호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8
제2016-411호 도시계획시설(장충단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6
제2016-412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17
제2016-413호 천왕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8
제2016-414호 상계·장암 도시개발구역 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실시 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20
제2016-415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지형도면 고시 (연세대학교)	53
제2016-416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9
제2016-417호 문정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65
제2016-421호 도시관리계획(북창 지구단위계획 및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34

◆ 공 고

제2016-244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49
제2016-2461호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업체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149
제2016-2464호 서울도시철도 9호선 2단계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위한 열람공고	152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16-19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 공고	162
-----------------------------------	-----

◆ 구 고 시

제2016-118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중구)	163
--	-----

제2016-121호 도시관리계획(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중구)	166
제2016-6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중랑구)	170
제2016-183호 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성북구)	172
제2016-163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도봉구)	175
제2016-11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노원구)	177
제2016-165호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마포구)	180
제2016-18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로구)	184
제2016-18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강동구)	186

◆ 구 공 고

제2016-1242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공고(마포구)	187
제2016-1103호 용봉정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열람공고(동작구)	189
제2016-1523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완료 공고(서초구)	189
제2016-148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강동구)	190
제2016-149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강동구)	196

◆ 사업소고시

제2016-28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97
제2016-28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97

◆ 사업소공고

제2016-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관악소방서)	198
-------------------------------------	-----

◆ 기 타

제2016-1호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고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99
제2016-446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99
제2016-456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0
제2016-457호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0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62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16.7.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
- 나. 벽면 이용 간판에 디지털광고물 설치·표시 근거 마련(안 제3조제3항 신설)
- 다. 지주 이용 간판에 디지털광고물 및 전자게시대 설치·표시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신설)
- 라.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로 변경(안 제22조)
- 마.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확대(안 제24조)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3층, 우편번호045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빛정책과(전화 02-2133-1932, FAX: 2133-0844 E-mail: ho1818@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옥외광고물 표시 방법 등 조례 개정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도시계획국장 김학진,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광고물팀장 이양섭, 담당 김호곤)							
4. 근거법령명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조의2, 제1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제 20조제2항, 제36조제6호				관 련 규제수		5건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25개구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가 필요한 자 ※ 조례안 검토 작성 시 옥외광고관련 4개 단체 자문회의 개최로 의견 반영							
6. 규제존속기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폐지 시까지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벽면 이용 간판에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 규정(안 제3조제3항) ○ 지주 이용 간판에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 및 전자게시대 설치·관리방법 규정(안 제9조제1항 및 제3 항) ○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지주 이용 간판, 전자게시대 등 을 안전점검대상 확대(안 제24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규정(안 제27조) ○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이행강제금 규정(안 제27조 의2)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 신설의 필요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디지털광고물이 “벽면 이용 간판, 지주 이용 간판 및 전자게시대” 등에 허용되어,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빛 공해로 인한 시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거나 도시미관 저해 등이 예상되는 디지털광고물이 최소한으로 적용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 또한 시내 곳곳에 이러한 옥외광고물이 설치되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을 확대·강화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허용하고 있는 디지털광고물에 대하여 시·도 조례로 위임된 표시방법 등을 정하는 것으로 화면변환 또는 동영상 변화가 되는 옥상간판과 같이 생활형 간판이 다수 설치된다면 이로 인한 생활환경을 침해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벽면 이용 간판, 지주 이용 간판과 현수막을 대체하는 전자게시대 등에 대한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표시방법을 제한하고,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으로 허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고,
- 이러한 옥외광고물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등을 감안하여 우리시 조례에서 정하여 허용하는 디지털광고물을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을 확대·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이 도모되어야 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해당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상위법령에서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적근거가 객관적이고 명확함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72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사업소 부서 신설 및 부서간 업무 조정 등 기구조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가. 개장 예정 서울문화비축기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내 서울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를 신설
 - 나. 지역보건의료 행정계획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과장의 역할 성격을 고려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행정·기술 복수직렬 지정
 - 다. 행정환경과 수요변화를 고려한 부서(기관) 간 소관 업무 조정사항 등 반영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2133-6732, FAX: 2133-0822, E-mail: jspark3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73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행정수요 증가 및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 정원을 17,471명에서 17,521명으로 50명 증원하고, 인력 재배치를 위한 직급조정 실시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관리기능 및 소방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총 정원 50명 증원(일반직 +1, 연구직 +4, 소방공무원 +45)

나.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한 직급·직렬 조정 및 관리기관간 정원 이체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2133-6732, FAX: 2133-0822, E-mail: jspark3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09호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9호(2007.08.23.)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2호(2013.07.25.)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마포구 아현동 613-10번지	6,217.32	-	6,217.32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6,217.32	－	6,217.32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217.03	－	1,217.03	19.57	
	도 로	847.53	－	847.53	13.63	
	녹 지	369.50	－	369.50	5.94	
획 지	소 계	5,000.29	－	5,000.29	80.43	
	대 지	5,000.29	－	5,000.29	80.43	

2) 용도지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217.32	-	6,217.32	100.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217.32	-	6,217.32	100.0	

3)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사용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1	13	10	국지 도로	일반도로	243	아현동 738-2	아현동 613-1	-	서고412호 (81.11.13)	
기정	소로	1	-	10	국지 도로	일반도로	56	광로 3-293	소로 1-13	-	서고 2007-279호 (07.08.23)	
기정	중로	1	23	20~25	집산 도로	일반도로	164	아현동 617-70	아현동 795	-	서고 2005-443호 (05.12.29)	
기정	소로	1	12	10	국지 도로	일반도로	56	아현동 617-49	아현동 617-53	-	서고412호 (81.11.13)	

나) 녹지 : 변경없음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63	녹 지	아현1녹지	아현동 737-9번지 일대	1,332 (92.2)	건고 345호 (79.09.21)	
기정	63	녹 지	아현4녹지	아현동 735-1번지 일대	698 (277.3)	건고 345호 (79.09.21)	

※()는 구역 내 면적임

다)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 변경없음

구 분	시행면적(㎡)	대지면적(㎡)	정비기반시설(㎡)	부담률(%)	비고
기정	6,217.32	5,000.29	1,217.03	19.57	※ 마포로3구역 정비기반시설 부담 기준(순부담률): 19.35% 이상

4) 도시계획시설계획

○ 철도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철도	도시철도 (애오개역)	아현동 612번지 일대	4,738.71	1991.04.01 (건고 제1991-151호)	
변경	철도	도시철도 (애오개역)	아현동 612번지 일대	4,771.71	1991.04.01 (건고 제1991-151호)	철도시설 면적 변경 : 4,738.71㎡ → 4,771.71㎡ (증33.0㎡) 1번출입구 입체결정 50.7㎡

○ 도시계획시설(철도) 입체적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철도	아현동 612번지 일대	면적(㎡)	－	－	50.7	1991.04.01 (건고 제1991-151호)	
			길이(m)	－	－	15.4		
			폭(m)	－	－	3.3		
			높이(m,지하)	－	－	24.4~15.9		
세부 사항	기 정			변 경			지상권설정	
				애오개역 1번출입구 입체결정 범위 － 지상부 : A=50.7㎡ H=21.2m~24.4m － 지하부 : A=50.7㎡ (지상중복 50.7㎡) H=15.9m~21.2m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없음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동)					비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마포로3구역 제3지구	6,217.32	획지	5,000.29	마포구 아현동 613-10번지	38	-	-	33	5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 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마포로3구역 제3지구	6,217.32	획지	6,217.32	아현동 613-10번지	공동주택	56 이하	520 이하	70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기정 - 공동주택(104세대) : 17,653.91㎡ - 오피스텔(200실) : 16,594.18㎡ - 판매시설 : 7,796.13㎡				• 변경 - 공동주택(239세대) : 36,604.83㎡ - 판매시설 : 4,263.61㎡			
임대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2006.1.1.)4조)							

6)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 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기 정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변경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104세대	
변 경	"	정비계획변경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	239세대 (증 135세대)	

2.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로3구역 제3지구에 대하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변경지정하는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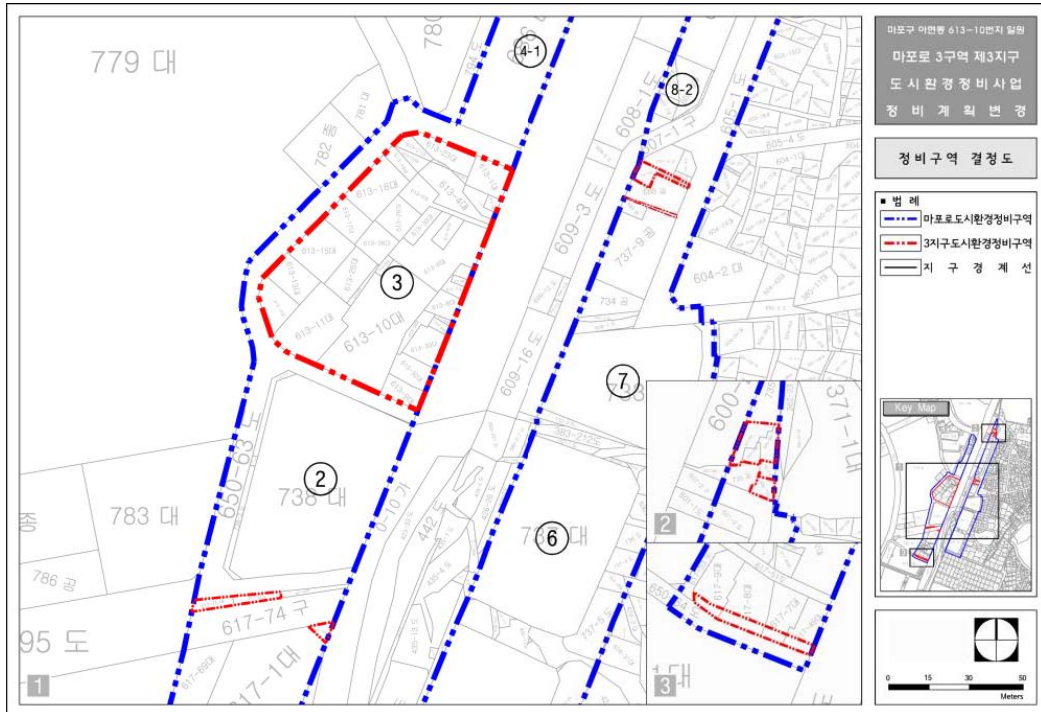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지형도면 및 정비계획결정도
 -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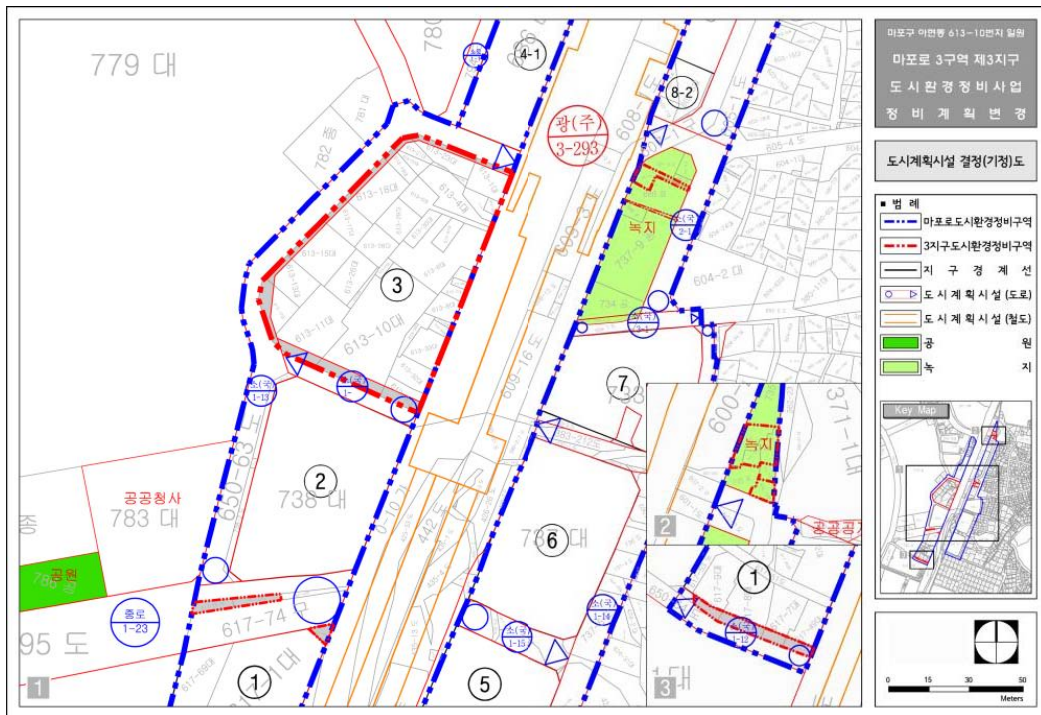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2133-4644)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3153-9364)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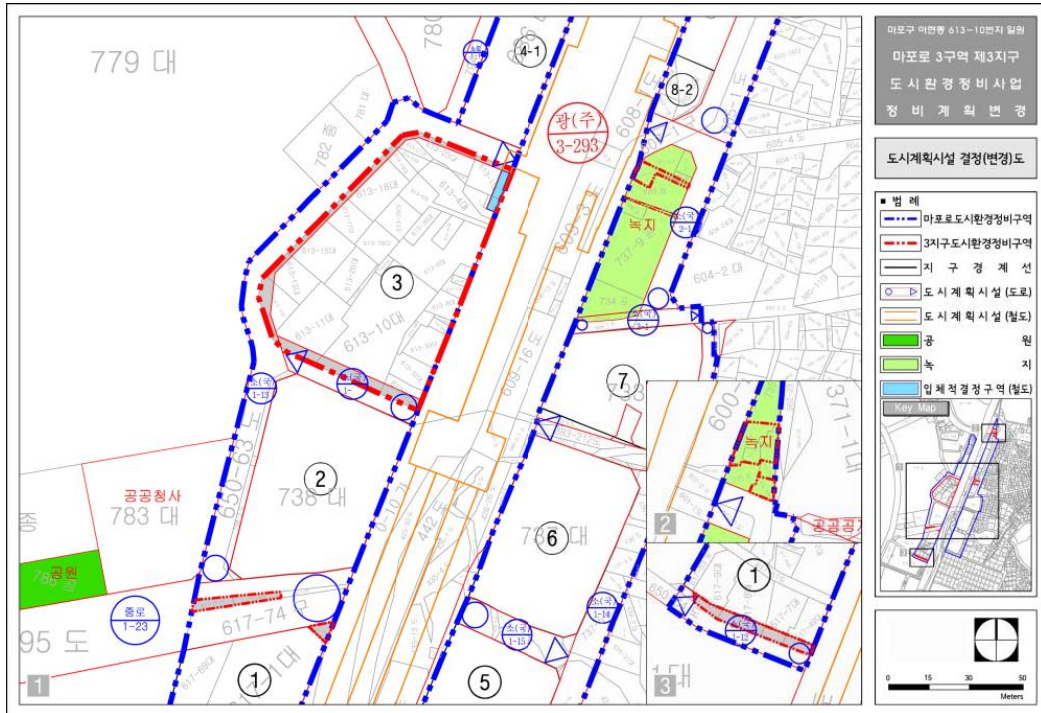
■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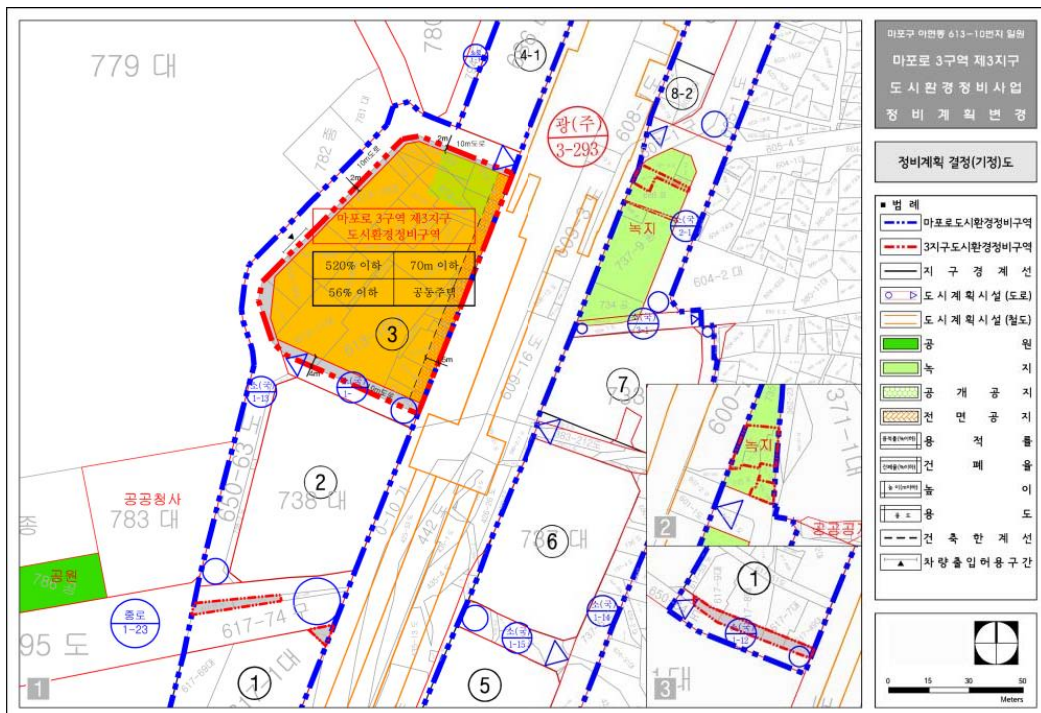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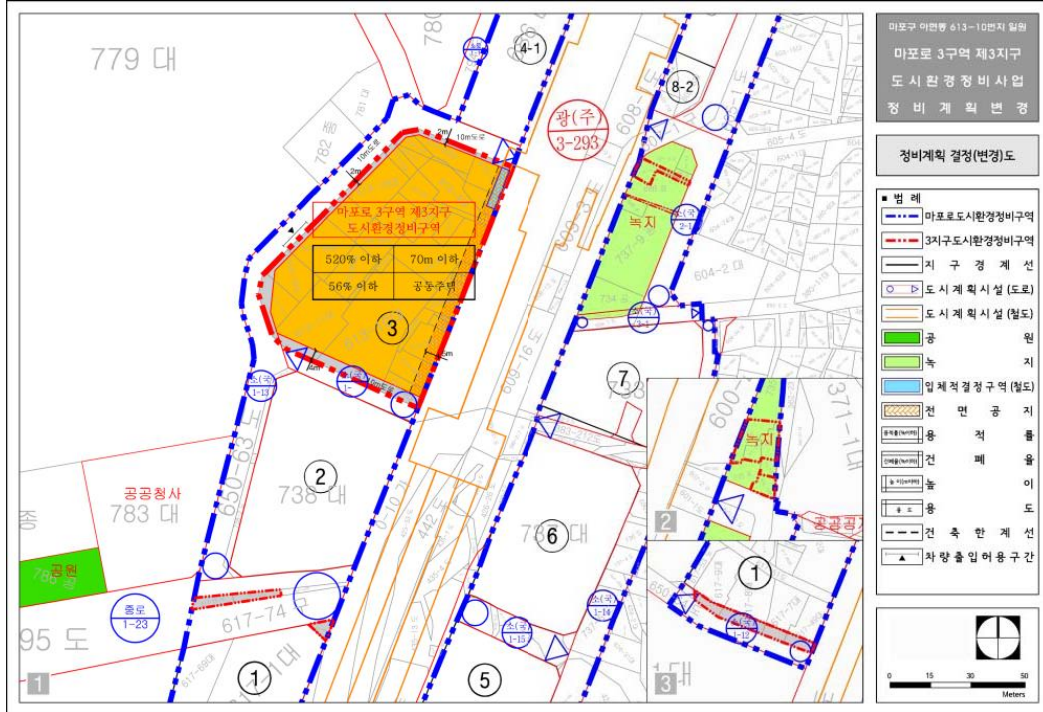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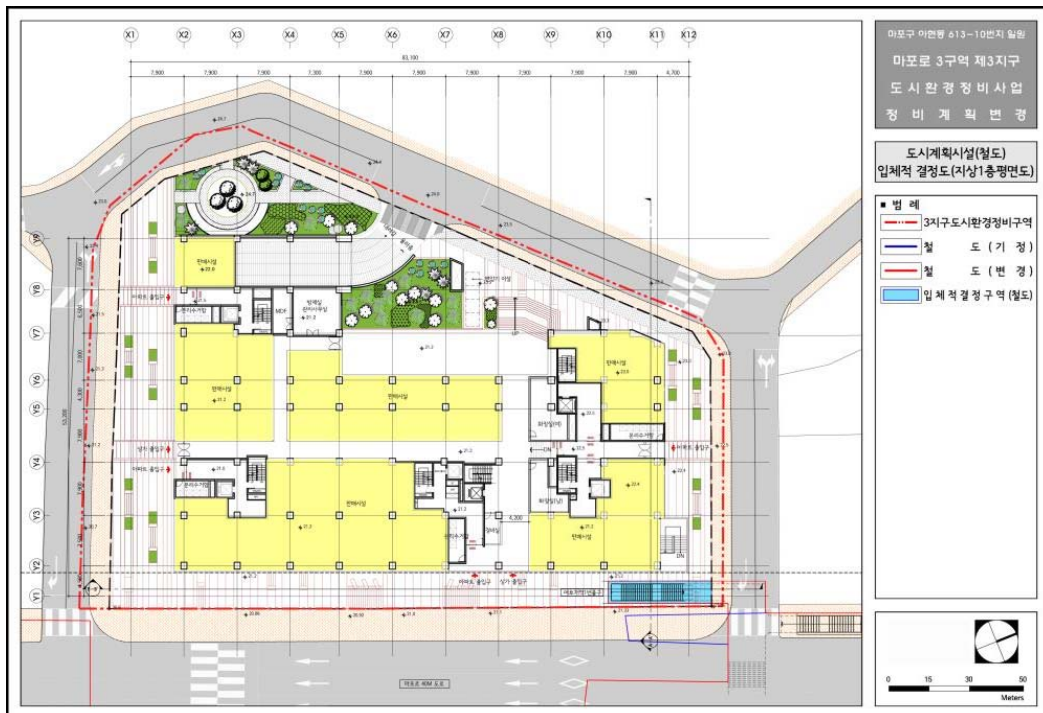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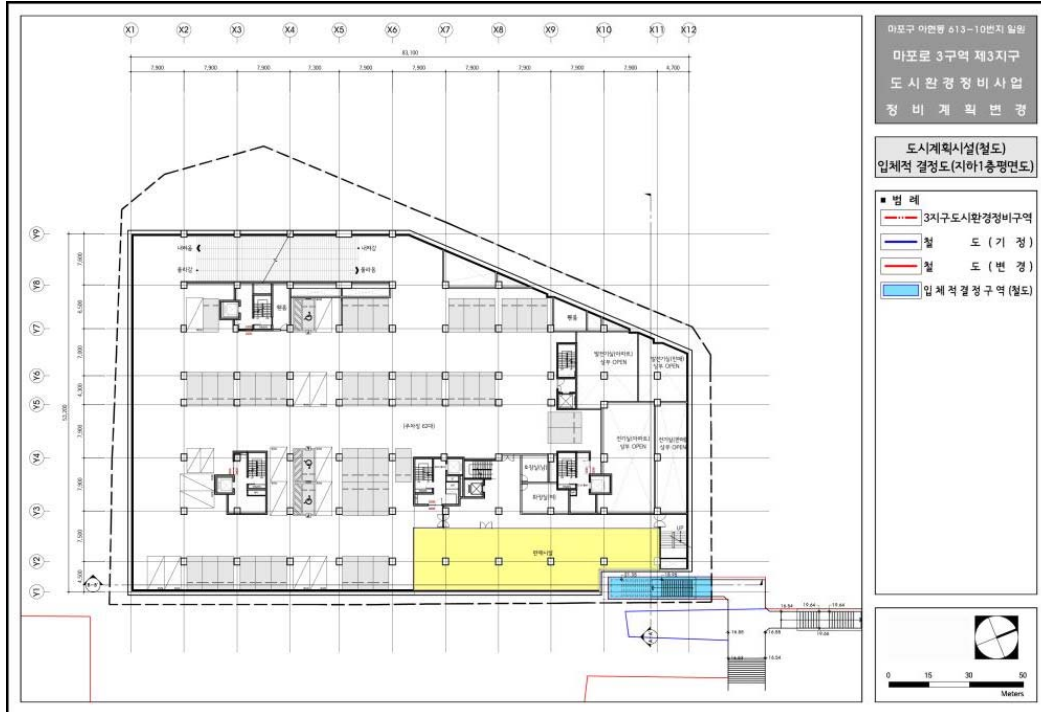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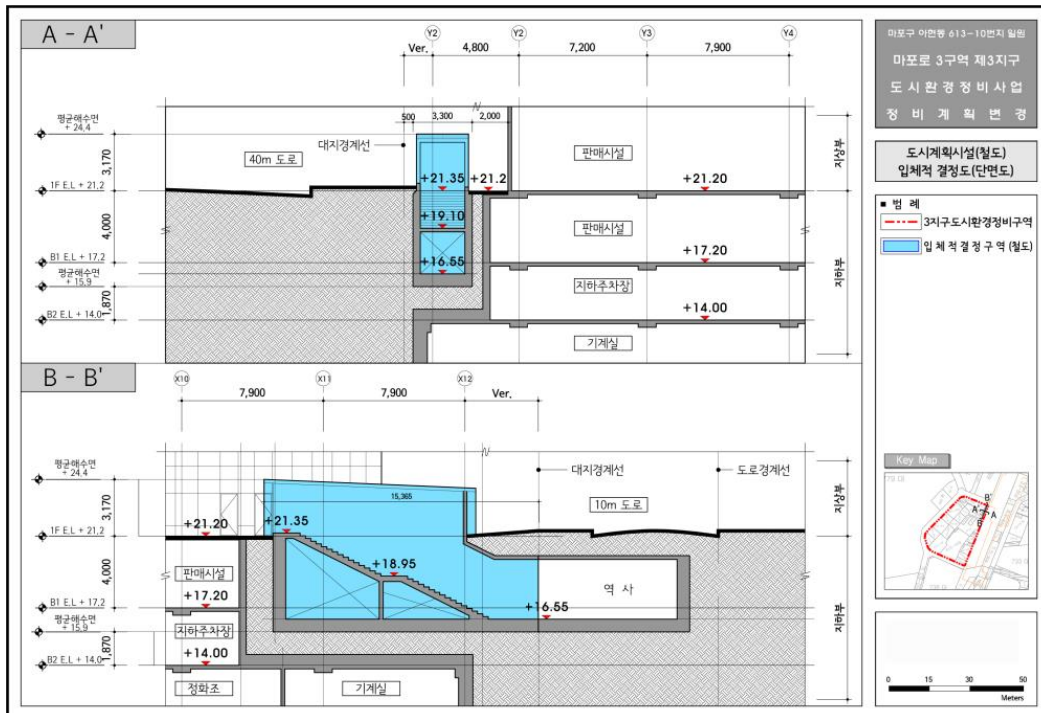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철도) 입체적 결정도(지상1층 평면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입체적 결정도(지하1층 평면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입체적 결정도(단면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11호

도시계획시설(장충단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호(2009. 1. 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72호(2009. 9. 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50호(2014. 10. 1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2014-408호(2014. 11. 27)로 실시계획 인가 된 중구 장충동2가 산14-67번지 일대 장충단공원 내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공연장 건립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67번지 외 2필지(산14-68, 산14-2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장충단공원)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공연장 건립공사

3. 사업의 규모

- 가. 증축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국립중앙극장	12,129.88	37,928.05	12,129.88	37,928.05	변경없음

나. 주요내용

- 전속단체공연장 증축 3,967.98㎡, 해오름극장 화장실 등 증축 638㎡
- 전속단체공연장 지상부 광장 및 녹지조성, 별오름극장 연면적 정정(감 0.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국립중앙극장 대표 안호상
-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67번지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 초 : 인가일로부터 ~ 2016. 12. 31일까지
- 변 경 : 인가일로부터 ~ 2018. 12. 31일까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02-3783-59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12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장

(단위 : 천원)

연 번	회 계 별	예 산 액
	계	29,809,472,443
1	일 반 회 계	20,971,200,741
2	기타특별회계	8,065,955,702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268,099,000
	(2) 교통사업특별회계	1,227,534,663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2,879,000
	(4) 주택사업특별회계	1,392,577,437
	(5) 도시개발특별회계	1,361,208,270
	(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81,882,000
	(7)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54,950,384
	(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34,190,048
	(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0,900,900
	(10) 소방안전특별회계	721,734,000
3	공기업특별회계	772,316,000
	(11)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316,000
	(12) 수도사업특별회계	772,000,0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13호

천왕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372호(2004.11.20)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20호(2005.12.29)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54호(2006.12.28)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69호(2007.12.20)로 도시개발구역 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36호(2008.12.04)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7호(2011.1.6)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52호(2011.12.1)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31호(2012.08.30)로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39호(2012.12.20)로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66호(2013.12.26)로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09호(2014.11.27)로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66호(2014.12.26)로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06호(2015.12.25)로 고시된 천왕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천왕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천왕 도시개발구역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천왕도시개발사업구역	서울시 구로구천왕동, 오류동 일원	484,477.1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낙후된 취약지역을 개발·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대표자의 성명 : 변 창 흡

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변경)

- 사업 시행기간 : 기정-2004.11.20 ~ 2016.12.31.
변경-2004.11.20 ~ 2017.12.31
- 사업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바.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 생략

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생략

아.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생략

2. 천왕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천왕도시개발구역

나.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낙후된 취락지역을 개발·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다.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천왕도시개발사업구역	서울시 구로구천왕동, 오류동 일원	484,477.1	

라. 시행자 (변경없음)

-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번지)
- 대표자의 성명 : 변 창 흠

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변경)

- 사업 시행기간 : 기정-2004.11.20 ~ 2016.12.31.
변경-2004.11.20 ~ 2017.12.31
- 사업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생략

사.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변경없음) : 생략

3. 기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 생략

가. 개발계획 관련 결정도

나. 실시계획 관련 결정도

다. 지형도면

4. 인가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 공람기간 : 14일 이상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 02)2133-4647)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 02)860-2944)
 - SH공사 택지사업본부 택지계획부 (☎ 02)3410-7598)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14호

상계·장암 도시개발구역 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90호(2004.9.1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07호(2005.12.22)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87호(2007.12.27)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94호(2009.7.23)로 구역지정 변경,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29호(2009.9.3)로 개발계획 변경·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71호(2010.7.15)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16호(2011.07.28.)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09호(2012.8.2)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62호(2012.12.27.)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65호(2013.12.26.)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44호(2014.12.18.)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05호(2015.12.24.)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상계·장암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7조에 따라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상계·장암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상계·장암도시개발구역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상계·장암 도시개발구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00-1번지 일원 및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86번지 일원	267,455	증) 89.9	267,544.9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국민임대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대표자성명		주 소	비 고
기정	SH공사 사장 변 창 흡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경기도 의정부시장 안 병 용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2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 창 흡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경기도 의정부시장 안 병 용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2	

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1) 시행기간(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기간	2004.09.18. ~ 2016.12.31	2004.09.18. ~ 2017.12.31	

- 변경사유서 : 미매각용지 용도변경 및 단계별 준공처리 등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2) 시행방법(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증감 (㎡)	비고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총계	267,455	100.0	267,544.9	100.0	증) 89.9	
주택건설용지	122,857	45.9	122,857.7	45.9	증) 0.7	지적측량 결과 반영
공동주택	120,459	45.0	120,460.7	45.0	증) 1.7	지적측량 결과 반영
도시형생활주택	1,366	0.5	1,364.8	0.5	감) 1.2	지적측량 결과 반영
근린생활시설	1,032	0.4	1,032.2	0.4	증) 0.2	지적측량 결과 반영
공공시설용지	144,598	54.1	144,687.2	54.1	증) 89.2	지적측량 결과 반영
초등학교	9,000	3.4	9,002.6	3.4	증) 2.6	지적측량 결과 반영
유치원	600	0.2	599.8	0.2	감) 0.2	지적측량 결과 반영
체육시설	3,579	1.3	3,513.8	1.3	감) 65.2	지적측량 결과 반영
종교시설	2,460	0.9	2,460.8	0.9	증) 0.8	지적측량 결과 반영
근린공원	37,840	14.2	37,801.9	14.2	감) 38.1	지적측량 결과 반영 (근린공원1 7,997.4㎡ 중 4,933.3㎡ 부분준공 근린공원3 29,804.5㎡ 중 10,069.4㎡ 부분준공)
어린이공원	3,000	1.1	2,999.0	1.1	감) 1.0	지적측량 결과 반영
완충녹지	21,904	8.2	21,848.6	8.2	감) 55.4	지적측량 결과 반영
녹도	5,199	2	5,191.9	2.0	감) 7.1	지적측량 결과 반영
주차장	1,712	0.7	1,667.9	0.6	감) 44.1	지적측량 결과 반영
하천	4,382	1.6	4,571.8	1.7	증) 189.8	지적측량 결과 반영
유보지	12,346	4.6	12,355.6	4.6	증) 9.6	지적측량 결과 반영
군사시설	1,136.5	0.4	1,136.5	0.4	-	준공
도로	41,439.5	15.5	41,537.0	15.5	증) 97.5	지적측량 결과 반영

(2)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

• 도 로(변경)

구 분			폭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기정	－	15	2,498	46,638.5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15	2,498	46,728.9	
계			기정	－	15	2,498	36,625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15	2,498	36,702.8	
일 반 도 로	계		기정	－	8	1,885	31,426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8	1,885	31,510.9	
	대 로	소계	기정	－	1	399	7,771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1	399	7,809.6	
		2류	기정	20~30	1	399	7,771	측량 결과 반영
			변경	20~30	1	399	7,809.6	
	중 로	소계	기정	－	6	1,325	22,841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6	1,325	22,885.9	
		1류	기정	20~28	2	217	5,714	측량 결과 반영
			변경	20~28	2	217	5,658.6	
		2류	기정	17	1	335	6,111	측량 결과 반영
			변경	17	1	335	6,102.7	
		3류	기정	12~14	3	773	11,016	측량 결과 반영
			변경	12~14	3	773	11,124.6	
	소 로	소계	기정	6~10	1	161	814	측량 결과 반영
			변경	6~10	1	161	815.4	
		3류	기정	6~10	1	161	814	측량 결과 반영
			변경	6~10	1	161	815.4	
보행자전용 도로	계	기정	－	7	613	5,199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7	613	5,191.9		
	소 로	2류	기정	8~9.5	6	549	4,817	측량 결과 반영
			변경	8~9.5	6	549	4,798.0	
		3류	기정	6	1	64	382	측량 결과 반영
			변경	6	1	64	393.9	
기 타			기정	－	－	－	10,013.5	측량 결과 반영 (동일로, 동부간선도로 부분)
			변경	－	－	－	10,026.1	

• 주차장(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기정	-	1,712	측량결과반영
	-	변경	-	1,667.9	
주차장	주 1	기정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95-1 일원	812	측량결과반영
		변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95-1 일원	812.2	
	주 2	기정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69-2 일원	900	측량결과반영
		변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69-2 일원	855.7	

• 학교시설(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기정	-	9,600	측량결과반영
	-	변경	-	9,602.4	
초등학교	초 1	기정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411-4 일원	9,000	측량결과반영
		변경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411-4 일원	9,002.6	
유치원	유 1	기정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411-51 일원	600	측량결과반영
		변경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411-51 일원	599.8	

• 체육시설(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체육시설	체 1	기정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69-1 일원	3,579	측량결과반영
		변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69-1 일원	3,513.8	

• 종교시설(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기정	-	2,460	측량결과반영
	-	변경	-	2,460.8	
종교시설	종 1	기정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95-1 일원	660	측량결과반영
		변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95-1 일원	660.3	
	종 2	기정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00-1 일원	600	측량결과반영
		변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00-1 일원	599.2	
	종 3	기정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411-3 일원	600	측량결과반영
		변경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411-3 일원	602.4	
	종 4	기정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408 일원	600	측량결과반영
		변경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408 일원	598.9	

• 공원(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기정	-	40,840	측량결과반영
	-	변경	-	40,800.9	
공원	공 1	기정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00-1 일원	8,075	측량결과반영 (4,933.3㎡ 부분준공)
		변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00-1 일원	7,997.4	
	공 2	기정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92 일원	1,500	측량결과반영
		변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92 일원	1,500.1	
	공 3	기정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411-38 일원	29,765	측량결과반영 (10,069.4㎡ 부분준공)
		변경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411-38 일원	29,804.5	
	공 4	기정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87-2 일원	1,500	측량결과반영
		변경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87-2 일원	1,498.9	

• 녹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기정	-	21,904	측량결과반영
	-	변경	-	21,848.6	
원충녹지	녹 1	기정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70-9 일원	3,713	측량결과반영
		변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70-9 일원	3,725.1	
	녹 2	기정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97-1 일원	2,949	측량결과반영
		변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97-1 일원	2,910.0	
	녹 3	기정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84-16 일원	3,027	측량결과반영
		변경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84-16 일원	2,986.2	
	녹 4	기정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403 일원	3,869	측량결과반영
		변경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403 일원	3,839.9	
	녹 5	기정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402-3 일원	1,779	측량결과반영
		변경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402-3 일원	1,751.1	
	녹 6	기정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83-10 일원	4,762	측량결과반영
		변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83-10 일원	4,761.8	
	녹 7	기정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02-4 일원	653	측량결과반영
		변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02-4 일원	660.8	
	녹 8	기정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70-5 일원	1,152	측량결과반영
		변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70-5 일원	1,213.7	

- 기타시설(변경)
 - 하천부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기정	-	4,382	측량결과반영
	-	변경	-	4,571.8	
하천	천 1	기정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407-5 일원	1,712	측량결과반영
		변경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407-5 일원	1,800.2	
	천 2	기정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80-1 일원	2,670	측량결과반영
		변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80-1 일원	2,771.6	

- 유보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기정	-	12,346	측량결과반영
	-	변경	-	12,355.6	
유보지	유보 1	기정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00-4 일원	4,492	측량결과반영
		변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00-4 일원	4,474.7	
	유보 2	기정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404-2 일원	7,854	측량결과반영
		변경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404-2 일원	7,880.9	

사. 토지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아.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22,118	감) 4.7	122,113.3	100.0
주거지역	소 계	103,822	감) 26.5	103,795.5	85.0
	제1종일반주거지역	45,652	감) 21.6	45,630.4	37.4
	제2종일반주거지역	57,138	감) 5.1	57,132.9	46.8
	준주거지역	1,032	증) 0.2	1,032.2	0.8
자연녹지지역		18,296	증) 21.8	18,317.8	15.0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69-1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	21.6	-	•측량결과 반영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00-1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	5.1	-	•측량결과 반영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97-2 일원	-	준주거지역	0.2	400%	•측량결과 반영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00-1 일원	-	자연녹지지역	21.8	50%	•측량결과 반영

【 경기도 의정부시 】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45,337	증) 94.6	145,431.6	100
주거지역	소 계	114,027	증) 97.1	114,124.1	78.5
	제1종일반주거지역	50,706	증) 90.3	50,796.3	34.9
	제2종일반주거지역	63,321	증) 6.8	63,327.8	43.5
자 연 녹 지 지 역		31,310	감) 2.5	31,307.5	21.5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407-5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90.3	150%	•측량결과 반영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89 일원	-	제2종일반 주거지역	6.8	200%	•측량결과 반영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84-16 일원	자연녹지지역	-	2.5	-	•측량결과 반영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서울특별시 노원구】(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상계·장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00-1 일원	122,118	감) 4.7	122,113.3	

■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	변 경 사 유
변경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00-1 일원	122,118 → 122,113.3(감 : 4.7)	• 측량결과반영

【경기도 의정부시】(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	상계·장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86 일원	145,337	증) 94.6	145,431.6	

■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	변 경 사 유
변경	2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86 일원	145,337 → 145,431.6(증: 94.6)	• 측량결과반영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1) 교통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서울특별시 노원구】(변경)

1) 도로(변경)

■ 도로총괄(변경)조서

구 분		폭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기정	-	7	952	25,014.4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7	952	24,957.3	

구 분				폭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계				기정	－	7	952	16,458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7	952	16,349.3		
일 반 도 로	계			기정	－	3	711	14,467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3	711	14,395.7		
	대 로	소계	기정	－	1	399	7,771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1	399	7,809.6			
		2류	기정	20~30	1	399	7,771	측량 결과 반영		
			변경	20~30	1	399	7,809.6			
	중 로	소계	기정	－	2	312	6,696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2	312	6,586.1			
		1류	기정	20~28	1	190	5,098	측량 결과 반영		
			변경	20~28	1	190	4,995.4			
		3류	기정	12	1	122	1,598	측량 결과 반영		
			변경	12	1	122	1,590.7			
	특 수 도 로	계			기정	－	4	241	1,991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4	241	1,953.6	
소 로		2류	기정	8~9.5	4	241	1,991	측량 결과 반영		
			변경	8~9.5	4	241	1,953.6			
기 타				기정	－	－	－	8,556.4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	－	8,608.0		

주) 1. 총괄표상의 도로 면적변경은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사항임

2)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1,712	감) 44.1	1,667.9		
변경	1	주차장	노외 주차장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95-1 일원	812	증) 0.2	812.2		
변경	2	주차장	노외 주차장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69-2 일원	900	감) 44.3	855.7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면적증가 - 면적 : 812㎡→812.2㎡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증가
2	주차장	•면적감소 - 면적 : 900㎡→855.7㎡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감소

【 경기도 의정부시 】 (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변경)조서

구 분				폭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기정	－	8	1,546	21,624.1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8	1,546	21,771.6		
계				기정	－	8	1,546	20,167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8	1,546	20,353.5		
	일 반 도 로	계		기정	－	5	1,174	16,959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5	1,174	17,115.2		
		중 로	소계	기정	－	4	1,013	16,145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4	1,013	16,299.8		
			1류	기정	23	1	27	616	측량 결과 반영	
				변경	23	1	27	663.2		
			2류	기정	17	1	335	6,111	측량 결과 반영	
				변경	17	1	335	6,102.7		
			3류	기정	12~14	2	651	9,418	측량 결과 반영	
				변경	12~14	2	651	9,533.9		
		소로	소계	기정	6~10	1	161	814	측량 결과 반영	
				변경	6~10	1	161	815.4		
			3류	기정	6~10	1	161	814	측량 결과 반영	
				변경	6~10	1	161	815.4		
		특 수 도 로	계		기정	－	3	372	3,208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3	372	3,238.3	
			소 로	2류	기정	9.5	2	308	2,826	측량 결과 반영
					변경	9.5	2	308	2,844.4	
3류	기정			6	1	64	382	측량 결과 반영		
	변경			6	1	64	393.9			
기 타				기정	－	－	－	1,457.1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	－	1,418.1		

주) 1. 총괄표상의 도로 면적변경은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사항임

(2) 도시공간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변경)

1)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13,229	증) 42.3	13,271.3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노원구 상계동 1170-9 일원	3,713	증) 12.1	3,725.1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노원구 상계동 1197-1 일원	2,949	감) 39.0	2,910.0		
변경	6	녹지	완충녹지	노원구 상계동 1183-10 일원	4,762	감) 0.2	4,761.8		
변경	7	녹지	완충녹지	노원구 상계동 1202-4 일원	653	증) 7.8	660.8		
변경	8	녹지	완충녹지	노원구 상계동 1170-5 일원	1,152	증) 61.7	1,213.7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완충녹지	•면적변경 - 면적 : 3,713㎡→3,725.1㎡	•측량결과 반영 면적증가
2	완충녹지	•면적변경 - 면적 : 2,949㎡→2,910.0㎡	•측량결과 반영 면적감소
6	완충녹지	•면적변경 - 면적 : 4,762㎡→4,761.8㎡	•측량결과 반영 면적감소
7	완충녹지	•면적변경 - 면적 : 653㎡→660.8㎡	•측량결과 반영 면적증가
8	완충녹지	•면적변경 - 면적 : 1,152㎡→1,213.7㎡	•측량결과 반영 면적증가

2) 공원(변경)

■ 공원 총괄(변경)표

구 분	시가화구역(㎡)			
	기 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2	9,575	2	9,497.5
근린공원	1	8,075	1	7,997.4
어린이공원	1	1,500	1	1,500.1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9,575	감) 77.5	9,497.5		
변경	1	제1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노원구 상계동 1200-1 일원	8,075	감) 77.6	7,997.4		(4,933.3㎡ 부분준공)
변경	2	제2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노원구 상계동 1192 일원	1,500	증) 0.1	1,500.1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제1호 근린공원	•면적변경 - 면적 : 8,075㎡ → 7,997.4㎡	•측량결과 반영 면적감소
2	제2호 어린이공원	•면적변경 - 면적 : 1,500㎡ → 1,500.1㎡	•측량결과 반영 면적증가

【 경기도 의정부시 】 (변경)

1)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8,675	감) 97.8	8,577.2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의정부시 장암동 384-16 일원	3,027	감) 40.8	2,986.2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의정부시 장암동 403 일원	3,869	감) 29.1	3,839.9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의정부시 장암동 402-3 일원	1,779	감) 27.9	1,751.1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완충녹지	•면적변경 - 면적 : 3,027㎡ → 2,986.2㎡	•측량결과 반영 면적감소
4	완충녹지	•면적변경 - 면적 : 3,869㎡ → 3,839.9㎡	•측량결과 반영 면적감소
5	완충녹지	•면적변경 - 면적 : 1,779㎡ → 1,751.1㎡	•측량결과 반영 면적감소

2) 공원(변경)

■ 공원 총괄(변경)표

구 분	시가화구역(㎡)			
	기 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2	31,265	2	31,303.7
근린공원	1	29,765	1	29,804.5
어린이공원	1	1,500	1	1,498.9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1,265	증) 38.7	31,303.7		
변경	3	제3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의정부시 장암동 411-38 일원	29,765	증) 39.5	29,804.5		(10,069.4㎡ 부분준공)
변경	4	제4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의정부시 장암동 387-2 일원	1,500	감) 1.1	1,498.9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제3호 근린공원	•면적변경 - 면적 : 29,765㎡ → 29,804.5㎡	•측량결과 반영 면적증가
4	제4호 어린이공원	•면적변경 - 면적 : 1,500㎡ → 1,498.9 ㎡	•측량결과 반영 면적감소

(3) 공공문화시설 및 기타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변경)

가. 공공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1) 체육시설(변경)

■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체육시설	-	노원구 상계동 1169-1 일원	3,579	감)65.2	3,513.8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체육시설	•면적변경 - 면적 : 3,579㎡ → 3,513.8㎡	•측량결과 반영 면적감소

【 경기도 의정부시 】 (변경)

가. 공공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1) 학교시설(변경)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9,600	증) 2.4	9,602.4		
변경	1	학교시설	초등학교	의정부시 장암동 411-4 일원	9,000	증) 2.6	9,002.6		
변경	유	학교시설	유치원	의정부시 장암동 411-51 일원	600	감) 0.2	599.8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학교시설	•면적변경 - 면적 : 9,000㎡ → 9,002.6㎡	•측량결과 반영 면적증가
유	학교시설	•면적변경 - 면적 : 600㎡ → 599.8㎡	•측량결과 반영 면적감소

나. 도시방재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2. 상계·장암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상계·장암도시개발구역

나. 사업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국민임대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다.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상계·장암 도시개발구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00-1번지 일원 및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86번지 일원	267,455	증) 89.9	267,544.9	

라. 시행자(변경)

대표자성명		주 소	비 고
기정	SH공사 사장 변 창 흡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경기도 의정부시장 안 병 용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2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 창 흡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경기도 의정부시장 안 병 용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2	

마. 시행기간(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기간	2004.09.18. ~ 2016.12.31	2004.09.18. ~ 2017.12.31	

- 변경사유서 : 미매각용지 용도변경 및 단계별 준공처리 등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바. 시행방식(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변경)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서울특별시 노원구】(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22,118	감) 4.7	122,113.3	100.0
주거 지역	소 계	103,822	감) 26.5	103,795.5	85.0
	제1종일반주거지역	45,652	감) 21.6	45,630.4	37.4
	제2종일반주거지역	57,138	감) 5.1	57,132.9	46.8
	준 주 거 지 역	1,032	증) 0.2	1,032.2	0.8
자 연 녹 지 지 역		18,296	증) 21.8	18,317.8	15.0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69-1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	21.6	-	•측량결과 반영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00-1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	5.1	-	•측량결과 반영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97-2 일원	-	준주거지역	0.2	400%	•측량결과 반영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00-1 일원	-	자연녹지지역	21.8	50%	•측량결과 반영

【 경기도 의정부시 】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45,337	증) 94.6	145,431.6	100
주거 지역	소 계	114,027	증) 97.1	114,124.1	78.5
	제1종일반주거지역	50,706	증) 90.3	50,796.3	34.9
	제2종일반주거지역	63,321	증) 6.8	63,327.8	43.5
자 연 녹 지 지 역		31,310	감) 2.5	31,307.5	21.5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407-5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90.3	150%	•측량결과 반영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89 일원	-	제2종일반 주거지역	6.8	200%	•측량결과 반영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84-16 일원	자연녹지지역	-	2.5	-	•측량결과 반영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상계·장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00-1 일원	122,118	감) 4.7	122,113.3	

■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	변 경 사 유
변경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00-1 일원	122,118 → 122,113.3(감 : 4.7)	•측량결과반영

【 경기도 의정부시 】 (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	상계·장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86 일원	145,337	증) 94.6	145,431.6	

■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	변 경 사 유
변경	2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86 일원	145,337 → 145,431.6(증: 94.6)	•측량결과반영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1) 교통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변경)

1) 도로(변경)

■ 도로총괄(변경)조서

구 분				폭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기정	—	7	952	25,014.4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7	952	24,957.3	
계				기정	—	7	952	16,458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7	952	16,349.3	
일 반 도 로	계			기정	—	3	711	14,467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3	711	14,395.7	
	대 로	소계	기정	—	1	399	7,771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1	399	7,809.6		
		2류	기정	20~30	1	399	7,771	측량 결과 반영	
			변경	20~30	1	399	7,809.6		
	중 로	소계	기정	—	2	312	6,696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2	312	6,586.1		
		1류	기정	20~28	1	190	5,098	측량 결과 반영	
			변경	20~28	1	190	4,995.4		
			3류	기정	12	1	122	1,598	측량 결과 반영
				변경	12	1	122	1,590.7	
특 수 도 로	계			기정	—	4	241	1,991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4	241	1,953.6	
	소 로	2류	기정	8~9.5	4	241	1,991	측량 결과 반영	
			변경	8~9.5	4	241	1,953.6		
기 타				기정	—	—	—	8,556.4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	—	8,608.0	

주) 1. 총괄표상의 도로 면적변경은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사항임

2)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1,712	감) 44.1	1,667.9		
변경	1	주차장	노외 주차장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95-1 일원	812	증) 0.2	812.2		
변경	2	주차장	노외 주차장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69-2 일원	900	감) 44.3	855.7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면적증가 - 면적 : 812㎡→812.2㎡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증가
2	주차장	•면적감소 - 면적 : 900㎡→855.7㎡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감소

【 경기도 의정부시 】 (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변경)조서

구 분			폭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기정	－	8	1,546	21,624.1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8	1,546	21,771.6	
계			기정	－	8	1,546	20,167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8	1,546	20,353.5	
일 반 도 로	계		기정	－	5	1,174	16,959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5	1,174	17,115.2	
중 로	소계	기정	－	4	1,013	16,145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4	1,013	16,299.8		
		1류	기정	23	1	27	616	측량 결과 반영
			변경	23	1	27	663.2	
		2류	기정	17	1	335	6,111	측량 결과 반영
			변경	17	1	335	6,102.7	
	3류	기정	12~14	2	651	9,418	측량 결과 반영	
		변경	12~14	2	651	9,533.9		
	소로	소계	기정	6~10	1	161	814	측량 결과 반영
			변경	6~10	1	161	815.4	
		3류	기정	6~10	1	161	814	측량 결과 반영
			변경	6~10	1	161	815.4	
특 수 도 로	계		기정	－	3	372	3,208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3	372	3,238.3	
	소 로	2류	기정	9.5	2	308	2,826	측량 결과 반영
			변경	9.5	2	308	2,844.4	
		3류	기정	6	1	64	382	측량 결과 반영
			변경	6	1	64	393.9	
기 타			기정	－	－	－	1,457.1	측량 결과 반영
			변경	－	－	－	1,418.1	

주) 1. 총괄표상의 도로 면적변경은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사항임

(2) 도시공간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변경)

1)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13,229	증) 42.3	13,271.3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노원구 상계동 1170-9 일원	3,713	증) 12.1	3,725.1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노원구 상계동 1197-1 일원	2,949	감) 39.0	2,910.0		
변경	6	녹지	완충녹지	노원구 상계동 1183-10 일원	4,762	감) 0.2	4,761.8		
변경	7	녹지	완충녹지	노원구 상계동 1202-4 일원	653	증) 7.8	660.8		
변경	8	녹지	완충녹지	노원구 상계동 1170-5 일원	1,152	증) 61.7	1,213.7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완충녹지	•면적변경 - 면적 : 3,713㎡→3,725.1㎡	•측량결과 반영 면적증가
2	완충녹지	•면적변경 - 면적 : 2,949㎡→2,910.0㎡	•측량결과 반영 면적감소
6	완충녹지	•면적변경 - 면적 : 4,762㎡→4,761.8㎡	•측량결과 반영 면적감소
7	완충녹지	•면적변경 - 면적 : 653㎡→660.8㎡	•측량결과 반영 면적증가
8	완충녹지	•면적변경 - 면적 : 1,152㎡→1,213.7㎡	•측량결과 반영 면적증가

2) 공원(변경)

■ 공원 총괄(변경)표

구 분	시가화구역(㎡)			
	기 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2	9,575	2	9,497.5
근린공원	1	8,075	1	7,997.4
어린이공원	1	1,500	1	1,500.1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9,575	감) 77.5	9,497.5		
변경	1	제1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노원구 상계동 1200-1 일원	8,075	감) 77.6	7,997.4		(4,933.3㎡ 부분준공)
변경	2	제2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노원구 상계동 1192 일원	1,500	증) 0.1	1,500.1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제1호 근린공원	•면적변경 - 면적 : 8,075㎡ → 7,997.4㎡	•측량결과 반영 면적감소
2	제2호 어린이공원	•면적변경 - 면적 : 1,500㎡ → 1,500.1㎡	•측량결과 반영 면적증가

【 경기도 의정부시 】 (변경)

1)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8,675	감) 97.8	8,577.2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의정부시 장암동 384-16 일원	3,027	감) 40.8	2,986.2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의정부시 장암동 403 일원	3,869	감) 29.1	3,839.9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의정부시 장암동 402-3 일원	1,779	감) 27.9	1,751.1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완충녹지	•면적변경 - 면적 : 3,027㎡ → 2,986.2㎡	•측량결과 반영 면적감소
4	완충녹지	•면적변경 - 면적 : 3,869㎡ → 3,839.9㎡	•측량결과 반영 면적감소
5	완충녹지	•면적변경 - 면적 : 1,779㎡ → 1,751.1㎡	•측량결과 반영 면적감소

2) 공원(변경)

■ 공원 총괄(변경)표

구 분	시가화구역(㎡)			
	기 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2	31,265	2	31,303.7
근린공원	1	29,765	1	29,804.5
어린이공원	1	1,500	1	1,498.9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1,265	증) 38.7	31,303.7		
변경	3	제3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의정부시 장암동 411-38 일원	29,765	증) 39.5	29,804.5		(10,069.4㎡ 부분준공)
변경	4	제4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의정부시 장암동 387-2 일원	1,500	감) 1.1	1,498.9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제3호 근린공원	•면적변경 - 면적 : 29,765㎡ → 29,804.5㎡	•측량결과 반영 면적증가
4	제4호 어린이공원	•면적변경 - 면적 : 1,500㎡ → 1,498.9 ㎡	•측량결과 반영 면적감소

(3) 공공문화시설 및 기타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변경)

가. 공공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1) 체육시설(변경)

■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체육시설	-	노원구 상계동 1169-1 일원	3,579	감)65.2	3,513.8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체육시설	•면적변경 - 면적 : 3,579㎡ → 3,513.8㎡	•측량결과 반영 면적감소

【 경기도 의정부시 】 (변경)

가. 공공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1) 학교시설(변경)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9,600	증) 2.4	9,602.4		
변경	1	학교시설	초등학교	의정부시 장암동 411-4 일원	9,000	증) 2.6	9,002.6		
변경	유	학교시설	유치원	의정부시 장암동 411-51 일원	600	감) 0.2	599.8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학교시설	•면적변경 - 면적 : 9,000㎡ → 9,002.6㎡	•측량결과 반영 면적증가
유	학교시설	•면적변경 - 면적 : 600㎡ → 599.8㎡	•측량결과 반영 면적감소

나. 도시방재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1)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1) 공동주택용지(변경)

가구번호		면적(㎡)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용적률 (%)	주택유형	층고	비고
합계	기정	121,825	2,397	6,712	－	혼합배치	15층이하	임대/ 일반
	변경	120,460.7						
A1	기정	34,654	680	1,904	200	혼합배치	15층이하	
	변경	34,662.7						
A2	기정	28,667	473	1,325	200	혼합배치	15층이하	
	변경	28,665.1						
A3	기정	33,451	696	1,949	200	혼합배치	15층이하	
	변경	33,453.9						
A4	기정	23,687	548	1,534	200	혼합배치	15층이하	
	변경	23,679.0						

주) 1. 주택유형은 지상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임(40㎡, 50㎡, 60㎡, 85㎡, 114㎡)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 면적이 포함 산정된 것임

2) 준주거용지(변경)

가 구 번 호	획 지 번 호	면 적(㎡)	비 고
B1	소 계	기정	1,032
		변경	1,032.2
	-1	기정	480
		변경	480.8
	-2	기정	552
		변경	551.4

3) 도시형생활주택(변경)

가구번호	면적(㎡)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용적률 (%)	주택유형	층고	비고
E1	기정	1,366	50	75	35㎡ (전용 21㎡)	4층 이하	임대
	변경	1,364.8	48	72			

주) 1.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 면적이 포함 산정된 것임

4) 기타용지(변경)

가 구 번 호	면 적 (㎡)	가구내 획지수	비 고
기정	합 계	18,487.5	11
변경		18,381.4	11
기정	C1	9,000	1
변경		9,002.6	1
기정	C2	600	1
변경		599.8	1
기정	C3	600	1
변경		598.9	1
기정	C4	600	1
변경		602.4	1
기정	C5	600	1
변경		599.2	1
기정	C6	660	1
변경		660.3	1
기정	C7	812	1
변경		812.2	1
기정	C8	900	1
변경		855.7	1
기정	C9	3,579	1
변경		3,513.8	1
기정	D1	1,051.6	1
기정	D2	84.9	1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아.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변경) : <붙임 3> 참조

자.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 관계기관(부서)과 사전 협의사항 이행

차.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지형도면)(변경) : <붙임 1>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 그 밖의 세부 도시관리계획 도면 및 조서(변경) : 공람장소에 비치

타.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승인 도서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14일 이상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 02)2133-4647),
 - 노원구청 도시관리과 (☎ 02)2116-3866),
 - 의정부시청 균형발전과 (☎ 031)828-2952),
 -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 (☎ 02)3410-759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붙임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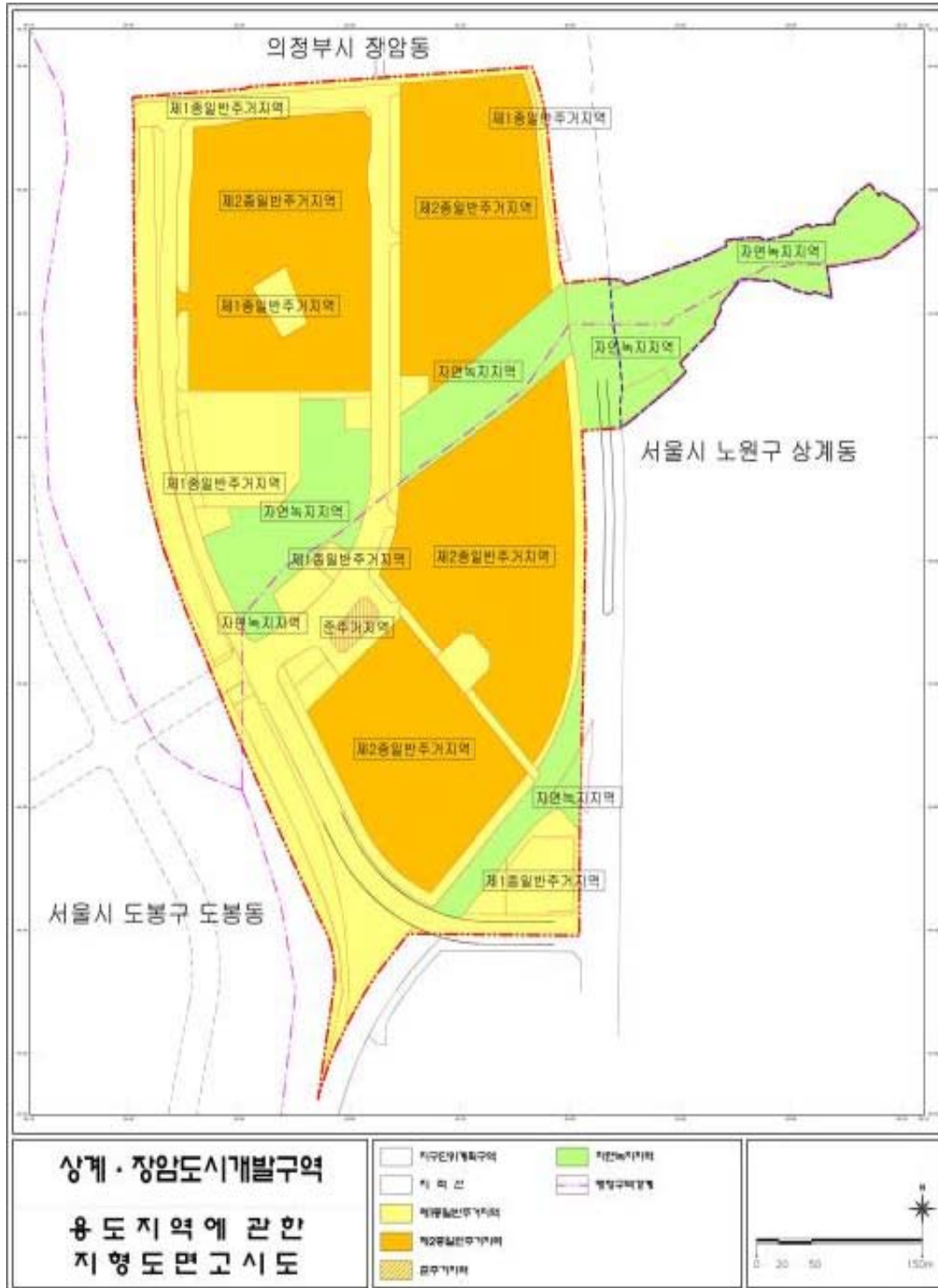
- 붙임 1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지형도면) 1부.
- 붙임 2 :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1부.

<붙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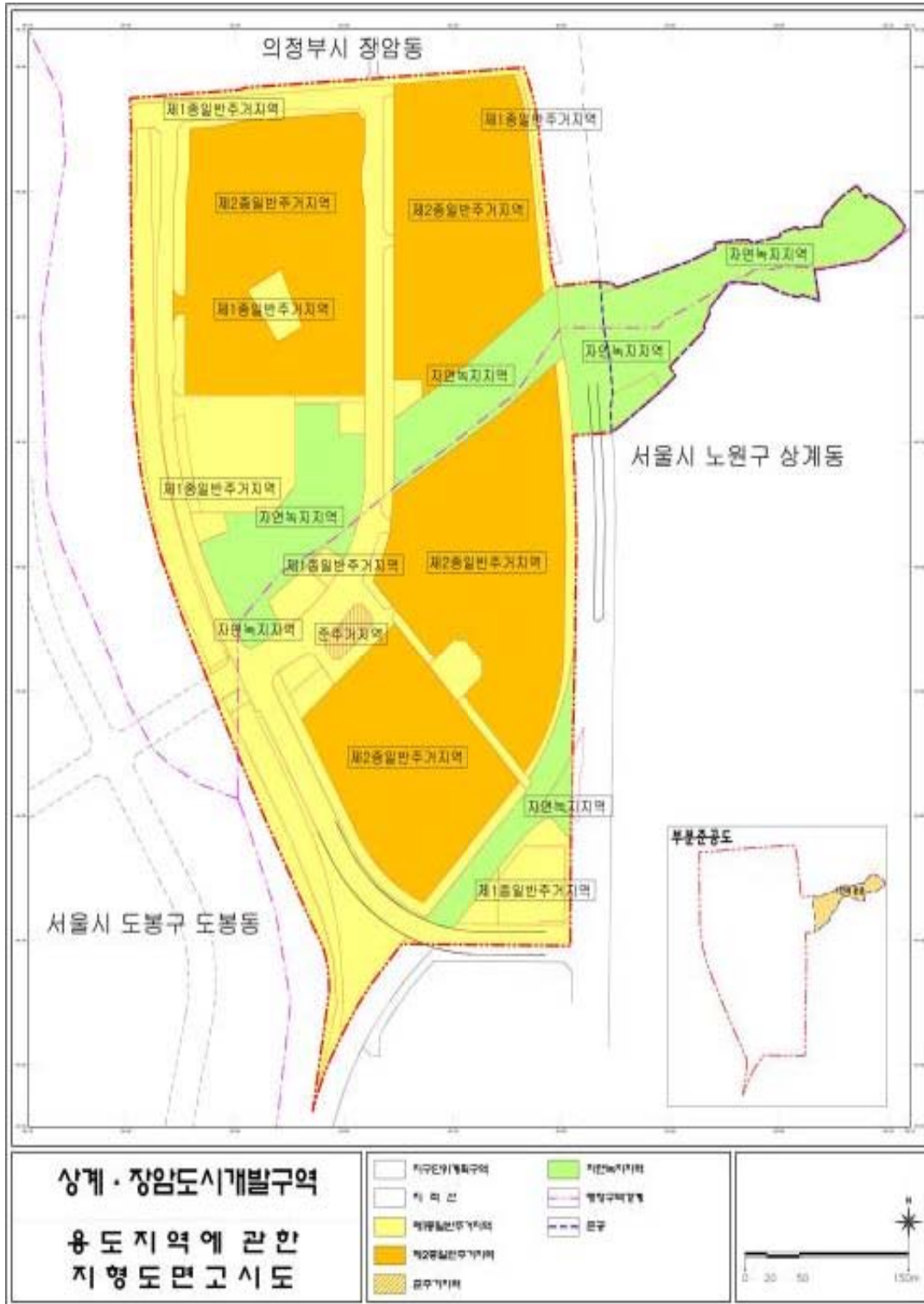
상계·장암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지형도면)

1. 도시개발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 생략

2.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변경)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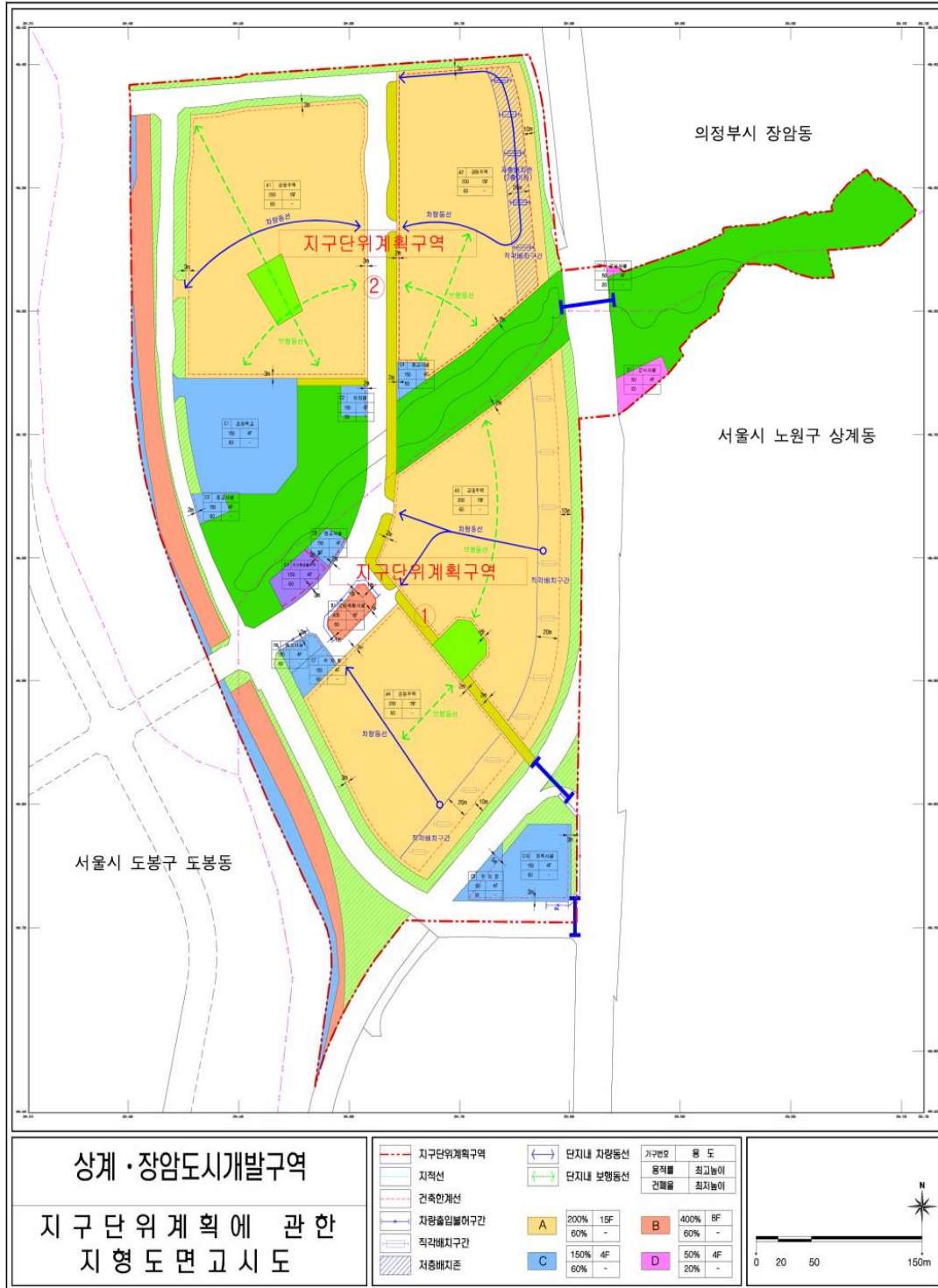
3.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변경)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붙임 2〉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변경없음) : 생략

나. 국가귀속분(변경)

■ 서울특별시

구 분	수 량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계	-	47,818.4	47,726.1	
근 린 공 원	1개소	8,075	7,997.4	
어 린 이 공 원	1개소	1,500	1,500.1	
완 충 녹 지	폭 10m	13,229	13,271.3	
도 로	952m	25,014.4	24,957.3	

■ 경기도 의정부시

구 분	수 량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계	-	71,887.1	71,975.2	
근 린 공 원	1개소	29,765	29,804.5	
어 린 이 공 원	1개소	1,500	1,498.9	
완 충 녹 지	폭 10m	8,675	8,577.2	
도 로	952m	21,624.1	21,771.6	
유 수 지	1개소	10,323	10,323	

2. 대체시설물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생략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없음) : 생략

4. 무상귀속 대체 공공시설의 조서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변경없음) : 생략

나. 국가귀속분(변경)

■ 서울특별시

① 근린·어린이 공원(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m ²)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	9,575	9,497.5	
근린공원	1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00-1 일원	8,075	7,997.4	(4,933.3m ² 부분준공)
어린이공원	2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92 일원	1,500	1,500.1	

② 완충녹지(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	13,229	13,271.3	
완충녹지	1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70-9 일원	3,713	3,725.1	
	2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97-1 일원	2,949	2,910.0	
	6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83-10 일원	4,762	4,761.8	
	7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02-4 일원	653	660.8	
	8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70-5 일원	1,152	1,213.7	

③ 도 로(변경)

구 분		폭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7	952	25,014.4	24,957.3	측량 결과 반영
계		-	7	952	16,458	16,349.3	측량 결과 반영
일 반 도 로	계	-	3	711	14,467	14,395.7	측량 결과 반영
	대 로	소계	1	399	7,771	7,809.6	측량 결과 반영
		2류	20~30	1	399	7,771	측량 결과 반영
	중 로	소계	2	312	6,696	6,586.1	측량 결과 반영
		1류	20~28	1	190	5,098	측량 결과 반영
		3류	12	122	1,598	1,590.7	측량 결과 반영
	특 수 도 로	계	4	241	1,991	1,953.6	측량 결과 반영
기 타		-	-	-	8,556.4	8,608.0	측량 결과 반영

■ 경기도 의정부시

① 근린·어린이 공원(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	31,265	31,303.7	
근린공원	3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411-38 일원	29,765	29,804.5	(10,069.4㎡ 부분준공)
어린이공원	4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87-2 일원	1,500	1,498.9	

② 완충녹지(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	8,675	8,577.2	
완충녹지	3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84-16 일원	3,027	2,986.2	
	4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403 일원	3,869	3,839.9	
	5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402-3 일원	1,779	1,751.1	

③ 도 로(변경)

구 분			폭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8	1,546	21,624.1	21,771.6	측량 결과 반영	
계			－	8	1,546	20,167	20,353.5	측량 결과 반영	
일 반 도 로	계		－	5	1,174	16,959	17,115.2	측량 결과 반영	
	중 로	소계	－	4	1,013	16,145	16,299.8	측량 결과 반영	
		1류	23	1	27	616	663.2	측량 결과 반영	
		2류	17	1	335	6,111	6,102.7	측량 결과 반영	
		3류	12 ~ 14	2	651	9,418	9,533.9	측량 결과 반영	
	소로	소계	6~10	1	161	814	815.4	측량 결과 반영	
		3류	6~10	1	161	814	815.4	측량 결과 반영	
	특 수 도 로	계		－	3	372	3,208	3,238.3	측량 결과 반영
		소 로	2류	9.5	2	308	2,826	2,844.4	측량 결과 반영
			3류	6	1	64	382	393.9	측량 결과 반영
기 타			－	－	－	1,457.1	1,418.1	측량 결과 반영	

④ 유수지(저류시설) (변경없음) : 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 해당사항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시설(변경없음) : 생략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 서울특별시(변경)

구 분	수 량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계	-	47,818.4	47,726.1	
근 린 공 원	1개소	8,075	7,997.4	
어 린 이 공 원	1개소	1,500	1,500.1	
완 충 녹 지	폭 10m	13,229	13,271.3	
도 로	952m	25,014.4	24,957.3	

■ 경기도 의정부시(변경)

구 분	수 량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계	-	71,887.1	71,975.2	
근 린 공 원	1개소	29,765	29,804.5	
어 린 이 공 원	1개소	1,500	1,498.9	
완 충 녹 지	폭 10m	8,675	8,577.2	
도 로	952m	21,624.1	21,771.6	
유 수 지	1개소	10,323	10,323	

나. 시설의 이용계획(변경없음) :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15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 지형도면 고시(연세대학교)

서울특별시고시 제61호(1974.5.14.)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6-96호(2016.4.7.)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99호(2016.9.29.)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일대 연세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일대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재할학교를 증축하여 교육연구시설을 확충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시설결정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학 교	대학 (연세대학교)	전체 (A+B)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일대	859,425.8	-	859,425.8	서고시 제61호 (1974.5.14.)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A 구역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일대	752,720.8	-	752,720.8		
		B 구역	서대문구 연희동 7번지 일대	106,705.0	-	106,705.0		

2)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구역계획(변경없음)

구역	구분	면적 (㎡)	구역	구분	면적 (㎡)
상징경관구역	①	80,338.8	일반관리구역	⑦	102,177
소 계		80,338.8		⑧	54,383
외부활동구역	②	3,516		⑨	42,000
	③	34,151		⑩	19,150
	④	11,078		⑪	111,583
	⑬	6,250		⑫	87,001
소 계		54,995		⑬	52,448
녹지보존구역	⑤	40,667		⑮	89,609
	⑥	112,653		소 계	
	⑭	8,658		558,351	
	⑰	1,575		합 계	
	⑱	2,188		859,425.8	
소 계		165,741	소 계		558,351
합 계				859,425.8	

(2) 밀도계획(건폐율)(변경없음)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법 정 건폐율(%)	사용건폐율(%)		관 리 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A구역 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49,489.6	60.00	27.0	27.0	35	○ 밀도 산정시 제외한 면적 - 비오톱1등급지: 99,777㎡ ※ 산정기준 면적 계산(㎡) 859,425.8-99,777=759,648.8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287,668.2	3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315,786.0	60.00				
	소 계	652,943.8	46.78				
B구역 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06,705.0	30.00	15.2	15.2	26	
	소 계	106,705.0	30.00				
합 계		759,648.8	44.43	25.36	25.36	34	

※ 학교용지면적(859,425.8㎡)대비 법정건폐율 39.3%, 사용건폐율 22.4%

※ 기정 사용건폐율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99호(2016.9.29.)의 변경(결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함

(3)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높이)

구역 구분	용적률(%)						높이(m)	비고
	법정 용적률	사용용적률		계획 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기정	변경					
①	197.96	50.90	50.90	50.90	-142.96	55	●지표로부터 최대 24~32m이하 ●국가지정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이하 ●백양로(폭원 21m) 건축행위 불가	상징경관구역
②	200.00	4.03	4.03	41.64	-155.00	45	●지표로부터 최대 16m 이하	외부활동구역
③	150.00	0.00	0.00	67.33	-80.00	70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외부활동구역
④	153.31	15.96	15.96	59.68	-93.31	60	●지표로부터 최대 16m 이하 ●국가지정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이하	외부활동구역
⑤	174.40	0.00	0.00	0.00	-174.40	-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 ●추가 건축시 별도 심의 ●기존 건축물은 현 범위 내 활용	녹지보존구역 (비오톱1등급지 28,779.5㎡, 용적률산정에서 제외함)
⑥	150.00	0.00	0.00	0.00	-150.00	-		녹지보존구역 (비오톱1등급지 69,422.5㎡ 용적률산정에서 제외함)
⑦	172.07	133.86	134.33	156.98	-	160	●지표로부터 최대 28~55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⑧	184.48	159.81	159.81	174.91	-	180	●국가지정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이하 ●지표로부터 최대 16~55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⑨	178.66	113.88	113.88	113.88	-	120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검토구역 해당기준 이하 ●지표로부터 최대 20~32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⑩	200.00	47.54	47.54	47.54	-	55	●지표로부터 최대 55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⑪	184.11	297.99	297.99	309.05	+125.89	310	●지표로부터 최대 16~70m 이하	1~6구역에서 용적이전받음(140,468㎡)
⑫	165.21	72.68	72.68	196.85	+34.79	200	●국가지정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이하 ●지표로부터 최대 12~55m 이하	1~6구역에서 용적이전받음(30,268㎡)

구역 구분	용적률(%)						높이(m)	비고
	법정 용적률	사용용적률		계획 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기정	변경					
⑬	150.00	122.41	122.41	122.41	—	130	●지표로부터 최대 20~40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⑭	150.00	0.00	0.00	0.00	-150.00	—	●⑤⑥구역과 동일함	녹지보존구역
⑮	150.00	71.29	71.29	86.82	—	90	●지표로부터 최대 20~28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⑯	150.00	0.00	0.00	0.00	-150.00	—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외부활동구역
⑰	200.00	0.00	0.00	0.00	-200.00	—	●⑤⑥구역과 동일함	녹지보존구역 (비오톱1등급지 1,575㎡, 용적률산정에서 제외함)
⑱	150.00	0.00	0.00	0.00	-150.00	—	●⑤⑥구역과 동일함	녹지보존구역

※ 상징경관구역, 외부활동구역에 부여된 여유 관리용적률은 해당 구역의 특성을 강화하거나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

※ ⑤구역 밀도산정면적 : 40,667㎡-28,779.5㎡=11,887.5㎡, ⑥구역 밀도산정면적 : 112,653㎡-69,422.5㎡=43,230.5㎡,
⑰구역 밀도산정면적 : 1,575㎡-1,575㎡=0㎡

(4) 변경건축물조서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지상층면적 (㎡)						층수 (지하)		비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⑦ 구역	재활 학교	1,164.84	1,164.84	-	-	-	-	5,110.56	5,590.82	-	-	-	-	3,729.89	4,210.15	-	-	-	-	4(1) (16.1m)	5(1) (22.4m)	
소 계		1,164.84	1,164.84	-	-	-	-	5,110.56	5,590.82	-	-	-	-	3,729.89	4,210.15	-	-	-	-	4(1) (16.1m)	5(1) (22.4m)	
								증) 480.26						증) 480.26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상세내용은 고시도면(건축물 조서 포함)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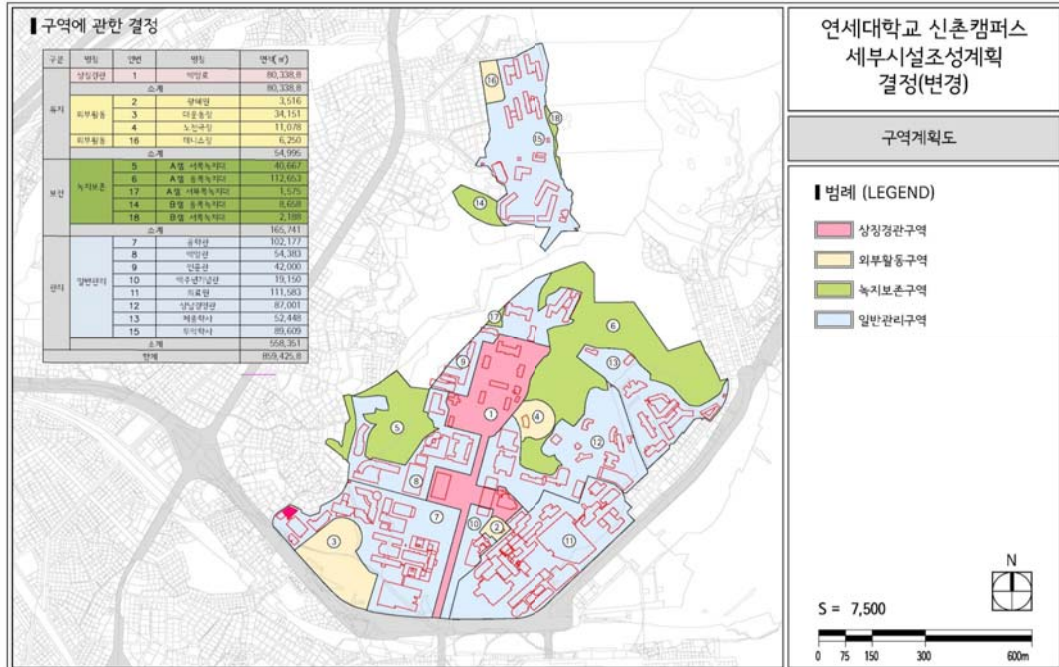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도면(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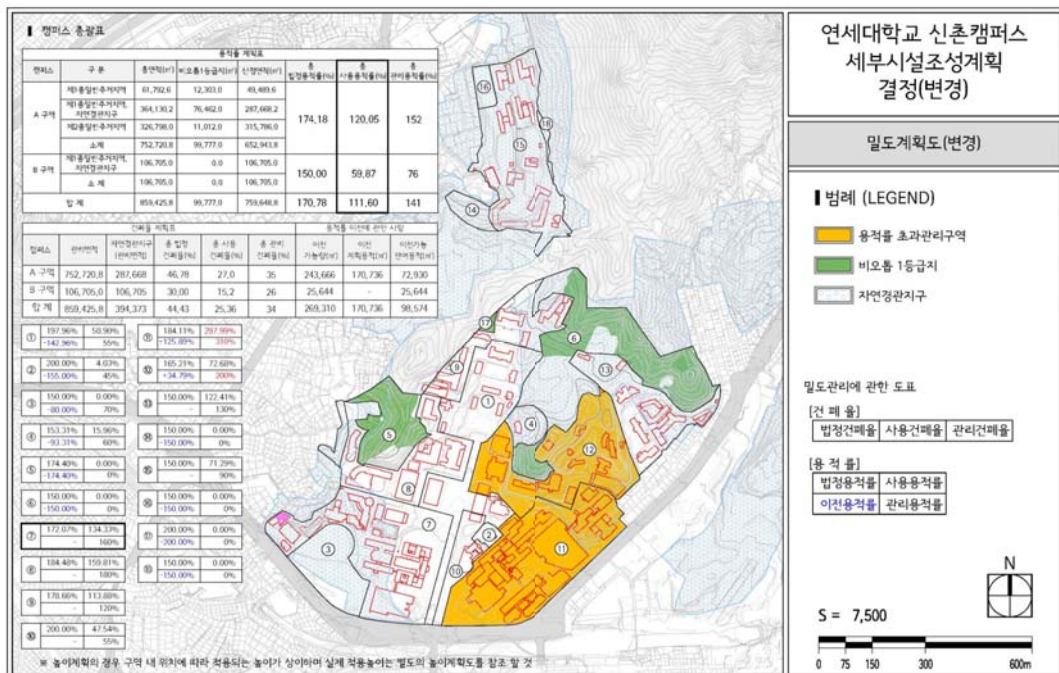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2133-8412) 및 서대문구 도시관리과(전화 330-1386)에 관계 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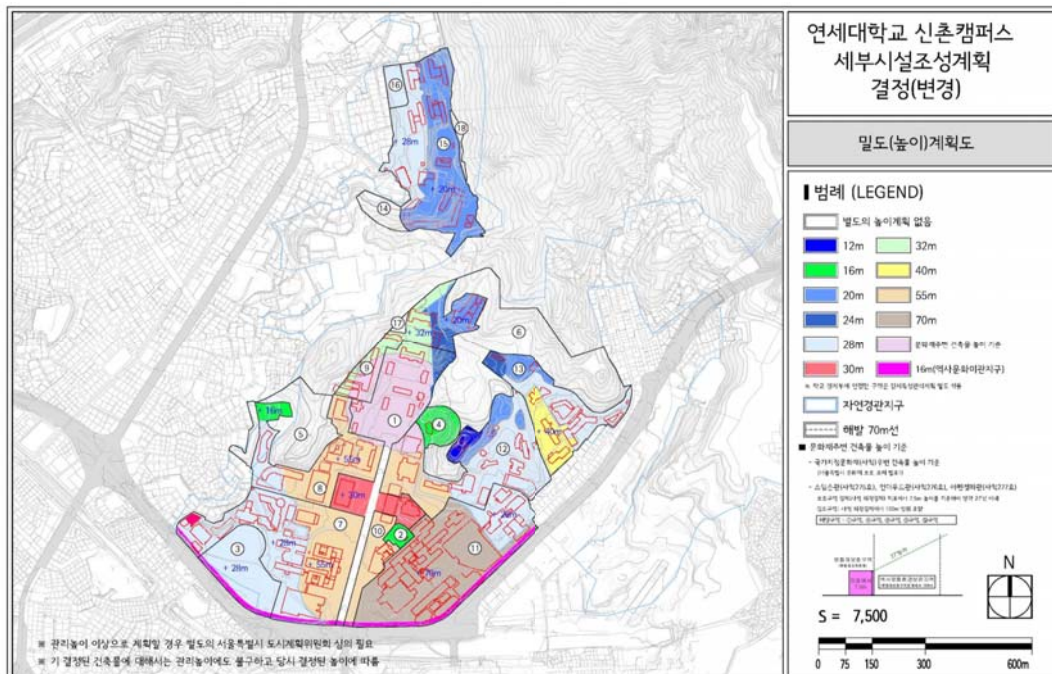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계획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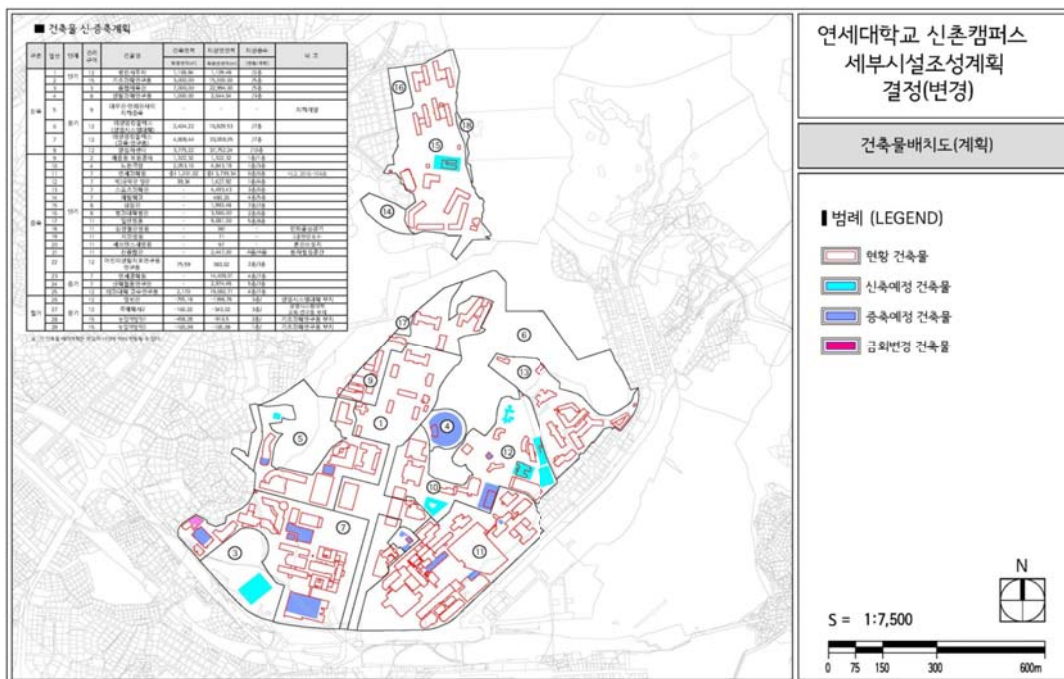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건폐율 · 용적률)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높이) [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16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6호(2015.09.24)로 결정변경된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6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6.11.09.)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신천동 29-1번지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 완화를 적용 받고자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천동, 방이동 올림픽로 주변	858,791	-	858,791	서고397호 ('84.7.4)	-

II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①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교통시설
 - 1) 도로 :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32	35	보조 간선	4,050 (68)	송파동 광20	방이동 대2-33	일반 도로	-	건고331호 ('81.8.29)	오금로 일부구간 폭원변경
변경	대로	1	32	35~38 (38)	보조 간선	4,050 (68)	송파동 광20	방이동 대2-33	일반 도로	-	건고331호 ('81.8.29)	

주 1) 폭원, 연장의 ()는 신천동 29-1번지 사항임.

2) 오금로변 확폭된 도로(3m)구간은 사업시행자가 조성(포장 및 지하매설물이전 등 포함)하여 기부채납함.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본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32	대로 1-32	폭원 : 35m⇒38m (일부구간)	오금로변 교통개선 및 버스정류장 이전을 위한 차도확보

2) 지하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철도 : 변경없음

4) 주차장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1) 건축물의 불허용도(전층) : 변경없음

2) 건축물의 권장용도 : 변경없음

3) 건축물의 지정용도 : 변경

■ 지정

구분	1층 지정용도	비 고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건축자재 등 제외), 휴게음식점, 제과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표구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석촌호수길 간선부 ^{주1)}

주 1) 가구번호 E1-3~4, E2-1~2, E3-1~4 중 석촌호수길에 대지경계선이 면한 필지(삼학사길, 송파대로, 오금로 및 이면도로에 면한 필지 제외)

■ 변경

구분	전층 지정용도	1층 지정용도	비 고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건축자재 등 제외), 휴게음식점, 제과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표구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석촌호수길 간선부 ^{주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주2)}	-	•대상지역 : 신천동 29-1 - 건축면적의 50%이상인 경우 수용된 것으로 봄

주 1) 가구번호 E1-3~4, E2-1~2, E3-1~4 중 석촌호수길에 대지경계선이 면한 필지(삼학사길, 송파대로, 오금로 및 이면도로에 면한 필지 제외)

2) 지정용도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특례 적용 시에 만 적용하되, 결정도서상 건축계획(안)을 참고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지상1/3층, 열린문화공간), 공개공간(지상2/3/6층), 공공업무시설(지상3층)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특례 적용받은 지정용도 부분은 향후 타 용도로 건축물 용도변경 불가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신천동 29-1번지	지정용도 신설	• 송파구 신천동 29-1번지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특례 적용에 따른 지정용도 신설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 1) 건폐율 계획 : 변경없음
- 2) 용적률 계획 : 변경

구 분	용도지역	세 부 내 용				비 고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일반 상업지역	-	600%이하	800%이하	•허용용적률×(1+1.3×가중치× α)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용	
변경	일반 상업지역 (신천동29-1)	-	600%이하	800%이하	•허용용적률×(1+1.3×가중치× α)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용	지정용도 외 용도
		지정용도	600%이하	800%이하	1,000% 이하	

주) 지정용도에 대한 상한용적률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로 건축 시에 만 적용

: 상한용적률(1,000%) = {기준용적률(600%) + 허용용적률(200%) +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200%)}

※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관광호텔 권장용도 중복적용 불가)에 따라 산정한다.

※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은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개선('14.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신천동 29-1번지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상한용적률 결정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적용에 따라 지정용도의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을 반영한 상한용적률 1,000%이하 적용	

3) 높이계획 :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건축선·배치·형태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배치	건축 한계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 - 잠실지역 : 3~20m (신천동 29-1 : 오금로변 5m, 잠실길변 5m)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 - 잠실지역 : 3~20m (신천동 29-1 : 오금로변 5m , 잠실길변 8.5m)	결정도 참조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건축 한계선	• 오금로변 : 5m • 잠실길변 : 5m → 8.5m	•오금로변 - 완화차로(3m)구간 기부채납으로 대지경계 조정에 따라 기존 건축 한계선 폭원 유지를 위해 5m 지정 •잠실길변 - 기존 보도(3.5m)폭원 유지 및 완화차로 조성을 통한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건축한계선 3.5m 추가지정	결정도 참조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제 어 기 준		비 고
		기 정	변 경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를 구분하여 지정 - 잠실지역 : 4~20m (신천동 29-1 : 오금로변 5m (보도형), - 잠실길변 5m (보도형))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를 구분하여 지정 - 잠실지역 : 4~20m (신천동 29-1 : 오금로변 5m (보도형), - 잠실길변 8.5m (보도형+차도형))	결정도 참조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전면공지	• 오금로변 : 5m (보도형) • 잠실길변 : 8.5m (보도형+차도형)	•오금로변 - 원활한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잠실길변 - 원활한 보행자의 통행 및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 조성	결정도 참조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방이지역 용도지역 상향가능지 지구단위계획 내용 : 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6. '방이지역 이면부 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 변경없음

7. 인센티브 항목 : 변경없음

③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④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사항

■ 다음사항을 반영

- 금회 결정사항 중 상한용적률 및 지정용도계획은 한시법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적용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명기
- 상한용적률은 계획용적률(992.12%)을 고려하여 조정(1,000%이하)
- 지정용도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분류(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 명시
- 지상3층의 열린문화공간 위치는 '검토 대안1'을 기준으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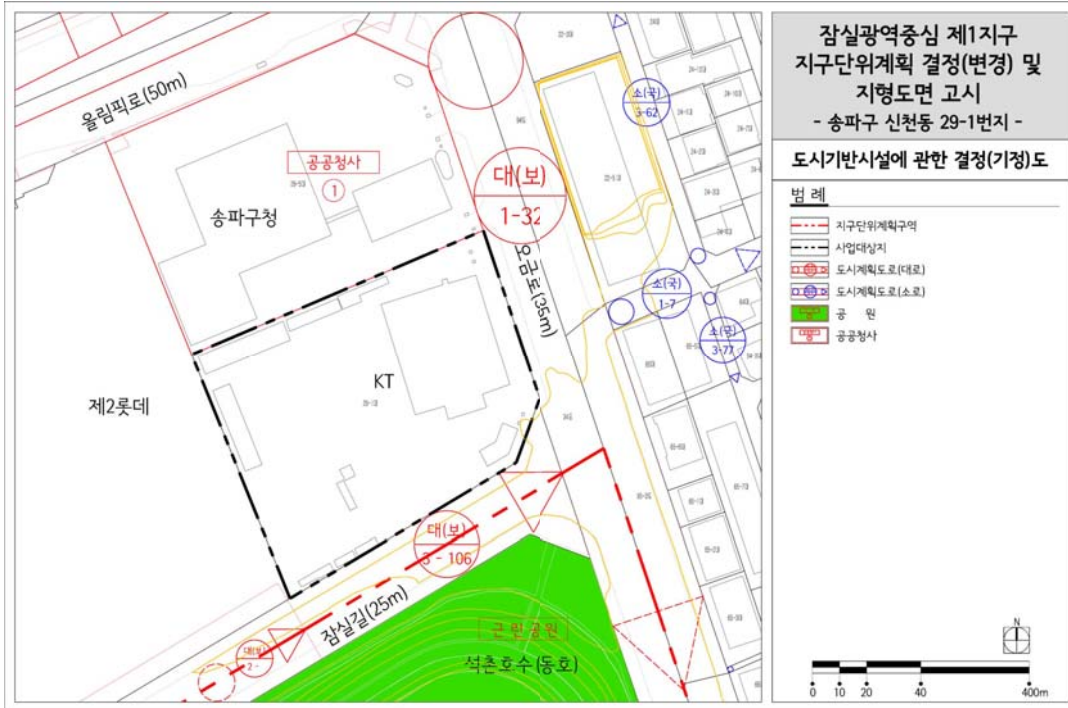
IV. 관계도면 : 불임 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임으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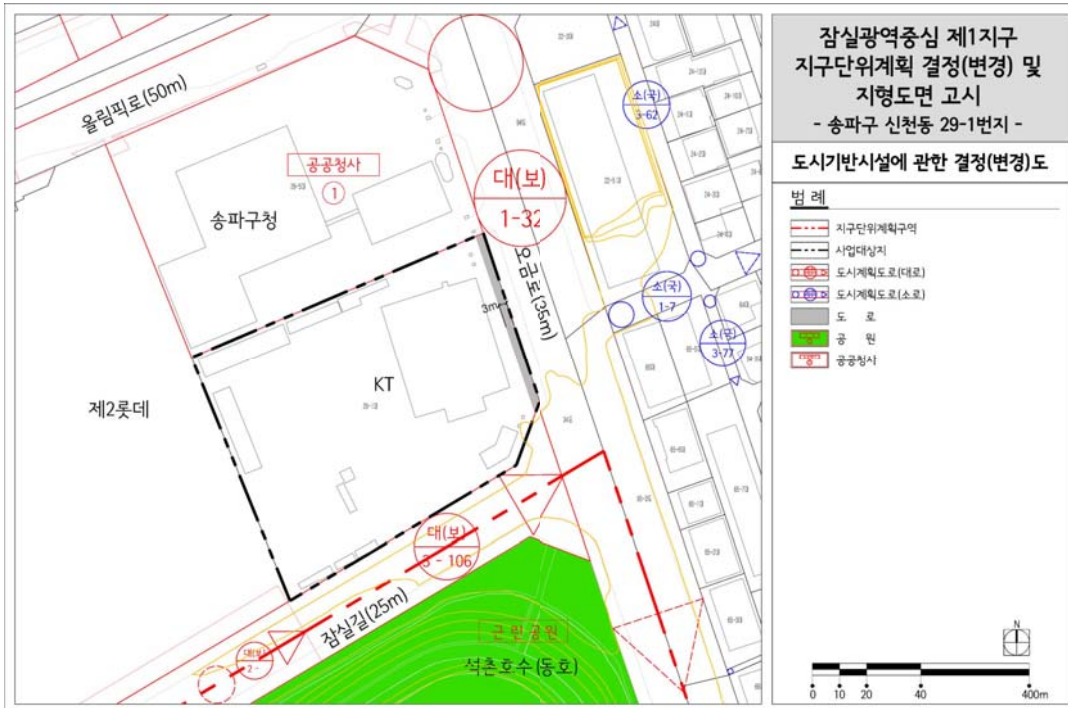
V. 열람장소 : 송파구 도시계획과(☎02-2147-3002),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90)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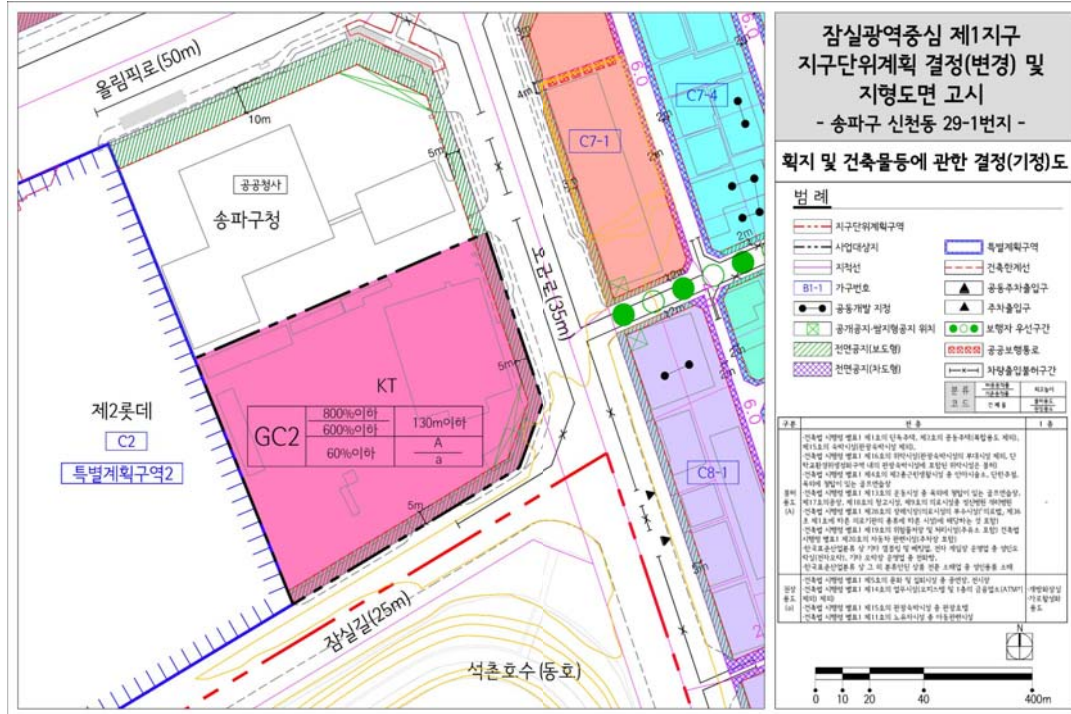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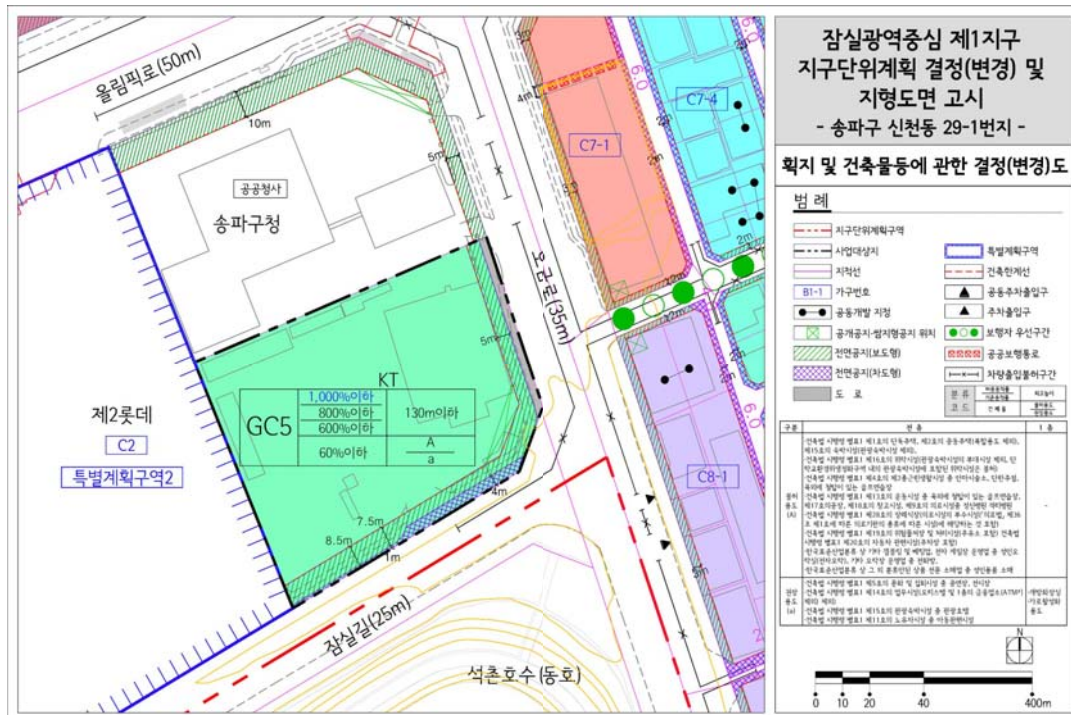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17호

문정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07호(2007.6.2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0호(2008.12.26.)로 개발계획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5호(2009.5.14.)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8호(2009.5.28.)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42호(2011.6.2.)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1호(2012.10.11.)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56호(2013.8.1.)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97호(2013.11.28.)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64호(2013.12.26.)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04호(2014.3.20.)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07호(2014.3.20.)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78호(2014.5.8.)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12호(2014.6.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35호(2014.9.25.)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9호(2015.6.18.)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19호(2015.10.15.)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07호(2015.12.24.)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문정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I. 문정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문정도시개발구역(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변경)

- 지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일원
- 변경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9번지 일원

• 면적 : 548,239.0㎡(변경없음)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문정지역 주변의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익성이 전제된 친환경적 도시개발 도모
- 신성장동력산업 및 공공행정 지원시설을 계획적으로 유치하여 서울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 시행자(변경)

- 지정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변창흠
- 변경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 사무소 소재지 : 강남구 개포로 621(강남구 개포동 14-5)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기간	2007.06.28 ~ 2016.12.31	2007.06.28 ~ 2017.12.31	

- 변경사유 : 개발계획 변경 등 사업준공을 위한 사업기간 부족

- 시행방법(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서고시2015-407호)	증·감	변경(안)		
계	548,239	-	548,239.0	100.0	
업무용지	151,551	증)21.8	151,572.8	27.7	
상업용지	19,809	증)5.4	19,814.4	3.6	
공공지원 용지	12,295	감)0.3	12,294.7	2.2	
도시기반시설용지	355,618	감)95.7	355,522.3	64.9	
공공청사	111,166	증)1.2	111,167.2	20.3	
법원/등기소	29,765	증)0.2	29,765.2	5.4	
검찰청	26,679	감)0.1	26,678.9	4.9	
구치소/보호관찰소	36,367	증)0.7	36,367.7	6.6	
경찰기동대	13,065	증)0.1	13,065.1	2.4	
법무부부속시설	5,290	증)0.3	5,290.3	1.0	
소계	244,452	감)96.9	244,355.1	44.6	
광장	17,096 (18,814)	감)41.7	17,054.3 (18,772.3)	3.1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도로 : 1,718㎡
공원/녹지	116,152	증)63.7	116,215.7	21.2	13개소
근린공원	57,897	증)88.1	57,985.1	10.6	2개소
연결녹지	53,807	감)26.4	53,780.6	9.8	8개소
완충녹지	4,448	증)2.0	4,450.0	0.8	3개소
유수지 (저류시설)	(5,398)	증)0.5	(5,398.5)	(1.0)	도시계획시설(공원) 중복 결정
주차장	3,290	증)2.4	3,292.4	0.6	2개소
도로	107,914	감)121.3	107,792.7	19.7	
유보지	8,966	증)68.8	9,034.8	1.6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 기반시설계획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문정도시 개발구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9 일원	548,239	-	548,239.0	서울시고시 제2007-207호 (‘07.06.28)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문정도시 개발구역	위치변경 위치 : 문정동 350 일원 → 문정동 649 일원	확정측량 결과반영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문정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9 일원	548,239	-	548,239.0	서울시고시 제2007-207호 (‘07.06.28)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문정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위치변경 위치 : 문정동 350 일원 → 문정동 649 일원	확정측량 결과반영

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용 도 지 역 별	면 적(㎡)			구 성 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48,239	-	548,239	100.0	
일반상업지역	285,064	감)34	285,030	52.0	
3종일반주거지역	263,175	증)34	263,209	48.0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34	확정측량 결과반영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 지구	일반 미관지구	석촌동 ~ 장지동	110,477 (5,342)	4,603.5 (473.5)	12	서울시고시 제164호 (‘82.04.22)	()는 구역내 사항임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① 도로(변경)

- 도로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22	15,839	107,914.0	6	3,509	29,991.0	9	9,719	31,598.0	7	2,611	46,325.0
	변경	22	15,839	107,792.7	6	3,509	29,854.0	9	9,719	31,671.3	7	2,611	46,267.4
광로	기정	2	8,715	3,721.0	-	-	-	1	8,000	2,352.0	1	715	1,369.0
	변경	2	8,715	3,706.1	-	-	-	1	8,000	2,382.8	1	715	1,323.3
대로	기정	4	3,947	46,311.0	2	2,775	11,800.0	-	-	-	2	1,172	34,511.0
	변경	4	3,947	46,129.7	2	2,775	11,625.6	-	-	-	2	1,172	34,504.1
중로	기정	13	3,053	56,857.0	3	724	18,077.0	6	1,605	28,335.0	4	724	10,445.0
	변경	13	3,053	56,927.4	3	724	18,109.2	6	1,605	28,378.2	4	724	10,440.0
소로	기정	3	124	1,025.0	1	10	114.0	2	114	911.0	-	-	-
	변경	3	124	1,029.5	1	10	119.2	2	114	910.3	-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29	50~55	주간선 도로	8,000	잠실대교	성남시계	일반도로	건고시 제198호 (’71.04.07)	송파대로
변경	광로	2	29	50~55	주간선 도로	8,000	잠실대교	성남시계	일반도로	건고시 제198호 (’71.04.07)	송파대로 선형조정
기정	광로	3	1	40~43	보조간선 도로	715	문정동 310-3	문정동 392-14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변경	광로	3	1	40~43	보조간선 도로	715	문정동 310-3	문정동 392-14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선형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74	25~60	보조간선도로	1,960	문정동 150-14	장지동 233-10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6-172호 ('06.05.11)	
변경	대로	1	74	25~60	보조간선도로	1,960	문정동 150-14	장지동 233-10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6-172호 ('06.05.11)	선형조정
기정	대로	1	181	35	보조간선도로	815	문정동 462	문정동 134-3	일반도로	건고시 제415호 ('86.09.23)	
변경	대로	1	181	35	보조간선도로	815	대로1-74	대로2-29	일반도로	건고시 제415호 ('86.09.23)	선형조정
기정	대로	3	3	29	보조간선도로	700	문정동 305-15	문정동 200-2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변경	대로	3	3	29	보조간선도로	700	광로3-3	대로1-18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선형조정
기정	대로	3	4	27	집산도로	472	문정동 210-2	문정동 479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대로	3	4	27	집산도로	472	대로3-3	문정동 638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선형조정
기정	중로	1	3	22	집산도로	140	문정동 326-5	문정동 321-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변경	중로	1	3	22	집산도로	140	문정동 652-2	대로3-3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선형조정
기정	중로	1	4	24	집산도로	446	문정동 340-1	문정동 397-2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변경	중로	1	4	24	집산도로	446	대로3-3	광로3-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선형조정
기정	중로	1	6	24~30	집산도로	138	문정동 492-3	문정동 500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중로	1	6	24~30	집산도로	138	대로3-4	대로1-18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선형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219	문정동 388-9	문정동 372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변경	중로	2	1	15	국지도로	219	중로2-1	중로2-2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선형조정
기정	중로	2	2	15	국지도로	918	문정동 347-1	문정동 346-2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변경	중로	2	2	15	국지도로	681	대로3-3	대로3-3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선형조정
기정	중로	2	3	19	국지도로	153	문정동 375	문정동 493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중로	2	3	19	국지도로	153	중로2-2	대로3-4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선형조정
기정	중로	2	4	15	국지도로	154	문정동 379-1	문정동 479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중로	2	4	15	국지도로	265	중로2-2	대로3-4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선형조정
기정	중로	2	5	17.5~ 24	국지도로	201	문정동 226-6	문정동 191-12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중로	2	5	17.5~ 24	국지도로	201	광로2-29	대로3-3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선형조정
기정	중로	2	7	15	국지도로	86	문정동 210-1	문정동 191-6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변경	중로	2	7	15	국지도로	86	대로3-4	문정동 64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선형조정
기정	중로	3	1	13	국지도로	187	문정동 319-2	문정동 325-4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12.10.11)	
변경	중로	3	1	13	국지도로	187	대로3-3	중로1-3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12.10.11)	선형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2	13	국지도로	215	문정동 340	문정동 325-4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12.10.11)	
변경	중로	3	2	13	국지도로	215	대로3-3	중로1-3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12.10.11)	선형조정
기정	중로	3	3	14.5	국지도로	155	문정동 513	문정동 505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12.10.11)	
변경	중로	3	3	14.5	국지도로	155	대로3-4	중로1-6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12.10.11)	선형조정
기정	중로	3	4	14.5	국지도로	167	문정동 479	문정동 497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변경	중로	3	4	14.5	국지도로	167	대로3-4	중로1-6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선형조정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	문정동 384-1	문정동 384-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	대로1-74	문정동 654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선형조정
기정	소로	2	3	8	특수도로	55	문정동 327-3	문정동 326-5	보행자 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보행자 전용도로
변경	소로	2	3	8	특수도로	55	광로2-29	중로1-3	보행자 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보행자 전용도로 선형조정
기정	소로	2	4	8	특수도로	59	문정동 325-2	문정동 326-1	보행자 도로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12.10.11)	보행자 전용도로
변경	소로	2	4	8	특수도로	59	광로2-29	중로3-2	보행자 도로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12.10.11)	보행자 전용도로 선형조정

- 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2-29	광로2-29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광로3-1	광로3-1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대로1-74	대로1-74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대로1-181	대로1-181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대로3-3	대로3-3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대로3-4	대로3-4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3	중로1-3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중로1-4	중로1-4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중로1-6	중로1-6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중로2-1	중로2-1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중로2-2	중로2-2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중로2-3	중로2-3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중로2-4	중로2-4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중로2-5	중로2-5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중로2-7	중로2-7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중로3-1	중로3-1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중로3-2	중로3-2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중로3-3	중로3-3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중로3-4	중로3-4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소로1-1	소로1-1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소로2-3	소로2-3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소로2-4	소로2-4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②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주차장	문정동 652-1	2,149	증) 2.5	2,151.5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8BL
변경	②	주차장	문정동 640-9	1,141	감) 0.1	1,140.9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12.10.11)	5BL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면적 및 위치변경 A=2,149㎡ → 2,151.5㎡ (증 2.5㎡) 위치 : 문정동 320-1 → 문정동 652-1	확정측량 결과반영
②	주차장	면적 및 위치변경 A=1,141㎡ → 1,140.9㎡ (감 0.1㎡) 위치 : 문정동 513 → 문정동 640-9	확정측량 결과반영

2) 공간시설(변경)

①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광장	근린 광장	문정동 643일원	18,814	감)41.7	18,772.3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 09.05.28)	- 기존 중복결정 (도로 1,718㎡)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광장	면적 및 위치변경 A=18,814㎡ → 18,772.3㎡(감 41.7㎡) 위치 : 문정동 222-5 → 문정동 643	확정측량 결과반영

②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근린 공원	문정동 653	36,620	증)18.3	36,638.3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 09.05.28)	
변경	②	공원	근린 공원	문정동 638	21,277	증)69.8	21,346.8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 09.05.28)	5,398.5㎡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중복 결정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면적 및 위치변경 A=36,620㎡ → 36,638.3㎡(증18.3㎡) 위치 : 문정동 359-2 → 문정동 653	확정측량 결과반영
②	공원	면적 및 변경 A=21,277㎡ → 21,346.8㎡(증69.8㎡) 위치 : 문정동 481 → 문정동 638	확정측량 결과반영

③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녹지	완충 녹지	문정동 647-1	858	증) 19.4	877.4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②	녹지	완충 녹지	문정동 648-1	2,636	감) 5.0	2,631.0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③	녹지	완충 녹지	문정동 654-2	954	감) 12.4	941.6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변경	①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0-2	4,987	감) 42.2	4,944.8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②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4-1	5,127	감) 11.3	5,115.7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③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7-2	9,287	감) 3.3	9,283.7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④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50-1	7,500	감) 7.1	7,492.9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⑤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2-1	7,121	감) 0.3	7,120.7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⑥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0-1	11,590	증) 25.9	11,615.9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⑦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39-1	4,311	증) 28.5	4,339.5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⑧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7-4	3,884	감) 16.6	3,867.4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완충녹지	면적 및 위치변경 A=858㎡ → 877.4㎡ (증19.4㎡) 위치 : 문정동 418 → 문정동 647-1	확정측량 결과반영
②	완충녹지	면적 및 위치변경 A=2,636㎡ → 2,631.0㎡ (감5.0㎡) 위치 : 문정동 383 → 문정동 648-1	확정측량 결과반영
③	완충녹지	면적 및 위치변경 A=954㎡ → 941.6㎡ (감12.4㎡) 위치 : 문정동 392 → 문정동 654-2	확정측량 결과반영
①	연결녹지	면적 및 위치변경 A=4,987㎡ → 4,944.8㎡ (감42.2㎡) 위치 : 문정동 513 → 문정동 640-2	확정측량 결과반영
②	연결녹지	면적 및 위치변경 A=5,127㎡ → 5,115.7㎡ (감11.3㎡) 위치 : 문정동 213 → 문정동 644-1	확정측량 결과반영
③	연결녹지	면적 및 위치변경 A=9,287㎡ → 9,283.7㎡ (감3.3㎡) 위치 : 문정동 379 → 문정동 647-2	확정측량 결과반영
④	연결녹지	면적 및 위치변경 A=7,500㎡ → 7,492.9㎡ (감7.1㎡) 위치 : 문정동 363 → 문정동 650-1	확정측량 결과반영
⑤	연결녹지	면적 및 위치변경 A=7,121㎡ → 7,120.7㎡ (감0.3㎡) 위치 : 문정동 195 → 문정동 642-1	확정측량 결과반영
⑥	연결녹지	면적 및 위치변경 A=11,590㎡ → 11,615.9㎡ (증25.9㎡) 위치 : 문정동 509 → 문정동 640-1	확정측량 결과반영
⑦	연결녹지	면적 및 위치변경 A=4,311㎡ → 4,339.5㎡ (증28.5㎡) 위치 : 문정동 485 → 문정동 639-1	확정측량 결과반영
⑧	연결녹지	면적변경 A=3,884㎡ → 3,867.4㎡ (감16.6㎡) 위치 : 문정동 370 → 문정동 647-4	확정측량 결과 반영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 청사	법원/ 등기소	문정동 650	29,765	증) 0.2	29,765.2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변경	②	공공 청사	검찰청	문정동 649	26,679	감) 0.1	26,678.9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변경	③	공공 청사	구치소/ 보호관찰소	문정동 648	36,367	증) 0.7	36,367.7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변경	④	공공 청사	경찰 기동대	문정동 654	13,065	증) 0.1	13,065.1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변경	⑤	공공 청사	법무부 부속시설	문정동 647	5,290	증) 0.3	5,290.3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 청사	면적 및 위치변경 A=29,765㎡ → 29,765.2㎡ (증0.2㎡) 위치 : 문정동 352 → 문정동 650	확정측량 결과반영
②	공공 청사	면적변경 A=26,679㎡ → 26,678.9㎡ (감0.1㎡) 위치 : 문정동 388-4 → 문정동 649	확정측량 결과반영
③	공공 청사	면적변경 A=36,367㎡ → 36,367.7㎡ (증0.7㎡) 위치 : 문정동 385 → 문정동 648	확정측량 결과반영
④	공공 청사	면적변경 A=13,065㎡ → 13,065.1㎡ (증0.1㎡) 위치 : 문정동 394 → 문정동 654	확정측량 결과반영
⑤	공공 청사	면적변경 A=5,290㎡ → 5,290.3㎡ (증0.3㎡) 위치 : 문정동 418 → 문정동 647	확정측량 결과반영

4) 방재시설(변경)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유수지	저류 시설	문정동 638-1	5,398	증) 0.5	5,398.5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도시계획시설 (공원) 중복 결정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유수지	면적 및 위치변경 A=5,398㎡ → 5,398.5㎡ (증0.5㎡) 위치 : 문정동 481 → 문정동 638-1	확정측량 결과반영

5) 환경기초시설(변경)

○ 하수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변경	-	하수도	문정동 119-4	문정동 421	대로 3-4	893	7,321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 09.05.28)	· 기존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 공원 : 707㎡ - 광장 : 541㎡ - 도로 : 5,418㎡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하수도	주요경과지 변경 문정동 493 → 대로3-4	확정측량 결과반영

7. 토지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 해당사항 없음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구역지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변경없음)

10.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사항 중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과 동일

11.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 02)2133-4641)
 - 송파구청 도시전략과 (☎ 02)2147-2171)
 -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 (☎ 02)3410-7594)

II. 문정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의 명칭 : 문정도시개발구역(변경없음)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문정지역 주변의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익성이 전제된 친환경적 도시개발 도모
- 신성장동력산업 및 공공행정 지원시설을 계획적으로 유치하여 서울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변경)
 - 기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일원
 - 변경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9번지 일원
- 면적 : 548,239.0㎡

4. 시행자(변경)

- 기정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변창흠
- 변경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5. 시행기간(변경)

- 시행기간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기간	2007.06.28 ~ 2016.12.31	2007.06.28 ~ 2017.12.31	

- 변경사유 : 개발계획 변경 등 사업준공을 위한 사업기간 부족

6. 시행방식 (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 내용(변경)

1)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변경)

①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문정도시 개발구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9번지 일원	548,239	-	548,239.0	서울시고시 제2007-207호 (‘07.06.28)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문정도시개 발구역	위치변경 위치 : 문정동 350 일원 → 문정동 649 일원	확정측량 결과반영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문정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9번지 일원	548,239	-	548,23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07호 (’07.06.28)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문정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위치변경 위치 : 문정동 350 일원 → 문정동 649 일원	확정측량 결과반영

3)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 도 지 역 별	면 적(㎡)			구 성 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48,239	-	548,239	100.0	
일반상업지역	285,064	감) 34	285,030	52.0	
3종일반주거지역	263,175	증) 34	263,209	48.0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34	확정측량 결과 반영

②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 지구	일반 미관지구	석촌동 ~ 장지동	110,477 (5,342)	4,603.5 (473.5)	12	서울시고시 제164호 (’82.04.22)	()는 구역내 사항임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①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22	15,839	107,914.0	6	3,509	29,991.0	9	9,719	31,598.0	7	2,611	46,325.0
	변경	22	15,839	107,792.7	6	3,509	29,854.0	9	9,719	31,671.3	7	2,611	46,267.4
광로	기정	2	8,715	3,721.0	-	-	-	1	8,000	2,352.0	1	715	1,369.0
	변경	2	8,715	3,706.1	-	-	-	1	8,000	2,382.8	1	715	1,323.3
대로	기정	4	3,947	46,311.0	2	2,775	11,800.0	-	-	-	2	1,172	34,511.0
	변경	4	3,947	46,129.7	2	2,775	11,625.6	-	-	-	2	1,172	34,504.1
중로	기정	13	3,053	56,857.0	3	724	18,077.0	6	1,605	28,335.0	4	724	10,445.0
	변경	13	3,053	56,927.4	3	724	18,109.2	6	1,605	28,378.2	4	724	10,440.0
소로	기정	3	124	1,025.0	1	10	114.0	2	114	911.0	-	-	-
	변경	3	124	1,029.5	1	10	119.2	2	114	910.3	-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29	50~55	주간선 도로	8,000	잠실대교	성남시계	일반도로	건고시 제198호 ('71.04.07)	송파대로
변경	광로	2	29	50~55	주간선 도로	8,000	잠실대교	성남시계	일반도로	건고시 제198호 ('71.04.07)	송파대로 선형조정
기정	광로	3	1	40~43	보조간선 도로	715	문정동 310-3	문정동 392-14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변경	광로	3	1	40~43	보조간선 도로	715	문정동 310-3	문정동 392-14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선형조정
기정	대로	1	74	25~60	보조간선 도로	1,960	문정동 150-14	장지동 233-10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6-172호 ('06.05.11)	
변경	대로	1	74	25~60	보조간선 도로	1,960	문정동 150-14	장지동 233-10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6-172호 ('06.05.11)	선형조정
기정	대로	1	181	35	보조간선 도로	815	문정동 462	문정동 134-3	일반도로	건고시 제415호 ('86.09.23)	
변경	대로	1	181	35	보조간선 도로	815	대로1-74	대로2-29	일반도로	건고시 제415호 ('86.09.23)	선형조정
기정	대로	3	3	29	보조간선 도로	700	문정동 305-15	문정동 200-2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변경	대로	3	3	29	보조간선 도로	700	광로3-3	대로1-18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선형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4	27	집산도로	472	문정동 210-2	문정동 479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대로	3	4	27	집산도로	472	대로3-3	문정동 638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선형조정
기정	중로	1	3	22	집산도로	140	문정동 326-5	문정동 321-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변경	중로	1	3	22	집산도로	140	문정동 652-2	대로3-3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선형조정
기정	중로	1	4	24	집산도로	446	문정동 340-1	문정동 397-2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변경	중로	1	4	24	집산도로	446	대로3-3	광로3-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선형조정
기정	중로	1	6	24~30	집산도로	138	문정동 492-3	문정동 500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중로	1	6	24~30	집산도로	138	대로3-4	대로1-18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선형조정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219	문정동 388-9	문정동 372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변경	중로	2	1	15	국지도로	219	중로2-1	중로2-2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선형조정
기정	중로	2	2	15	국지도로	918	문정동 347-1	문정동 346-2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변경	중로	2	2	15	국지도로	681	대로3-3	대로3-3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선형조정
기정	중로	2	3	19	국지도로	153	문정동 375	문정동 493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중로	2	3	19	국지도로	153	중로2-2	대로3-4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선형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4	15	국지도로	154	문정동 379-1	문정동 479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중로	2	4	15	국지도로	265	중로2-2	대로3-4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선형조정
기정	중로	2	5	17.5~24	국지도로	201	문정동 226-6	문정동 191-12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중로	2	5	17.5~24	국지도로	201	광로2-29	대로3-3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선형조정
기정	중로	2	7	15	국지도로	86	문정동 210-1	문정동 191-6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변경	중로	2	7	15	국지도로	86	대로3-4	문정동 64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선형조정
기정	중로	3	1	13	국지도로	187	문정동 319-2	문정동 325-4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12.10.11)	
변경	중로	3	1	13	국지도로	187	대로3-3	중로1-3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12.10.11)	선형조정
기정	중로	3	2	13	국지도로	215	문정동 340	문정동 325-4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12.10.11)	
변경	중로	3	2	13	국지도로	215	대로3-3	중로1-3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12.10.11)	선형조정
기정	중로	3	3	14.5	국지도로	155	문정동 513	문정동 505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12.10.11)	
변경	중로	3	3	14.5	국지도로	155	대로3-4	중로1-6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12.10.11)	선형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4	14.5	국지도로	167	문정동 479	문정동 497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변경	중로	3	4	14.5	국지도로	167	대로3-4	중로1-6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선형조정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	문정동 384-1	문정동 384-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	대로1-74	문정동 654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선형조정
기정	소로	2	3	8	특수도로	55	문정동 327-3	문정동 326-5	보행자 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보행자 전용도로
변경	소로	2	3	8	특수도로	55	광로2-29	중로1-3	보행자 도로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보행자 전용도로 선형조정
기정	소로	2	4	8	특수도로	59	문정동 325-2	문정동 326-1	보행자 도로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12.10.11)	보행자 전용도로
변경	소로	2	4	8	특수도로	59	광로2-29	중로3-2	보행자 도로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12.10.11)	보행자 전용도로 선형조정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2-29	광로2-29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광로3-1	광로3-1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대로1-74	대로1-74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대로1-181	대로1-181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대로3-3	대로3-3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대로3-4	대로3-4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3	중로1-3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중로1-4	중로1-4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중로1-6	중로1-6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중로2-1	중로2-1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중로2-2	중로2-2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중로2-3	중로2-3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중로2-4	중로2-4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중로2-5	중로2-5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중로2-7	중로2-7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중로3-1	중로3-1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중로3-2	중로3-2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중로3-3	중로3-3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중로3-4	중로3-4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소로1-1	소로1-1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소로2-3	소로2-3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소로2-4	소로2-4	선형조정, 기종점 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2)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주차장	문정동 652-1	2,149	증) 2.5	2,151.5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8BL
변경	②	주차장	문정동 640-9	1,141	감) 0.1	1,140.9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12.10.11)	5BL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면적 및 위치변경 A=2,149㎡ → 2,151.5㎡ (증 2.5㎡) 위치 : 문정동 320-1 → 문정동 652-1	확정측량 결과반영
②	주차장	면적 및 위치변경 A=1,141㎡ → 1,140.9㎡ (감 0.1㎡) 위치 : 문정동 513 → 문정동 640-9	확정측량 결과반영

② 공간시설(변경)

(1) 광장(변경)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광장	근린 광장	문정동 643일원	18,814	감)41.7	18,772.3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 기존 중복결정 (도로 1,718㎡)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광장	면적 및 위치변경 A=18,814㎡ → 18,772.3㎡(감 41.7㎡) 위치 : 문정동 222-5 → 문정동 643	확정측량 결과 반영

(2)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근린 공원	문정동 653	36,620	증) 18.3	36,638.3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②	공원	근린 공원	문정동 638	21,277	증) 69.8	21,346.8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5,398.5㎡ : 도시계획시설(유수 지) 중복 결정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면적 및 위치변경 A=36,620㎡ → 36,638.3㎡ (증18.3㎡) 위치 : 문정동 359-2 → 문정동 653	확정측량 결과 반영
②	공원	면적 및 위치변경 A=21,277㎡ → 21,346.8㎡ (증69.8㎡) 위치 : 문정동 481 → 문정동 638	확정측량 결과 반영

(3)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녹지	완충 녹지	문정동 647-1	858	증) 19.4	877.4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②	녹지	완충 녹지	문정동 648-1	2,636	감) 5.0	2,631.0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③	녹지	완충 녹지	문정동 654-2	954	감) 12.4	941.6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변경	①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0-2	4,987	감) 42.2	4,944.8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②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4-1	5,127	감) 11.3	5,115.7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③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7-2	9,287	감) 3.3	9,283.7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④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50-1	7,500	감) 7.1	7,492.9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⑤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2-1	7,121	감) 0.3	7,120.7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⑥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0-1	11,590	증) 25.9	11,615.9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⑦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39-1	4,311	증) 28.5	4,339.5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⑧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7-4	3,884	감) 16.6	3,867.4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완충녹지	면적 및 위치변경 A=858㎡ → 877.4㎡ (증19.4㎡) 위치 : 문정동 418 → 문정동 647-1	확정측량 결과반영
②	완충녹지	면적 및 위치변경 A=2,636㎡ → 2,631.0㎡ (감5.0㎡) 위치 : 문정동 383 → 문정동 648-1	확정측량 결과반영
③	완충녹지	면적 및 위치변경 A=954㎡ → 941.6㎡ (감12.4㎡) 위치 : 문정동 392 → 문정동 654-2	확정측량 결과반영
①	연결녹지	면적 및 위치변경 A=4,987㎡ → 4,944.8㎡ (감42.2㎡) 위치 : 문정동 513 → 문정동 640-2	확정측량 결과반영
②	연결녹지	면적 및 위치변경 A=5,127㎡ → 5,115.7㎡ (감11.3㎡) 위치 : 문정동 213 → 문정동 644-1	확정측량 결과반영
③	연결녹지	면적 및 위치변경 A=9,287㎡ → 9,283.7㎡ (감3.3㎡) 위치 : 문정동 379 → 문정동 647-2	확정측량 결과반영
④	연결녹지	면적 및 위치변경 A=7,500㎡ → 7,492.9㎡ (감7.1㎡) 위치 : 문정동 363 → 문정동 650-1	확정측량 결과반영
⑤	연결녹지	면적 및 위치변경 A=7,121㎡ → 7,120.7㎡ (감0.3㎡) 위치 : 문정동 195 → 문정동 642-1	확정측량 결과반영
⑥	연결녹지	면적 및 위치변경 A=11,590㎡ → 11,615.9㎡ (증25.9㎡) 위치 : 문정동 509 → 문정동 640-1	확정측량 결과반영
⑦	연결녹지	면적 및 위치변경 A=4,311㎡ → 4,339.5㎡ (증28.5㎡) 위치 : 문정동 485 → 문정동 639-1	확정측량 결과반영
⑧	연결녹지	면적변경 A=3,884㎡ → 3,867.4㎡ (감16.6㎡) 위치 : 문정동 370 → 문정동 647-4	확정측량 결과 반영

③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 청사	법원/ 등기소	문정동 650	29,765	증) 0.2	29,765.2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변경	②	공공 청사	검찰청	문정동 649	26,679	감) 0.1	26,678.9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변경	③	공공 청사	구치소/ 보호관찰소	문정동 648	36,367	증) 0.7	36,367.7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변경	④	공공 청사	경찰 기동대	문정동 654	13,065	증) 0.1	13,065.1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06.09)	
변경	⑤	공공 청사	법무부 부속시설	문정동 647	5,290	증) 0.3	5,290.3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 청사	면적 및 위치변경 A=29,765㎡ → 29,765.2㎡ (증0.2㎡) 위치 : 문정동 352 → 문정동 650	확정측량 결과반영
②	공공 청사	면적변경 A=26,679㎡ → 26,678.9㎡ (감0.1㎡) 위치 : 문정동 388-4 → 문정동 649	확정측량 결과반영
③	공공 청사	면적변경 A=36,367㎡ → 36,367.7㎡ (증0.7㎡) 위치 : 문정동 385 → 문정동 648	확정측량 결과반영
④	공공 청사	면적변경 A=13,065㎡ → 13,065.1㎡ (증0.1㎡) 위치 : 문정동 394 → 문정동 654	확정측량 결과반영
⑤	공공 청사	면적변경 A=5,290㎡ → 5,290.3㎡ (증0.3㎡) 위치 : 문정동 418 → 문정동 647	확정측량 결과반영

④ 방재시설(변경)

(1) 유수지(변경)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유수지	저류 시설	문정동 638-1	5,398	증) 0.5	5,398.5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도시계획시설 (공원) 중복 결정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유수지	면적 및 위치변경 A=5,398㎡ → 5,398.5㎡ (증0.5㎡) 위치 : 문정동 481 → 문정동 638-1	확정측량 결과반영

⑤ 환경기초시설(변경)

(1) 하수도(변경)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변경	-	하수도	문정동 119-4	문정동 421	대로 3-4	893	7,321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기존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 공원 : 707㎡ - 광장 : 541㎡ - 도로 : 5,418㎡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하수도	주요경과지 변경 문정동 493 → 대로3-4	확정측량 결과반영

5)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①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가구 번호	면적(㎡)	구분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1BL	29,609.0	1-1	문정동 202-2일원	14,921.0	특별계획구역1 2개획지로 분할(1-1, 1-2)
			1-2	문정동 205-3일원	14,688.0	
변경	1BL	29,609.9	1-1	문정동 642	14,921.2	특별계획구역1 2개획지로 분할(1-1, 1-2)
			1-2	문정동 642-3	14,688.7	
기정	2BL	16,357.0	-	문정동 221일원	16,357.0	특별계획구역2
변경	2BL	16,357.2	-	문정동 643-1	16,357.2	특별계획구역2
기정	3BL	35,951.0	3-1	문정동 324-1일원	17,309.0	특별계획구역3
			3-2	문정동 340일원	934.0	
			3-3	문정동 323일원	913.0	
			3-4	문정동 324-8일원	961.0	
			3-5	문정동 326-1일원	1,934.0	
			3-6	문정동 339일원	2,430.0	공동개발(권장)
			3-7	문정동 324-2일원	2,090.0	
			3-8	문정동 324-10일원	1,556.0	
			3-9	문정동 322일원	1,580.0	공동개발(권장) ※ 공개공지 45㎡ 추가확보 : 공동개발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의한 기준면적 이외에 45㎡이상 추가확보
			3-10	문정동 324-5일원	1,555.0	
			3-11	문정동 324-3일원	1,554.0	
			3-12	문정동 326-3일원	1,580.0	
			3-13	문정동 326-4일원	1,555.0	
변경	3BL	35,969.6	3-1	문정동 651	17,310.7	특별계획구역3
			3-2	문정동 651-3	938.2	
			3-3	문정동 651-4	915.7	
			3-4	문정동 651-5	963.3	
			3-5	문정동 651-6	1,937.9	
			3-6	문정동 651-8	2,431.9	공동개발(권장)
			3-7	문정동 651-9	2,092.2	
			3-8	문정동 651-10	1,554.3	
			3-9	문정동 651-11	1,579.9	공동개발(권장) ※ 공개공지 45㎡ 추가확보 : 공동개발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의한 기준면적 이외에 45㎡이상 추가확보
			3-10	문정동 651-12	1,554.5	
			3-11	문정동 651-15	1,555.6	
			3-12	문정동 651-14	1,580.1	
			3-13	문정동 651-13	1,555.3	

구분	가구 번호	면적(㎡)	구분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4BL	19,984.0	4-1	문정동 191-6일원	5,685.0	공공지원용지
			4-2	문정동 209-1일원	3,780.0	특별계획구역4
			4-3	문정동 208일원	6,500.0	(개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2개획지로 분할)
			4-4	문정동 191-6일원	4,019.0	
변경	4BL	19,983.8	4-1	문정동 641	5,684.7	공공지원용지
			4-2	문정동 641-3	3,780.3	특별계획구역4
			4-3	문정동 641-4	6,499.8	(개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2개획지로 분할)
			4-4	문정동 641-11	4,019.0	
기정	5BL	11,637.0	5-1	문정동 507일원	1,033.0	공동개발(권장) ※ 공개공지 45㎡ 추가확보 : 공동개발시 서울특별 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의 한 기준면적 이외에 45㎡이상 추가확보 ※ 연결통로 조성 : 5-2, 5-3BL 대지내 연결통로 조성
			5-2	문정동 509일원	980.0	
			5-3	문정동 509일원	980.0	
			5-4	문정동 512일원	2,172.0	
			5-5	문정동 513일원	980.0	
			5-6	문정동 513일원	1,095.0	
			5-7	문정동 511일원	1,121.0	
			5-8	문정동 513일원	1,141.0	
			5-9	문정동 513일원	1,038.0	
			5-10	문정동 513일원	1,097.0	
변경	5BL	11,635.2	5-1	문정동 640	1,032.8	공동개발(권장) ※ 공개공지 45㎡ 추가확보 : 공동개발시 서울특별 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의 한 기준면적 이외에 45㎡이상 추가확보 ※ 연결통로 조성 : 5-2, 5-3BL 대지내 연결통로 조성
			5-2	문정동 640-3	980.3	
			5-3	문정동 640-4	980.3	
			5-4	문정동 640-5	2,171.2	
			5-5	문정동 640-6	980.0	
			5-6	문정동 640-7	1,095.2	
			5-7	문정동 640-8	1,120.7	
			5-8	문정동 640-9	1,140.9	
			5-9	문정동 640-11	1,037.4	
			5-10	문정동 640-10	1,096.4	
기정	6BL	17,665.0	6-1	문정동 212일원	9,045.0	특별계획구역6
			6-2	문정동 215일원	8,620.0	(2개획지로 분할)
변경	6BL	17,665.4	6-1	문정동 644	9,045.4	특별계획구역6
			6-2	문정동 644-2	8,620.0	(2개획지로 분할)
기정	7BL	17,721.0	7-1	문정동 379-7일원	8,803.0	특별계획구역7
			7-2	문정동 377-1일원	8,918.0	(2개획지로 분할)
변경	7BL	17,718.0	7-1	문정동 645	8,801.2	특별계획구역7
			7-2	문정동 645-2	8,916.8	(2개획지로 분할)

구분	가구 번호	면적(㎡)	구분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8BL	21,958.0	8-1	문정동 320-1일원	4,030.0	공동개발(권장)
			8-2	문정동 326-6일원	3,321.0	
			8-3	문정동 305-17일원	3,811.0	
			8-4	문정동 305-5일원	3,927.0	공동개발(권장)
			8-5	문정동 306-1일원	4,720.0	
			8-6	문정동 320-1일원	2,149.0	주차장
변경	8BL	21,965.9	8-1	문정동 652	4,033.9	공동개발(권장)
			8-2	문정동 652-2	3,321.2	
			8-3	문정동 652-3	3,811.4	
			8-4	문정동 652-4	3,927.2	공동개발(권장)
			8-5	문정동 652-5	4,720.7	
			8-6	문정동 652-1	2,151.5	주차장
기정	9BL	56,444.0	9-1	문정동 388-4일원	26,679.0	검찰청
			9-2	문정동 352일원	29,765.0	법원/등기소
변경	9BL	56,444.1	9-1	문정동 649	26,678.9	검찰청
			9-2	문정동 650	29,765.2	법원/등기소
기정	10BL	14,743.0	10-1	문정동 470일원	1,512.0	공동개발(권장) ※ 공공보행통로(폭4m) 지정 : 공동개발시 공공보행통로 폭원 4m이상 지정
			10-2	문정동 491일원	1,332.0	
			10-3	문정동 491일원	1,324.0	
			10-4	문정동 483일원	1,377.0	
			10-5	문정동 491일원	1,401.0	
			10-6	문정동 492일원	1,257.0	
			10-7	문정동 492-2일원	1,250.0	
			10-8	문정동 418일원	5,290.0	법무부 부속시설
변경	10BL	14,749.6	10-1	문정동 639	1,513.0	공동개발(권장) ※ 공공보행통로(폭4m) 지정 : 공동개발시 공공보행통로 폭원 4m이상 지정
			10-2	문정동 639-3	1,332.2	
			10-3	문정동 639-4	1,324.0	
			10-4	문정동 639-5	1,378.5	
			10-5	문정동 639-6	1,401.9	
			10-6	문정동 639-8	1,258.2	
			10-7	문정동 639-7	1,251.5	
			10-8	문정동 647	5,290.3	법무부 부속시설
기정	11BL	15,576.0	11-1	문정동 379-7일원	6,610.0	공공지원용지
			11-2	문정동 493일원	8,966.0	유보지
변경	11BL	15,644.8	11-1	문정동 646-2	6,610.0	공공지원용지
			11-2	문정동 646	9,034.8	유보지
기정	12BL	49,435.0	12-1	문정동 385일원	36,370.0	구치소/보호관찰소
			12-2	문정동 394일원	13,065.0	경찰기동대
변경	12BL	49,432.8	12-1	문정동 648	36,367.7	구치소/보호관찰소
			12-2	문정동 654	13,065.1	경찰기동대

※ 공동개발시 공공기여방안 불입 예시(안) 참조

6)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변경없음)

① 공공지원시설 용지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4BL	4-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바닥면적의 합계 1천㎡ 미만)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 사무소 · 출판사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 연구소 · 도서관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 \leq 1.5D$)을 적용하지 않음 ◦배치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건축선 :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 \leq 1.5D$)을 적용하지 않음
		배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11BL	11-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바닥면적의 합계 1천㎡ 미만)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 사무소 · 출판사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 연구소 · 도서관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 \leq 1.5D$)을 적용하지 않음 ◦배치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건축선 :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 \leq 1.5D$)을 적용하지 않음
		배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건축선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공공보행통로	◦11-1BL과 11-2BL사이에 폭 4m의 공공보행통로 조성(각 2m)

② 공공청사 용지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9BL 12BL	9-1 9-2 12-2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공공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 \leq 1.5D$)을 적용하지 않음
		배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 연결도로 변 2m - 사업지 서측(탄천 우안도로) 완충녹지 변 2m
10BL	10-8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공공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 \leq 1.5D$)을 적용하지 않음
		배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 연결도로 변 2m - 사업지 서측(탄천 우안도로) 완충녹지 변 2m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12BL	12-1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공공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 \leq 1.5D$)을 적용하지 않음
		배치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연결도로 변 2m - 사업지 서측(탄천 우안도로) 완충녹지 변 2m

③ 유보지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11BL	11-2	용도	◦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용도계획 수립시까지 용도 미정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 \leq 1.5D$)을 적용하지 않음
		배치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
		공공보행통로	◦ 11-1BL과 11-2BL사이에 폭 4m의 공공보행통로 조성(각 2m)

④ 주차장 용지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5BL	5-8	용도	◦ 허용용도 : 노외주차장과 그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건축물 내 자동차 관련시설주1)
			◦ 지상층 연면적의 70%이상을 주차시설로 지상층에 확보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 \leq 1.5D$)을 적용하지 않음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준용
		배치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
8BL	8-6	용도	◦ 허용용도 : 노외주차장과 그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건축물 내 자동차 관련시설주1)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 \leq 1.5D$)을 적용하지 않음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준용
		배치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8BL 상업용지번 : 3m

주1) 주차장 시설내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거 1·2종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시설을 30%미만으로 설치 할 수 있음

⑤ 미래형업무 용지

【3BL】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3BL	3-2 3-3 3-4 3-5 3-6 3-7 3-8 3-9 3-10 3-11 3-12 3-13	지정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상 입지
		권장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지상층 연면적의 40%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안마 시설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미래형 업무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며, 그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될 경우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 지역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600% 이하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연간 1차에너지 소비 총량을 280kWh/m ² ·y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며, 권장용도 40% 수용시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수용면적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적용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 구역 높이제한 적용 ◦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 하지 않음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준용	
		배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3BL	3-2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송파대로변 : 14m - 대로 3-3호선변 : 5m - 단지내도로변 : 3m	
	3-3			
	3-4			
	3-5			
	3-6			
	3-7	지하 연결통로	◦ 광장(컬처밸리)와 8BL을 연계한 연결통로 조성하여 계획적이며 일체적인 지하공간 개발 도모(폭원6m이상) - 3-5, 3-6, 3-7BL 송파대로변 공개공지 지하 활용	
	3-8			
	3-9			
	3-10			
	3-11			
	3-12			
	3-13			

【4BL】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4BL	4-4	지정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불특정 핵심(앵커)시설과 관련된 업무용도 (지상층 연면적의 2%이상 입지)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상 입지 (핵심시설 포함)
		권장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업무 용도로 건축 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지상층 연면적의 40%
		종교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 안마사술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지상층 연면적 20%미만 가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미래형 업무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며, 그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될 경우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 지역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60% 이하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4BL	4-4	용적률	◦기준용적률 : 600% 이하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 하여 건축물 연간 1차 에너지 소비 총량을 280kWh/㎡·y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며, 권장 용도 40% 수용시 용적 률 인센티브 5% 지원 ※ 수용면적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적용
		높이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비행 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 (H≤1.5D)을 적용하지 않음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준용	
		배치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단지내도로변 : 2m	
		【5BL】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5BL	5-1 5-2 5-3 5-4 5-5 5-6 5-7 5-9 5-10	지정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상 입지
		권장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지상층 연면적의 40%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5BL	5-1 5-2 5-3 5-4 5-5 5-6 5-7 5-9 5-10	불허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안마시 술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지상층 연면적의 20%미만 가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미래형 업무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며, 그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위험물 안 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될 경우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 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 지역내에서 입지 가능 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600% 이하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 하여 건축물 연간 1차 에너지 소비 총량을 280kWh/㎡·y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며, 권장 용도 40% 수용시 용적 률 인센티브 5% 지원 ※ 수용면적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적용
		높이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비행 안전구역 높 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 지 않음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준용	
		배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단지내도로변 : 2m	

【10BL】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10BL	10-1 10-2 10-3 10-4 10-5 10-6 10-7	용도	불허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안마시 술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지상층 연면적의 50%미만 가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미래형 업무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며, 그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위험물 안 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될 경우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 지역내에서 입지 가능 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용적률		◦기준용적률 : 60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 구역 높이 제한 적용 ◦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 지 않음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준용		
		배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단지내도로변 : 2m		

⑥ 상업 용지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8BL	8-1 8-2 8-3 8-4 8-5	용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지상 1~3층에만 해당) - 운수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창고시설/발전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장례식장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600% 이하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연간 1차에너지 소비 총량을 280kWh/㎡·y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높이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준용	
		배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건축선	◦송파대로변 14m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공개공지 조성
			◦대로3-3변 5m	
		지하 연결통로	◦광장(컬쳐밸리)와 3BL을 연계한 연결통로 조성하여 계획적이며 일체적인 지하공간 개발 도모(폭원6m이상) - 송파대로변 공개공지 지하 활용	

7)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①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도변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① 공개공지 ·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 · 대상 건축물 및 면적, 설치방식 등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서울시 건축조례」 제22조의 공개공지 등의 확보규정 준용 · 조성위치는 당해 대지와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변 또는 당해도로 가각부, 보행 결절점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 시설물의 설치등 관련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② 대지내조경 · 대지내 조경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및 면적 등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20조에 따른다. · 대지내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 기준은 「서울시 건축조례」 제21조에 따른다.	

②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변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① 차량출입불허구간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을 불허함. 다만, 법무시설은 비상시에 한하여 시설의 성격상 필요한 비상차량 진출입을 허용 한다. ※ 법무시설 ; 법원, 검찰청, 구치소, 경찰기동대, 법무부 부속시설 ② 차량동선 · 단지 내부 및 진출입차량 동선은 최소 5m 이상의 회전반경 확보해야 함 ③ 주차장 · 노외주차장의 해당필지에서 지하주차장을 권장하며, 지하주차장 조성시 선 큰을 통한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지상주차장 조성시 친환경적인 녹색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늘주차 방식으로 계획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 기타 관련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③ 환경친화 등에 관한 계획

도변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주차장 제외)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기준 (서울특별시 예규 제705호)」, 「국토해양부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 및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정도시개발구역” 내 모든 신축 공공·민간건축물은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기준’에 대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공건축물(신축, 증축, 개보수 포함) - 건축물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 10% 이상 - 건축물 연간 1차 에너지소비총량 : 270kWh/m²·y이하로 계획하여야하나 250kWh/m²·y 이하를 권장 · 민간건축물(신축, 증축, 개보수 포함) - 건축물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 5% 이상 - 건축물 연간 1차 에너지소비총량 ⇒ 특별계획구역 1, 3-1, 7BL : 250kWh/m²·y이하 ⇒ 특별계획구역 4-2, 4-3BL : 240kWh/m²·y이하 ⇒ 특별계획구역 2, 6BL : 280kWh/m²·y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나 250kWh/m²·y이하를 권장 ⇒ 특별계획구역 외 필지 : 280kWh/m²·y이하 ※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법령·조례·지침 등의 제·개정으로 서로 다를 경우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② 인센티브 · ‘친환경건축기준’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의 달성 정도에 따라 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물 및 국토해양부의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을 부여하며, 그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공공건축물(신축, 증축, 개보수 포함) <table><tr><th>구분</th><th>인센티브 내용</th></tr><tr><td rowspan="2">공공 건축물</td><td>·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시행에 의한 건물관리비용 절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예산절감실적으로 인정한다.</td></tr><tr><td>· 공공 건축물 건설 사업 추진시 친환경 설계 요소 적용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 대행 및 수수료 등을 사업 예산 책정시 반영 한다.</td></tr></table> · 민간건축물(신축, 증축, 개보수 포함) <table><tr><th>구분</th><th>인센티브 내용</th></tr><tr><td rowspan="6">민간 건축물</td><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td></tr><tr><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td></tr><tr><td>·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td></tr><tr><td>·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td></tr><tr><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 부착</td></tr><tr><td>· 그 밖에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td></tr></table> ③ 기타 관련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구분	인센티브 내용	공공 건축물	·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시행에 의한 건물관리비용 절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예산절감실적으로 인정한다.	· 공공 건축물 건설 사업 추진시 친환경 설계 요소 적용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 대행 및 수수료 등을 사업 예산 책정시 반영 한다.	구분	인센티브 내용	민간 건축물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	·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 부착	· 그 밖에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	
구분	인센티브 내용																
공공 건축물	·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시행에 의한 건물관리비용 절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예산절감실적으로 인정한다.																
	· 공공 건축물 건설 사업 추진시 친환경 설계 요소 적용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 대행 및 수수료 등을 사업 예산 책정시 반영 한다.																
구분	인센티브 내용																
민간 건축물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																
	·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 부착																
	· 그 밖에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																

④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관리계획(변경없음)

도변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미래형 업무단지	① 지정 및 권장용도(신성장동력산업) 관리계획(사업시행자 SH공사) · 업종배치 - 건물내 신성장동력산업을 층단위로 집중배치 (예 : 15층중 3개층) ※ 신성장동력산업의 세부 허용업종, 배치계획 등은 SH공사 내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문정지구 입지업종 선정위원회," 를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 · 입주관리 - SH공사내 산업분야 전문가로 (가칭) "문정지구 입지업종 선정위원회," 를 구성하여 적합 업종 선별 입주 - 신성장동력산업 동의 건물관리자는 이용현황을 종합하여 분기별 1회이상 SH공사에 신고 - 사무실 이용의 변동시(임대 또는 매매) 입주(예정)기업은 계약체결후 10일 이내에 SH공사에 신고하고 확인 ·유지관리 - SH공사에서는 년 1회 이용실태 조사 및 변동상황 확인 ※ 지정 및 권장업종에 대한 현황신고 및 이에 대한 실태조사용역 실시 -신성장동력 산업지대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5년간 집중관리	

※ 구체적인 개발행위(허가, 사용승인 등) 발생 시 서울시 및 사업시행자(SH공사)의 협의를 받아야함.

8)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변경)

(1)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구분	명칭	면적(㎡)	위치	지정목적
기정	특별계획구역1	29,609.0	문정동 202-2 일원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업무 용도의 체계적·계획적 입지를 유도하고, 문정역세권과 연계한 지하공간의 진취적이며 창의적인 개발을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변경	특별계획구역1	29,609.9	문정동 642 일원	
기정	특별계획구역2	16,357.0	문정동 221 일원	
변경	특별계획구역2	16,357.2	문정동 643-1	
기정	특별계획구역3	17,309.0	문정동 326-1 일원	
변경	특별계획구역3	17,310.7	문정동 651	
기정	특별계획구역4	10,280.0	문정동 191-6 일원	
변경	특별계획구역4	10,280.1	문정동 641-3 일원	
기정	특별계획구역6	17,665.0	문정동 216-1 일원	
변경	특별계획구역6	17,665.4	문정동 644 일원	
기정	특별계획구역7	17,721.0	문정동 376-2 일원	
변경	특별계획구역7	17,718.0	문정동 645 일원	

(2)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 구체적인 개발행위의 발생 시 사업시행자(SH공사)를 통해 세부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별도의 결정 과정을 거쳐 본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함.
- 특별계획구역내 세부개발계획 수립(변경)시 기반시설에 대한 변경(신설 포함)을 수반할 경우, 해당 시행자는 그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 변경을 수립해야 함.

② 특별계획구역 1(변경)

(1)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변경)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특별계획구역1	문정동 642 일원	29,609	증)0.9	29,609.9	확정측량 결과반영

(2) 가구 및 획지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역명	가구 번호	획지계획		비고
			위치	면적(㎡)	
기정	특별계획구역1	1-1	문정동 202-2 일원	14,921.0	
		1-2	문정동 205-3 일원	14,688.0	
변경	특별계획구역1	1-1	문정동 642	14,921.2	
		1-2	문정동 642-3	14,688.7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내용		비고
용도	지정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블록별 핵심(앵커)시설과 관련된 업무용도 ※ 핵심시설은 지상층 전용면적 기준으로 산정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상 입지 (핵심시설 포함)
	권장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업무 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 지상층 연면적의 40%

구분		내용	비고
용도	불허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 미래형 업무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며, 그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될 경우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600% 이하	·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연간 1차에너지 소비 총량을 250kWh/㎡·y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며, 권장용도 40% 수용시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 수용면적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적용
높이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 (H≤1.5D)을 적용하지 않음	

(4)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송파대로변 14m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공개공지 조성
	◦이면도로변 5m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대지내 공지

구분	내용	비고
공개공지	◦ 송파대로변으로 공개공지 지정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 14m	
공공보행통로	◦ 획지분할가능선에 의해 획지별로 개발 할 경우 각각의 대지는 폭 3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인접대지와 공동 조성 ◦ 획지1-1과 1-2를 연결하는 폭 4m이상의 남북간 공공보행통로 조성	

■ 교통처리계획

구분	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송파대로변에서 대지내 직접진출입 배제 ◦ 교통 흐름을 감안한 일부구간 차량출입불허	

■ 환경친화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친환경 건축기준	① 「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기준(서울특별시 예규 제705호)」 및 「국토해양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정도시개발구역」 내 모든 신축 민간건축물은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기준’에 대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축물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 5% 이상 · 건축물 연간 1차 에너지소비 총량 : 250kWh/m²·y이하 ※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법령·조례·지침 등의 제·개정으로 서로 다를 경우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② 인센티브 · ‘친환경건축기준’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의 달성 정도에 따라 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물 및 국토해양부의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을 부여하며, 그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table><tr><th>구분</th><th>인센티브 내용</th></tr><tr><td rowspan="6">민간 건축물</td><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td></tr><tr><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td></tr><tr><td>·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td></tr><tr><td>·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td></tr><tr><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 부착</td></tr><tr><td>· 그 밖에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td></tr></table>	구분	인센티브 내용	민간 건축물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	·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 부착	· 그 밖에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
구분	인센티브 내용									
민간 건축물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									
	·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 부착									
	· 그 밖에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									
③기타 관련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 시설물 설치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시설물 설치	구분	시설물	설치기준	※ 공간확보 불가능 등으로 부득이 공공시설 내 설치할 경우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식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한전 지상기기	변압기, 개폐기 등	· 지상기기는 사유지 내 설치하고,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내 설치 금지	
	지주형 시설물	가로등주, 한전주, 통신주, 신호등주, 안내표지판 등	· 지주형 시설물은 최대한 통합하고 단순화 · 기초는 부속물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여 설치	

③ 특별계획구역 2(변경)

(1)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변경)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특별계획구역2	문정동 643-1	16,357	증)0.2	16,357.2	확정측량 결과반영

(2) 가구 및 획지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역명	가구 번호	획지계획		비고
			위치	면적(㎡)	
기정	특별계획구역2	2	문정동 221 일원	16,357.0	
변경	특별계획구역2	2	문정동 643-1	16,357.2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내용	비고
용도	지정 용도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블록별 핵심(앵커)시설과 관련된 업무용도 (지상층 연면적의 2%이상 입지)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상 입지 (핵심시설 포함)
	권장 용도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지상층 연면적의 40%

구분		내용	비고
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지상층 연면적 30%미만 가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미래형 업무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며, 그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될 경우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1호의 - 대형마트	· 지정용도 외 일반 상업지역 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600% 이하	· 권장용도 40% 수용 및 건축물 연간 1차 에너지 소비 총량을 250kWh/m ² ·y 이하로 계획시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수용면적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적용
높이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 (H≤1.5D)을 적용하지 않음	

(4)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이면도로변 5m	보행자도로의 일반도로 전환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교통처리계획

구분	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교통 흐름을 감안한 일부구간 차량출입불허	
지하연결 통로	◦광장(컬처밸리)를 연계한 연결통로 조성하여 계획적이며 일체적인 지하공간 개발 도모	

■ 환경친화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친 환경 건축 기준	① 「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기준(서울특별시 예규 제705호)」 및 「국토해양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정도시개발구역」 내 모든 신축 민간건축물은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기준’에 대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축물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 5% 이상(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5%중 30%이상을 BIPV시스템 도입) – 태양광 에너지 생산설비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에너지원을 사용 · 건축물 연간 1차 에너지소비 총량 : 280kWh/m²·y이하로 계획 하여야 하나 250kWh/m²·y이하를 권장 ※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법령·조례·지침 등의 제·개정으로 서로 다를 경우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② 인센티브 · ‘친환경건축기준’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의 달성 정도에 따라 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물 및 국토해양부의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을 부여하며, 그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인센티브 내용</th> </tr> <tr> <td rowspan="6">민간 건축물</td> <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td> </tr> <tr> <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td> </tr> <tr> <td>·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td> </tr> <tr> <td>·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td> </tr> <tr> <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 부착</td> </tr> <tr> <td>· 그 밖에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td> </tr> </table>	구분	인센티브 내용	민간 건축물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	·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 부착	· 그 밖에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
구분	인센티브 내용									
민간 건축물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									
	·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 부착									
	· 그 밖에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									
	③기타 관련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 시설물 설치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시설물 설치	구분	시설물	설치기준	※공간확보 불가능 등으로 부득이 공공시설 내 설치할 경우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식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한전 지상기기	변압기, 개폐기 등	· 지상기기는 사유지 내 설치하고,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내 설치 금지	
	지주형 시설물	가로등주, 한전주, 통신주, 신호등주, 안내표지판 등	· 지주형 시설물은 최대한 통합하고 단순화 · 기초는 부속물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여 설치	

④ 특별계획구역 3(변경)

(1)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변경)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특별계획구역3	문정동 651	17,309	증)1.7	17,310.7	확정측량 결과반영

(2) 가구 및 획지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역명	가구 번호	획지계획		비고
			위치	면적(㎡)	
기정	특별계획구역3	3-1	문정동 326-1일원	17,309.0	
변경	특별계획구역3	3-1	문정동 651	17,310.7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내용		비고
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미래형 업무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며, 그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될 경우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일반상업지역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구분	내용	비고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600% 이하	·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연간 1차에너지 소비 총량을 250kWh/m ² ·y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높이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4)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송파대로변 14m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공개공지 조성
	이면도로변 5m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대지내 공지

구분	내용	비고
공개공지	· 송파대로변으로 공개공지 지정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 14m	
공공보행통로	· 남북방향 연계를 위해 폭 6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	

■ 교통처리계획

구분	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송파대로변에서 대지내 직접진출입 배제 · 교통 흐름을 감안한 일부구간 차량출입불허	
지하연결통로	· 광장(컬처밸리)와 8BL을 연계한 연결통로 조성하여 계획적이며 일체적인 지하공간 개발 도모(폭원6m이상) - 송파대로변 공개공지 지하 활용 · 컬처밸리 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2BL과 연계되는 지하연결통로 조성	

■ 환경친화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친환경 건축기준	① 「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기준(서울특별시 예규 제705호)」 및 「국토해양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정도시개발구역” 내 모든 신축 민간건축물은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기준’에 대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축물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 5% 이상 · 건축물 연간 1차 에너지소비 총량 : 250kWh/m²·y이하 ※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법령·조례·지침 등의 제·개정으로 서로 다를 경우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② 인센티브 · ‘친환경건축기준’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의 달성 정도에 따라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및 국토해양부의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을 부여하며, 그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table><tr><th>구분</th><th>인센티브 내용</th></tr><tr><td rowspan="6">민간 건축물</td><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td></tr><tr><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td></tr><tr><td>·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td></tr><tr><td>·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td></tr><tr><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표지 부착</td></tr><tr><td>· 그 밖에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td></tr></table> ③기타 관련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구분	인센티브 내용	민간 건축물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	·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표지 부착	· 그 밖에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
구분	인센티브 내용									
민간 건축물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									
	·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표지 부착									
	· 그 밖에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									

■ 시설물 설치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시설물 설치	구분	시설물	설치기준	※공간확보 불가능 등으로 부득이 공공시설 내 설치할 경우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식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한전 지상기기	변압기, 개폐기 등	· 지상기기는 사유지 내 설치하고,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내 설치 금지	
	지주형 시설물	가로등주, 한전주, 통신주, 신호등주, 안내표지판 등	· 지주형 시설물은 최대한 통합하고 단순화 · 기초는 부속물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여 설치	

⑤ 특별계획구역 4(변경)

(1)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변경)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특별계획구역4	문정동 641-3 일원	10,280	증)0.1	10,280.1	확정측량 결과반영

(2) 가구 및 획지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역명	가구 번호	획지계획		비고
			위치	면적(㎡)	
기정	특별계획구역4	4-2	문정동 209-1일원	3,780.0	
		4-3	문정동 208일원	6,500.0	
변경	특별계획구역4	4-2	문정동 641-3	3,780.3	
		4-3	문정동 641-4	6,499.8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내용		비고
용도	지정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획지별 지상층 연면적의 30%이상(핵심시설 포함)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상 입지 (핵심시설 포함)
	권장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획지별 지상층 연면적의 40%이상(핵심시설 포함)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 지상층 연면적의 40%

구분		내용	비고
용도	불허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지상층 연면적 20%미만 가능)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1등급 이상, 300실 이상 제외)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미래형 업무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며, 그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될 경우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600% 이하	·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연간 1차에너지 소비 총량을 240kWh/㎡·y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며, 권장용도 40% 수용시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수용면적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적용
높이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건축물 높이계획 수립 ◦건축물 최고 높이 - 4-2획지 : 69m 이하 - 4-3획지 : 67m 이하	

(4)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이면도로변 2m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대지내 공지

구분	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 획지분할가능선에 의해 획지별로 개발 할 경우 각각의 대지는 폭 3m이상의 공공보행 통로를 인접대지와 공동 조성	

■ 교통처리계획

구분	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교통 흐름을 감안한 일부구간 차량출입불허	

■ 환경친화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친환경 건축기준	① 「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기준(서울특별시 예규 제705호)」 및 「국토해양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 「서울특별시 녹색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준수 · 건축물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 5% 이상(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5%중 35%이상을 PV시스템 도입) - 태양광 에너지 생산설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에너지를 사용 · 건축물 연간 1차 에너지소비 총량 : 240kWh/m ² ·y이하 ※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법령·조례·지침 등의 제·개정으로 서로 다를 경우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② 기타 관련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 시설물 설치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시설물 설치	구분	시설물	설치기준	※공간확보 불가등으로 부득이 공공시설 내 설치할 경우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식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한전 지상기기	변압기, 개폐기 등	· 지상기기는 사유지 내 설치하고,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내 설치 금지	
	지주형 시설물	가로등주, 한전주, 통신주, 신호등주, 안내표지판 등	· 지주형 시설물은 최대한 통합하고 단순화 · 기초는 부속물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여 설치	

⑥ 특별계획구역 6(변경)

(1)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변경)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특별계획구역6	문정동 644 일원	17,665	증)0.4	17,665.4	확정측량 결과반영

(2) 가구 및 획지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역명	가구 번호	획지계획		비고
			위치	면적(㎡)	
기정	특별계획구역6	6-1	문정동 212일원	9,045.0	
		6-2	문정동 215일원	8,620.0	
변경	특별계획구역6	6-1	문정동 644	9,045.4	
		6-2	문정동 644-2	8,620.0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내용	비고
용도	지정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블록별 핵심(앵커)시설과 관련된 업무용도 (지상층 연면적의 2%이상 입지) ◦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상 입지(핵심시설 포함)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권장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지상층 연면적의 40%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구분		내용	비고
용도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지상층 연면적 50%미만 가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미래형 업무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며, 그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될 경우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 지역 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이하 ◦ 권장용도 40% 수용 및 건축물 연간 1차에너지 소비 총량을 250kWh/㎡·y 이하로 계획시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 수용면적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적용	
높이		◦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층고를 최대한 확보하여 건축물 높이계획을 수립 ◦ 건축물 최고높이 66m 이하	해발고도 86m 이하

(4)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내용	비고
건축지정선	· 광장(컬처밸리)에 연결한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 북측도로(대로3-4)변 2m · 동측도로(대로3-3)변 5m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대지내 공지

구분	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 획지분할가능선에 의해 획지별로 개발 할 경우 각각의 대지는 폭 3m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인접대지와 공동 조성	

■ 교통처리계획

구분	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교통 흐름을 감안한 일부구간 차량출입불허	

■ 환경친화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친 환 경 건 축 기 준	① 「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기준(서울특별시 예규 제705호)」 및 「국토해양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정도시개발구역” 내 모든 신축 민간건축물은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기준’에 대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축물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 5% 이상(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5% 중 30%이상을 BIPV시스템 도입) - 태양광 에너지 생산설비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에너지원을 사용 · 건축물 연간 1차 에너지소비 총량 : 280kWh/m²·y이하로 하여야 하나 250kWh/m²·y이하를 권장 ※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법령·조례·지침 등의 제·개정으로 서로 다를 경우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② 인센티브 · ‘친환경건축기준’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의 달성 정도에 따라 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물 및 국토해양부의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을 부여하며, 그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table border="1"> <tr> <th data-bbox="370 1077 474 1120">구분</th><th data-bbox="474 1077 1225 1120">인센티브 내용</th></tr> <tr> <td data-bbox="370 1120 474 1388" rowspan="6">민간 건축물</td><td data-bbox="474 1120 1225 1162">·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td></tr> <tr> <td data-bbox="474 1162 1225 1207">·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td></tr> <tr> <td data-bbox="474 1207 1225 1249">· 용적률 인센티브 5%지원</td></tr> <tr> <td data-bbox="474 1249 1225 1292">·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td></tr> <tr> <td data-bbox="474 1292 1225 1335">·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표지 부착</td></tr> <tr> <td data-bbox="474 1335 1225 1388">· 그 밖에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td></tr> </table>	구분	인센티브 내용	민간 건축물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	· 용적률 인센티브 5%지원	·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표지 부착	· 그 밖에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	
	구분	인센티브 내용									
민간 건축물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										
	· 용적률 인센티브 5%지원										
	·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표지 부착										
	· 그 밖에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										
③기타 관련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 시설물 설치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시설물 설치	구분	시설물	설치기준	※공간확보 불가능 등으로 부득이 공공시설 내 설치할 경우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식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한전 지상기기	변압기, 개폐기 등	· 지상기기는 사유지 내 설치하고,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내 설치 금지	
	지주형 시설물	가로등주, 한전주, 통신주, 신호등주, 안내표지판 등	· 지주형 시설물은 최대한 통합하고 단순화 · 기초는 부속물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여 설치	

⑦ 특별계획구역 7(변경)

(1)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변경)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특별계획구역7	문정동 645일원	17,721	감)3.0	17,718.0	확정측량 결과반영

(2) 가구 및 획지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역명	가구 번호	획지계획		비고
			위치	면적(㎡)	
기정	특별계획구역7	7-1	문정동 379-7일원	8,803.0	
		7-2	문정동 377-1일원	8,918.0	
변경	특별계획구역7	7-1	문정동 645	8,801.2	
		7-2	문정동 645-2	8,916.8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내용		비고
용도	지정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블록별 핵심(앵커)시설과 관련된 업무용도 (지상층 연면적의 2%이상 입지)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상 입지(핵심시설 포함)
	권장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 지상층 연면적의 40%

구분		내용	비고
용도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안마 시설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지상층 연면적 50%미만 가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미래형 업무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며, 그 시설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될 경우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 지역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이하	·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연간 1차에너지 소비 총량을 250kWh/m ² ·y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며, 권장용도 40% 수용시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 수용면적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적용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4)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내용	비고
건축지정선	연결녹지에 연결한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그 외 도로변 2m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대지내 공지

구분	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 획지분할가능선에 의해 획지별로 개발 할 경우 각각의 대지는 폭 3m이상의 공공 보행통로를 인접대지와 공동 조성	

■ 교통처리계획

구분	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교통 흐름을 감안한 일부구간 차량출입불허	

■ 환경친화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친환경 건축기준	① 「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기준(서울특별시 예규 제705호)」 및 「국토해양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정도시개발구역” 내 모든 신축 민간건축물은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기준’에 대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축물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 5%이상 · 건축물 연간 1차 에너지소비 총량 : 250kWh/m²·y이하 ※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법령·조례·지침 등의 제·개정으로 서로 다를 경우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② 인센티브 · ‘친환경건축기준’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의 달성 정도에 따라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및 국토해양부의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을 부여하며, 그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table><tr><th>구분</th><th>인센티브 내용</th></tr><tr><td rowspan="6">민간 건축물</td><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td></tr><tr><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td></tr><tr><td>·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td></tr><tr><td>·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td></tr><tr><td>·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 부착</td></tr><tr><td>· 그 밖에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td></tr></table>	구분	인센티브 내용	민간 건축물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	·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 부착	· 그 밖에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	
	구분	인센티브 내용									
민간 건축물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										
	·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 부착										
	· 그 밖에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										
③기타 관련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 시설물 설치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시설물 설치	구분	시설물	설치기준	※공간확보 불가능 등으로 부득이 공공시설 내 설치할 경우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식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한전 지상기기	변압기, 개폐기 등	· 지상기기는 사유지 내 설치하고,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내 설치 금지	
	지주형 시설물	가로등주, 한전주, 통신주, 신호등주, 안내표지판 등	· 지주형 시설물은 최대한 통합하고 단순화 · 기초는 부속물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여 설치	

※ 별첨) 문정지구 내 유치산업 업종분류표(변경없음)

1) 신성장동력산업

신성장 동력산업	산업분류	내용	지정(CORE) (30%)	권장용도 (40%)
IT 융합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J60	방송업		○
	J612	전기통신업	○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J63	정보서비스업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바이오메디컬 산업	C201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C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	
	C212	의약품 제조업	○	
	M731	수업업	○	
		고부가 식품업	○	○
녹색 산업		글로벌헬스케어(의료관광)	○	○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E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그린카, LED, 신재생에너지	○	○
		고도물처리	○	○
비즈니스 & 연구		첨단그린도시융합산업	○	○
	M70	연구개발업	○	
	M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	
	M71531	경영컨설팅업	○	
	M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M713	광고업	○	
	M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	
	M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M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P8565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
콘텐츠 산업	M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J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J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	
	J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J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금융업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K64	금융업		○
	K661	금융지원 서비스업	○	
MICE 관광 산업	K65	보험 및 연금업		○
	L69	임대업;부동산 제외		○
	N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	○	
디자인 & 패션산업		컨퍼런스(회의장), 컨벤션(집회장)	○	
	M732	전문디자인업	○	
	C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	
지역특화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G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
	F	건설업		○

※ 지정 및 권장용도 구분 및 세부업종 적합여부는 SH공사 내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문정지구 입지업종 선정위원회," 를 통해 결정

2) 블록별 핵심(앵커)시설

특성화기능		지정용도
산업 교육센터	· 직장인 교육, 산업 주제별 교육, 창업교육 등 교육전용 공간을 통해 산업 간 교류 및 가치창출 · 미래산업 지향의 상설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육 관련 대실 공간도 실비로 제공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R&D 허브센터	· 중소기업간 협동 R&D센터로서 각 산업 분야간 교류, 융합이 가능한 공동의 센터, 집단화 · 산업혁신 지원 R&D분야의 교류 관련 산업협회와 연계하고, 비즈니스 컨설팅 등이 결합되도록 함 · 지경부 등의 공공혁신지원센터 등이 결합하고, 지식산업허브로서 특성화, 중심화를 강화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도서관 - 업무시설중 사무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국제 회의장	· 국제회의가 가능한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상설 대형 회의장, 세미나장의 확보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전시장
산업 컨벤션	· 산업교류, 기술 세미나, 전시 행사, 이벤트 등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이 필요하며, 산업전시, 박람회, 과학관, 산업컨벤션, 문화컨벤션 등이 가능한 멀티 컨벤션 공간 제공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전시장
스마트 시티 관련 업무시설	· 전국 및 경기 동남권 서울 동남 출장소로서 업체간 교류를 위해 기업의 비상근 공동 근무 시스템 · 주 근무처가 수도권에서 멀거나 지방인 경우 때때로 서울에서 원격근무가 가능토록하며, 기업간 교류를 위한 공동근무(합사)가 가능하고, 산업간 융합을 위한 공동근무체계를 마련함 · 동남권 신산업허브로서 문정업무지구의 세미나 또는 미팅이 있는 경우 임시 근무처 기능 등 활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도서관 - 업무시설중 사무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 자율적으로 5개 앵커시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면적 2% 범위 내에서 조성

붙임 : 공동개발(권장)시 공공기여방안(예시)안(변경없음)

위원회 결과 : 공동개발(권장)시 공공기여는 향후 건축계획 수립시 위치 등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

구분	3-6, 3-7BL	3-9, 3-10BL	5-2, 5-3BL	10-4, 10-5, 10-6, 10-7BL
기정				
변경 (예시안)				
공공 기여 방안	• 송파대로변 전면부 공개공지(14m) 확보 - 법적기준 : 450㎡ - 지정면적 : 1,110㎡ (2.5배)	• 공개공지 기준면적 이외 45㎡이상 추가확보 - 당초 : 220㎡ (대지면적의 7%) - 변경 : 265㎡ (추가확보)	• 공개공지 기준면적 이외 45㎡이상 추가확보 및 연결통로 조성 - 당초 : 0㎡ (지식산업센터) - 변경 : 45㎡ (추가확보)	• 공공보행통로 4m 확보 • 공개공지 법적기준 초과설치 - 당초 : 379㎡ (대지면적의 7%) - 변경 : 529㎡ (대지면적의 10%)

	공공보행통로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표시
	공공보행통로(공동개발 권장)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표시
	공개공지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위치표시가 아닌 예시안 임

별첨 도면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3,000)

8.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

가. 국공유지 무상양여 현황(변경없음)

1) 총괄표(변경없음)

구분		계	전	도	구	잡	천
합계	필지수	59	12	13	18	13	3
	면적(㎡)	97,553	4,761	3,952	7,692	79,394	1,754
국 유 지	소계	필지수	2	—	2	—	—
		면적(㎡)	534	—	534	—	—
	국토 해양부	필지수	2	—	2	—	—
		면적(㎡)	534	—	534	—	—
공 공 유 지	소계	필지수	57	12	11	18	3
		면적(㎡)	97,019	4,761	3,418	7,692	1,754
	서울시	필지수	42	10	4	14	1
		면적(㎡)	90,290	3,626	835	6,109	326
	송파구	필지수	15	2	7	4	2
		면적(㎡)	6,729	1,135	2,583	1,583	1,428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변경없음)

1) 무상귀속분 총괄표 (공공시설 및 사업시행자소유)

구분		계	전	도	구	잡	천
합계	필지수	44	10	9	14	8	3
	면적(㎡)	12,122	1,135	1,312	3,709	5,091	875
국 유 지	소계	필지수	2	—	2	—	—
		면적(㎡)	87	—	87	—	—
	국토 해양부	필지수	2	—	2	—	—
		면적(㎡)	87	—	87	—	—
공 공 유 지	소계	필지수	42	10	7	14	3
		면적(㎡)	12,035	1,135	1,225	3,709	875
	서울시	필지수	32	10	2	11	1
		면적(㎡)	10,409	1,135	364	3,493	326
	송파구	필지수	10	—	5	3	2
		면적(㎡)	1,626	—	861	216	549

2) 유상귀속분 총괄표 (공공시설 외)

구분		계	전	도	구	잡	천
합계	필지수	54	12	10	18	12	2
	면적(㎡)	85,431	3,626	2,640	3,983	74,303	879
국 유 지	소계	필지수	1	—	1	—	—
		면적(㎡)	447	—	447	—	—
	국토 해양부	필지수	1	—	1	—	—
		면적(㎡)	447	—	447	—	—
공 공 유 지	소계	필지수	53	12	9	18	2
		면적(㎡)	84,984	3,626	2,193	3,983	879
	서울시	필지수	39	10	3	14	—
		면적(㎡)	79,881	2,491	471	2,616	—
	송파구	필지수	14	2	6	4	2
		면적(㎡)	5,103	1,135	1,722	1,367	879

3) 소관청별 토지조서(변경)

■ 국유지 : 국토해양부(변경없음)

① 송파구 재무과 / 시설관리과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측량결과	비고
		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1	기정	문정동	381-1	도	521	521	송파구 시설관리과	74	447	도:74 전:447	
2	기정	문정동	381-7	도	297	13	송파구 시설관리과	13	-		
합계					818	534		87	447		

■ 사유지 : 서울특별시(변경없음)

① 서울시 도로행정 담당관 (도로재산팀)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측량결과	비고
		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1	기정	문정동	119-4	도	17,983	62	서울시 도로행정 담당관	62	-		
2	기정	문정동	379-2	도	651	651	서울시 도로행정 담당관	302	349	도:302 전:349	
3	기정	문정동	426-4	도	73	70	서울시 도로행정 담당관	-	70	전:70	
4	기정	문정동	475	도	54	52	서울시 도로행정 담당관	-	52	전:52	
합계					18,761	835		364	471		

② 서울시 하천관리과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측량결과	비고
		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1	기정	문정동	150-16	천	326	326	서울시 하천관리과	326	-		
2	기정	문정동	191-5	구	502	502	서울시 하천관리과	169	333	도:169 전:333	
3	기정	문정동	205-4	구	254	254	서울시 하천관리과	81	173	도:81 전:173	
4	기정	문정동	205-5	구	301	301	서울시 하천관리과	234	67	도:234 전:67	
5	기정	문정동	206-5	구	113	113	서울시 하천관리과	52	61	도:52 전:61	
6	기정	문정동	206-6	구	169	169	서울시 하천관리과	88	81	도:88 전:81	
7	기정	문정동	207-3	구	125	125	서울시 하천관리과	104	21	도:104 전:21	
8	기정	문정동	207-4	전	161	161	서울시 하천관리과	107	54	도:107 전:54	
9	기정	문정동	208-1	전	64	64	서울시 하천관리과	34	30	도:34 전:30	
10	기정	문정동	210-4	전	867	867	서울시 하천관리과	553	314	도:553 전:314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측량결과	비고
		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11	기정	문정동	210-6	구	24	24	서울시 하천관리과	-	24	전:24	
12	기정	문정동	210-7	전	87	87	서울시 하천관리과	10	77	도:10 전:77	
13	기정	문정동	217-1	구	80	80	서울시 하천관리과	14	66	도:14 전:66	
14	기정	문정동	221-2	구	1,067	1,067	서울시 하천관리과	806	261	도:806 전:261	
15	기정	문정동	221-4	구	9	9	서울시 하천관리과	-	9	전:9	
16	기정	문정동	222-4	구	156	156	서울시 하천관리과	-	156	전:156	
17	기정	문정동	223-4	구	1,499	1,499	서울시 하천관리과	841	658	도:841 전:658	
18	기정	문정동	341-2	구	78	78	서울시 하천관리과	38	40	구:38 전:40	
19	기정	문정동	368-2	구	1,732	1,732	서울시 하천관리과	1,066	666	구:1,066 전:666	
20	기정	문정동	463	잡	399	399	서울시 하천관리과	-	399	전:399	
21	기정	문정동	466	잡	840	840	서울시 하천관리과	-	840	전:840	
22	기정	문정동	468	잡	6	6	서울시 하천관리과	-	6	전:6	
23	기정	문정동	485	전	580	580	서울시 하천관리과	61	519	도:61 전:519	
24	기정	문정동	488	전	21	21	서울시 하천관리과	4	17	도:4 전:17	
25	기정	문정동	490	전	784	784	서울시 하천관리과	62	722	도:62 전:722	
26	기정	문정동	499	잡	527	527	서울시 하천관리과	106	421	도:106 전:421	
27	기정	문정동	504	전	302	302	서울시 하천관리과	79	223	도:79 전:223	
28	기정	문정동	507	전	346	346	서울시 하천관리과	86	260	도:86 전:260	
29	기정	문정동	510	전	414	414	서울시 하천관리과	139	275	도:139 전:275	
합계					11,833	11,833		5,060	6,773		

③ 서울시 재무과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측량결과	비고
		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1	기정	문정동	191-6	잡	6,657	6,657	서울시 재무과	1,576	5,081	도:592 구:984 전:5,081	
2	기정	문정동	191-8	잡	3,679	3,679	서울시 재무과	-	3,679	전:3,679	
3	기정	문정동	368-4	잡	1,081	1,081	서울시 재무과	110	971	구:110 전:971	
4	기정	문정동	379-1	잡	20,333	20,117	서울시 재무과	413	19,704	도:413 전:9,773 잡:9,931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측량결과	비고
		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5	기정	문정동	379-6	잡	2,466	8	서울시 재무과	-	8		
6	기정	문정동	418	잡	5,175	3,115	서울시 재무과	-	3,115	잡:3,115	
7	기정	문정동	493	잡	17,177	17,177	서울시 재무과	1,389	15,788	도:1,389 전:9,171 잡:6,617	
8	기정	문정동	512	잡	14,430	14,430	서울시 재무과	238	14,192	도:238 전:14,192	
9	기정	문정동	513	잡	11,358	11,358	서울시 재무과	1,259	10,099	도:1,259 전:10,099	
합계					82,356	77,622		4,985	72,637		

■ 구유지 : 송파구(변경없음)

① 송파구 재무과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측량결과	비고
	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공공시설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외 (유상귀속분)		
1	문정동	130-12	구	260	260	송파구 재무과	33	227	도:33 전:11 학원:216	
2	문정동	186-2	천	423	423	송파구 재무과	27	396	도:27 전:396	
3	문정동	191-3	구	499	499	송파구 재무과	110	389	도:72 구:38 전:389	
4	문정동	191-9	천	1,005	1,005	송파구 재무과	522	483	도:76 구:446 전:483	
5	문정동	191-10	전	1,053	1,053	송파구 재무과	-	1,053	전:1,053	
6	문정동	191-11	도	66	66	송파구 재무과	66	-	도:66	
7	문정동	191-12	도	1,074	1,074	송파구 재무과	176	898	도:59 구:117 전:898	
8	문정동	250-7	전	82	82	송파구 재무과	-	82	전:82	
9	문정동	317-1	도	393	393	송파구 재무과	8	385	도:8 전:385	
10	문정동	327-1	도	207	207	송파구 재무과	-	207	전:207	
11	문정동	341-1	구	660	660	송파구 재무과	73	587	도:67 구:6 전:587	
12	문정동	341-3	구	164	164	송파구 재무과	-	164	전:164	
13	문정동	358-1	도	182	182	송파구 재무과	-	182	전:182	
14	문정동	368-1	도	562	562	송파구 재무과	526	36	도:432 구:94 전:36	
15	문정동	368-3	도	99	99	송파구 재무과	85	14	도:85 전:14	
합계				6,729	6,729		1,626	5,103		

■ 지방자치단체 귀속분(변경)

① 도로(변경)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6	15,228	96,891	6	3,554	30,971	7	9,787	30,040	3	1,887	35,880
	변경	22	15,839	107,792.7	6	3,509	29,854.0	9	9,719	31,671.3	7	2,611	46,267.4
광로	기정	2	8,715	3,786	-	-	-	1	8,000	2,417	1	715	1,369
	변경	2	8,715	3,706.1	-	-	-	1	8,000	2,382.8	1	715	1,323.3
대로	기정	4	3,947	46,241	2	2,775	11,730	-	-	-	2	1,172	34,511
	변경	4	3,947	46,129.7	2	2,775	11,625.6	-	-	-	2	1,172	34,504.1
중로	기정	9	2,423	45,721	4	779	19,241	5	1,644	26,480	-	-	-
	변경	13	3,053	56,927.4	3	724	18,109.2	6	1,605	28,378.2	4	724	10,440.0
소로	기정	1	143	1,143	-	-	-	1	143	1,143	-	-	-
	변경	3	124	1,029.5	1	10	119.2	2	114	910.3	-	-	-

※ 기정 : 서울시고시 제2009-208호(2009.5.28.)

변경 : 서울시고시 제2011-142호,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개발계획 변경사항 누락분 및 금회 변경사항을 포함한 변경사항 임

② 광장(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광장	근린 광장	문정동 643일원	8,751	증)10,021.3	18,772.3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 5.28)	중복결정 (도로 1,718㎡) 확정측량 결과반영

※ 기정 : 서울시고시 제2009-208호(2009.5.28.)

변경 : 서울시고시 제2011-142호,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개발계획 변경사항 누락분 및 금회 변경사항을 포함한 변경사항 임

③ 공원(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근린 공원	문정동 653	36,620	증)18.3	36,638.3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 5.28)	
변경	②	공원	근린 공원	문정동 638	21,277	증)69.8	21,346.8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 5.28)	5,398.5㎡ : 유수지와 도시계획 시설 중복 결정 확정측량 결과반영

※ 기정 : 서울시고시 제2009-208호(2009.5.28.)

변경 : 서울시고시 제2011-142호,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개발계획 변경사항 누락분 및 금회 변경사항을 포함한 변경사항 임

④ 녹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⑤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2-1	5,961	증)1,159.7	7,120.7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경관녹지1→연결녹지5 확정측량 결과반영
변경	⑥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0-1	9,710	증)1,905.9	11,615.9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경관녹지2→연결녹지6 확정측량 결과반영
변경	⑦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39-1	3,362	증)977.5	4,339.5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경관녹지3→연결녹지7 확정측량 결과반영
변경	①	녹지	완충 녹지	문정동 647-1	858	증)19.4	877.4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확정측량 결과반영
변경	②	녹지	완충 녹지	문정동 648-1	7,406	감)4,775	2,631.0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확정측량 결과반영
신설	③	녹지	완충 녹지	문정동 654-2	-	증)941.6	941.6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연결녹지 신설 확정측량 결과반영
변경	①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0-2	5,160	감)215.2	4,944.8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확정측량 결과반영
변경	②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4-1	5,127	감)11.3	5,115.7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확정측량 결과반영
폐지	③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368	16,621 (18,181)	감)16,621	-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변경	③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7-2	4,038	증)5,245.7	9,283.7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연결녹지4→연결녹지3 확정측량 결과반영
변경	④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50-1	7,500	감)7.1	7,492.9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09.05.28)	연결녹지5→연결녹지4 확정측량 결과반영
폐지	⑥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337답	1,702	감)1,702	-	-	광장과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신설	⑧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647-4	-	증)3,867.4	3,867.4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14.03.20)	연결녹지 신설 확정측량 결과반영

※ 기정 : 서울시고시 제2009-208호(2009.5.28.)

변경 : 서울시고시 제2011-142호,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서울시고시 제2014-104호 개발계획 변경사항 누락분 및 금
회 변경사항을 포함한 변경사항 임9.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 02)2133-4641)
 - 송파구청 도시전략과 (☎ 02)2147-2171)
 -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 (☎ 02)3410-7594)

※ SH공사로 명기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같음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21호

**도시관리계획(북창 지구단위계획 및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63호(2005.09.01.)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08-59호(2008.08.14), 제2012-8호(2012.01.1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6호(2012.05.24), 2012-238호(2012.09.06),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3-45호(2013.05.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38호(2013.10.10), 제2014-312호(2014.09.04.), 제2015-381호(2015.12.03), 제2015-397(2015.12.10),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6-72호(2016.08.04), 제2016-101호(2016.11.10)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소공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6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6.12.14)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공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소공동변 근현대건축물 혼적 남기기 계획에 따라 도시기반시설계획 등을 포함한 북창 지구단위계획 및 소공동 특별계획 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해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북창동 104번지 일대	93,187	-	93,187	서고 제2005-263호 (2005.09.01)

②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류	112	20~25	주간선 도로	350 (250)	시청앞 광장	한국은행 앞	일반 도로	-	-	
변경	대로	3류	112	20~25	주간선 도로	350 (250)	시청앞 광장	한국은행 앞	일반 도로	-	-	

※()는 특별계획구역 내 연장임

■ 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12	특별계획구역내 도로폭원 축소 - 폭원 : 25m → 20m	소공로에 접한 근현대건축물 보존에 따른 소공로 일부구간 도로 폭원 축소

2) 지하도로

■ 지하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 입체적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②	공공공지	소공동 112-26	104	감) 104	-	2005.9.1 (서고 제2005-263호)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 위치 : 소공동 112-26 - 면적 : 104.0㎡ → 폐지	소공로에 접한 근현대건축물 보존에 따른 공공공지 폐지

2) 광장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최대개발규모계획 (변경없음)

나. 가구계획 (변경없음)

다. 획지계획 (변경없음)

라.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18	97	소공동 112-9	5,327.1	특별계획구역 (5,701.4㎡)
			소공동 112-10	58.2	
			소공동 112-11	20.7	
			소공동 112-20	124.9	
			소공동 112-23	41.5	
			소공동 112-24	42.2	
			소공동 112-36	21.2	
			소공동 112-42	3.3	
			소공동 112-45	12.7	
			소공동 112-46	26.7	
			소공동 112-49	2.5	
			소공동 112-50	11.2	
			소공동 112-51	9.2	
변경	18	97	소공동 112-9	5,321.32	특별계획구역 (6,276.82㎡)
			소공동 112-10	58.2	
			소공동 112-11	20.7	
			소공동 112-20	124.9	
			소공동 112-23	41.5	
			소공동 112-24	42.2	
			소공동 112-36	21.2	
			소공동 112-42	3.3	
			소공동 112-45	12.7	
			소공동 112-46	26.7	
			소공동 112-47	7.6	
			소공동 112-49	2.5	
			소공동 112-50	11.2	
			소공동 112-51	9.2	
			소공동 112-25	41.5	
			소공동 112-26	54.5	
			소공동 112-57	197.5	
			소공동 112-58	65.9	
			소공동 112-59	65.2	
			소공동 112-60	65.9	
			소공동 112-61	79.3	
			소공동 112-64	3.8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	• 획지면적 변경 - 획지97 (5,701.4㎡) → 획지97 (6,276.82㎡)	•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공공지) 부지의 면적 변경 및 폐지에 따라 해당 부지의 획지 신규 편입에 따른 면적 증가 • 소공동 112-9번지 구적오차 정정	

마. 공동개발계획 (변경없음)

바. 필지분할가능선계획 (변경없음)

2.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계획 (변경없음)

나. 건폐율계획

1) 건폐율 (변경없음)

2) 건폐율 완화

구분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고
기정	공동개발 (특별지정)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주1) - 60% ×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 대지면적)] 이내	80% 이하	신축 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주1) - 60% ×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 대지면적)] 이내	70% 이하	신축 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舊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주2) - 대지면적 500㎡이하 - 개방형화장실(1층 전면도로변)을 설치하고 옥상녹화를 설치하는 경우	70% 이하	증축, 리모델링 시
변경	공동개발 (특별지정)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주1) - 60% ×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 대지면적)] 이내	80% 이하	신축 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주1) - 60% ×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 대지면적)] 이내	70% 이하	신축 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舊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주2) - 대지면적 500㎡이하 - 개방형화장실(1층 전면도로변)을 설치하고 옥상녹화를 설치하는 경우	70% 이하	증축, 리모델링 시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근현대건축물을 보존(복원포함)하는 경우	80% 이하	신설

주1)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과 높이 또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중복하여 완화할 수 있다. 단, 공동개발(특별지정)된 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에 따른 높이완화 불가

주2) 개방형화장실과 옥상녹화 설치를 통해 건폐율 완회시 허용용적률 완화 중복 적용 불가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건폐율 완화	•특별계획구역 건폐율 완화 - 60% 이하 → 80% 이하	•근현대건축물 보존(복원포함)에 따른 건폐율 증가로 법적 건폐율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 방화지구내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80%이상 9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가능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8항 : 영 제84조에 따른 건축물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경우 건폐율을 80% 이상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완화 가능	

다. 용적률계획

1) 용적률

구 분		용 적 륜(%)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간선부	500 이하	600 이하	법적 2배 이하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적용
	이면부	400 이하	600 이하	법적 2배 이하	
	획지 24	500 이하	720 이하	법적 2배 이하	
	획지 61	500 이하	720 이하	법적 2배 이하	
	획지 87	400 이하	720 이하	법적 2배 이하	
	획지 97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500 이하	600 이하	1,300 이하 (1,243.95 이하)	
변경	간선부	500 이하	600 이하	법적 2배 이하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적용
	이면부	400 이하	600 이하	법적 2배 이하	
	획지 24	500 이하	720 이하	법적 2배 이하	
	획지 61	500 이하	720 이하	법적 2배 이하	
	획지 87	400 이하	720 이하	법적 2배 이하	
	획지 97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500 이하	600 이하	1,227.75 이하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상한 용적률	•획지97 상한용적률 변경 - 1,243.95% 이하 → 1,227.75%이하	•근현대건축물 보존(복원포함)계획에 따라 당초 공공시설부지 제 공 면적의 감소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완화 항목의 계수 증가에 따른 용적 륜 증가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2) 용적률 완화 (변경없음)

라. 높이계획

1) 최고높이

구분		최고높이(규제)		비 고
기정	간선부	C - 1	80m 이하	• 전구역에 건축법 제51조 제③항 규정에 의거하여 수평거리 1.5H 미적용 • 전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양각규정 해당 지역은 양각규정 동시 적용
		획지 24	80m 이하	
		C - 2	60m 이하	
		획지 61	60m 이하	
		획지 97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80m 이하 (90m까지 완화가능)	
변경	간선부	C - 1	80m 이하	• 전구역에 건축법 제51조 제③항 규정에 의거하여 수평거리 1.5H 미적용 • 전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양각규정 해당 지역은 양각규정 동시 적용
		획지 24	80m 이하	
		C - 2	60m 이하	
		획지 61	60m 이하	
		획지 97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90m 이하 (단, 근현대건축물 보존(복원포함)하는 경우에 한함)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최고높이	• 획지97 최고높이 기준 변경 - 80m이하(90m까지 완화 가능) → 90m이하(단, 근현대건축물 보존(복원포함)하는 경우에 한함)	• 당초 공공시설부지 제공으로 최고높이를 90m까지 완화 받았으나 소공로변 근현대건축물 보존계획에 따라 최고높이 80m를 「2030 서울시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최고높이 90m로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함	

2) 최고높이 완화 (변경없음)

3.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 배치계획

구 분			적 용 구 역	계 획 내 용
기정	건축한계선	4m	• 대로3-112호선변 소공동특별계획구역	• 원활한 보행통행 유도 및 가로개방감 증대
		3m	• 광로2-4호선변, 대로1-2호선변, 중로1-250호선 변 일부, 소로 3-5호선변 한국은행부지 및 소공동특별계획구역	
	벽면한계선	4~6m	• 소공동특별계획구역 공공보행통로 구간	•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 등) 확보
변경	건축한계선	3m	• 광로2-4호선변, 대로1-2호선변, 중로1-250호선 변 일부, 소로 3-5호선변 한국은행부지 및 소공동특별계획구역	• 원활한 보행통행 유도 및 가로개방감 증대
	벽면한계선	4~6m	• 소공동특별계획구역 공공보행통로 구간	•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 등) 확보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건축한계선	•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소공로변 건축한계선 폐지 - 대로 3-112호선변 4m → 폐지	• 근현대건축물 보존을 위해 소공로변 해당위치에 지정된 건축한계선 폐지	

나. 건축물 형태계획 (변경없음)

4.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5. 교통처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6.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기정	변경
건 폐 율	• 60%이하	• 60%이하 (근현대건축물을 보존(복원포함)하는 경우 80%까지 완화가능)
용 적 륜	• 기준용적률 : 500%이하 • 허용용적률 : 600%이하 • 상한용적률 : 1,300%이하	• 기준용적률 : 500%이하 • 허용용적률 : 600%이하 • 상한용적률 : 1,300%이하
높 이	• 최고높이 : 80m이하 (90m까지 완화 가능)	• 최고높이 : 90m이하 (단, 근현대건축물을 보존(복원포함)하는 경우에 한함)
용 도	• 불허용도 P / 권장용도 S / 지정용도 a	• 불허용도 P / 권장용도 S / 지정용도 a
공공시설부지 제 공 율	• 특별계획구역 면적의 15% 이상	• 특별계획구역 면적의 6.2% 이상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	• 건축한계선 - 소로 3-5호선변 3m - 대로 3-112호선변 4m • 벽면한계선 - 한국은행변 4~6m	• 건축한계선 - 소로 3-5호선변 3m • 벽면한계선 - 한국은행변 4~6m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전면공지 조성 - 폭 : 3~4m [섬지형공지] •1개소 설치 (개방형) [공공보행통로] •벽면한계선 후퇴에 의한 공공보행공간 확보 ▶ 한국은행변 - 폭 : 4m이상 - 높이: 6m이상 (필로티형에 한함)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전면공지 조성 - 폭 : 3m [섬지형공지] •1개소 설치 (개방형) [공공보행통로] •벽면한계선 후퇴에 의한 공공보행공간 확보 ▶ 한국은행변 - 폭 : 4~13m - 높이: 6m이상 (필로티형에 한함) ▶ 소공로변 - 폭 : 6m - 높이: 5m이상 (필로티형에 한함)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 기존 지하보도출입구 이전 대지내 설치(기존 지하보도규모 이상설치) • 소공로 지하상가와 연계하여 지하콘코스 조성	• 기존 지하보도출입구 이전 대지내 설치(기존 지하보도규모 이상설치) • 소공로 지하상가와 연계하여 지하콘코스 조성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 소공로변 차량출입금지구간의 차량출입허용. 단, 차량진출 금지	• 소공로변 차량출입금지구간의 차량출입허용. 단, 차량진출 금지 - 근현대건축물 보존에 따라 소공로변 차량출입금지구간 위치 조정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적용에 따른 용적률 완화분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는 계획주차대수에서 제외

■ 변경 사유서

- 소공로변 근현대건축물 흔적남기기 계획에 따라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 지침내용 변경

7.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경미한 사항 (변경없음)

Ⅲ.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 변경

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중구 소공동 112-9번지 일대	6,562	-	6,562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562	-	6,562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562	-	6,562	100.0	-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남대문시장	-	북창동 283번지 일대	272,330.5 (6,562)	63.12.13 (건고 727)	-

주) ()는 구역내 사항임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 개발 밀도

1) 건폐율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변경	
건폐율	• 60%이하 (근현대건축물을 보존(복원포함)하는 경우 80%까지 완화가능)	• 60% 이하	• 65.57%로 계획	

2) 용적률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변경	
용적률	기준용적률	500% 이하	500% 이하	500% 이하	
	허용용적률	600% 이하	600% 이하	600% 이하	
	상한용적률	1,300%이하	1,300%이하 (1,243.95% 이하)	1,227.75% 이하	

■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부여기준(정량적기준)

구분	용도 지역	특별법 용적률 (A)	허용 용적률 (B)	인센티브 용적률 (C=A-B)	관광숙박 시설비율 (D)	인센티브 확보용적률 (E= (C×계수)×D)	계 수 적 용				
							계수 (a×b× c×d)	상대정화 구역 (a)	인접지 주거비율 (b)	공개 공지 면적(c)	객실 비율 (d)
기정	일반 상업 지역	1,300%	600%	700%	90.78%	508.37%	0.8	1.0	—	0.8	1.0
변경		1,300%	600%	700%	91.54%	576.70%	0.90	1.0	—	0.90	1.0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구분	완화내용	비 고
기정	$\bullet$ 허용용적률 $\times 1.3a = 600\% \times 1.3 \times 0.173817 = 135.58\%$ $\ast a = \text{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 \div \text{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991\text{m}^2 \div 5,701.4\text{m}^2 = 0.173817$	
변경	$\bullet$ 허용용적률 $\times 1.3a = 600\% \times 1.3 \times 0.065444 = 51.05\%$ $\ast a = \text{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 \div \text{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410.78\text{m}^2 \div 6,276.82\text{m}^2 = 0.065444$	

■ 대상지 인센티브용적률

구분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량 (A)	공공시설부지 등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B)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운영기준」 적용 용적률 인센티브(C)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기준용적률 + (A) + (B) + (C)]	용적률 적용
기정	500%	600%	100%	135.58%	508.37%	$500\% + 100\% + 135.58\% + 508.37\% = 1,243.95\%$	1,243.95%
변경	500%	600%	100%	51.05%	576.70%	$500\% + 100\% + 51.05\% + 576.70\% = 1,227.75\%$	1,227.75%

3) 높이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변경	
최고높이	$\bullet$ 최고높이 : 90m이하 (단, 근현대건축물을 보존(복원 포함)하는 경우에 한함)	$\bullet$ 80m이하 (90m까지 완화가능)	$\bullet$ 90m이하 (단, 근현대건축물을 보존(복원 포함)하는 경우에 한함)	

나.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계획

■ 배치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변경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 소로 3-5호선변 3m	• 건축한계선 - 소로 3-5호선변 3m - 대로 3-112호선변 4m	• 건축한계선 - 소로 3-5호선변 3m	
벽면한계선	• 벽면한계선 - 한국은행변 4~6m	• 벽면한계선 - 한국은행변 4~6m	• 벽면한계선 - 한국은행변 4~6m	

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대지내 공지 및 통로 등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변경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전면공지 조성 - 폭 : 3m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전면공지 조성 - 폭 : 3~4m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전면공지 조성 - 폭 : 3m	
쌈지형 공지	• 1개소 설치 (개방형)	• 1개소 설치 (개방형)	• 1개소 설치 (개방형)	
공공 보행통로	• 벽면한계선 후퇴에 의한 공공보행공간 확보 ▶ 한국은행변 - 폭 : 4~13m - 높이 : 6m이상 (필로티형에 한함) ▶ 소공로변 - 폭 : 6m - 높이 : 5m이상 (필로티형에 한함)	• 벽면한계선 후퇴에 의한 공공보행공간 확보 ▶ 한국은행변 - 폭 : 4~6m - 높이 : 6m이상 (필로티형에 한함)	• 벽면한계선 후퇴에 의한 공공보행공간 확보 ▶ 한국은행변 - 폭 : 4~13m로 계획 - 높이 : 6.5~8.0m 필로티형으로 계획 ▶ 소공로변 - 폭 : 6m로 계획 - 높이 : 5m 필로티형으로 계획	

2)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변경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 기존 지하보도출입구 이전 대지내 설치(기존 지하보도규모 이상설치) • 소공로 지하상가와 연계하여 지하콘코스 조성	• 기존 지하보도출입구 이전 대지내 설치(기존 지하보도규모 이상설치) • 소공로 지하상가와 연계하여 지하콘코스 조성	• 기존 지하보도출입구 이전 대지내 설치(기존 지하보도규모 이상설치) • 소공로 지하상가와 연계하여 지하콘코스 조성	

3)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변경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 소공로변 차량출입금지구간의 차량출입허용. 단, 차량진출 금지 - 근현대건축물 보존에 따라 소공로변 차량출입금지구간 위치 조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적용에 따른 용적을 완화분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는 계획주차대수에서 제외	- 소공로변 차량출입금지구간의 차량출입허용. 단, 차량진출 금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적용에 따른 용적을 완화분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는 계획주차대수에서 제외	- 근현대건축물 보존에 따라 소공로변 차량출입구간을 북측으로 약14m이동하여 차량출입허용 계획. 단, 차량진출금지 - 주차대수는 228대로 계획	

4) 공공시설부담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변경	
공공시설 부지 제공율	특별계획구역면적의 6.2% 확보	- 특별계획구역 면적의 15% 확보 - 도로 11.5% (756.6㎡) - 공공공지 1.6% (1개소, 104.0㎡) - 건축물 내 전시관 설치 2.0% (130.4㎡) (연면적 695㎡, 지상2층)	- 특별계획구역면적의 6.2% 확보 - 도로 4.3% (285.18㎡) - 건축물 내 전시관 설치 1.9% (125.6㎡) (연면적 695㎡, 지상2층)	

IV.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사항

심의의견
- 아래 사항이 충실하게 반영된 혼적남기기 방안을 적용한 건축계획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그 결과를 건축심의 전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 - 보존 핵심가치는 근현대건축물 군이 형성한 가로경관 및 소공로의 관계성 - 외벽은 기존 위치와 필지형태를 유지하면서 보존(복원포함)하되, 내부(지하포함)는 자율적으로 구성 - 멸실되는 건축물 수는 최소한으로 할 것 - 보행로는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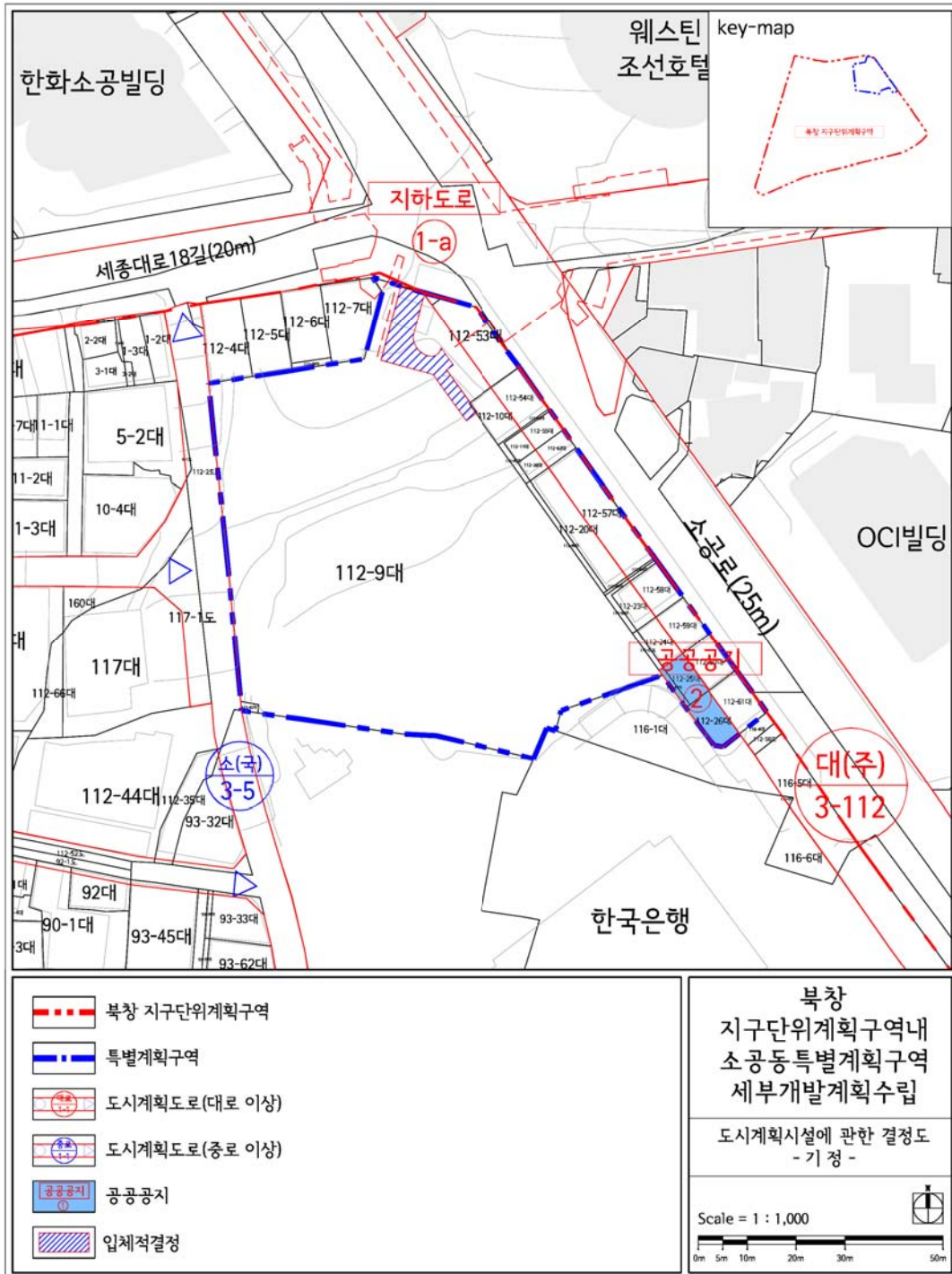
V. 관계도면 : 첨부 지형도면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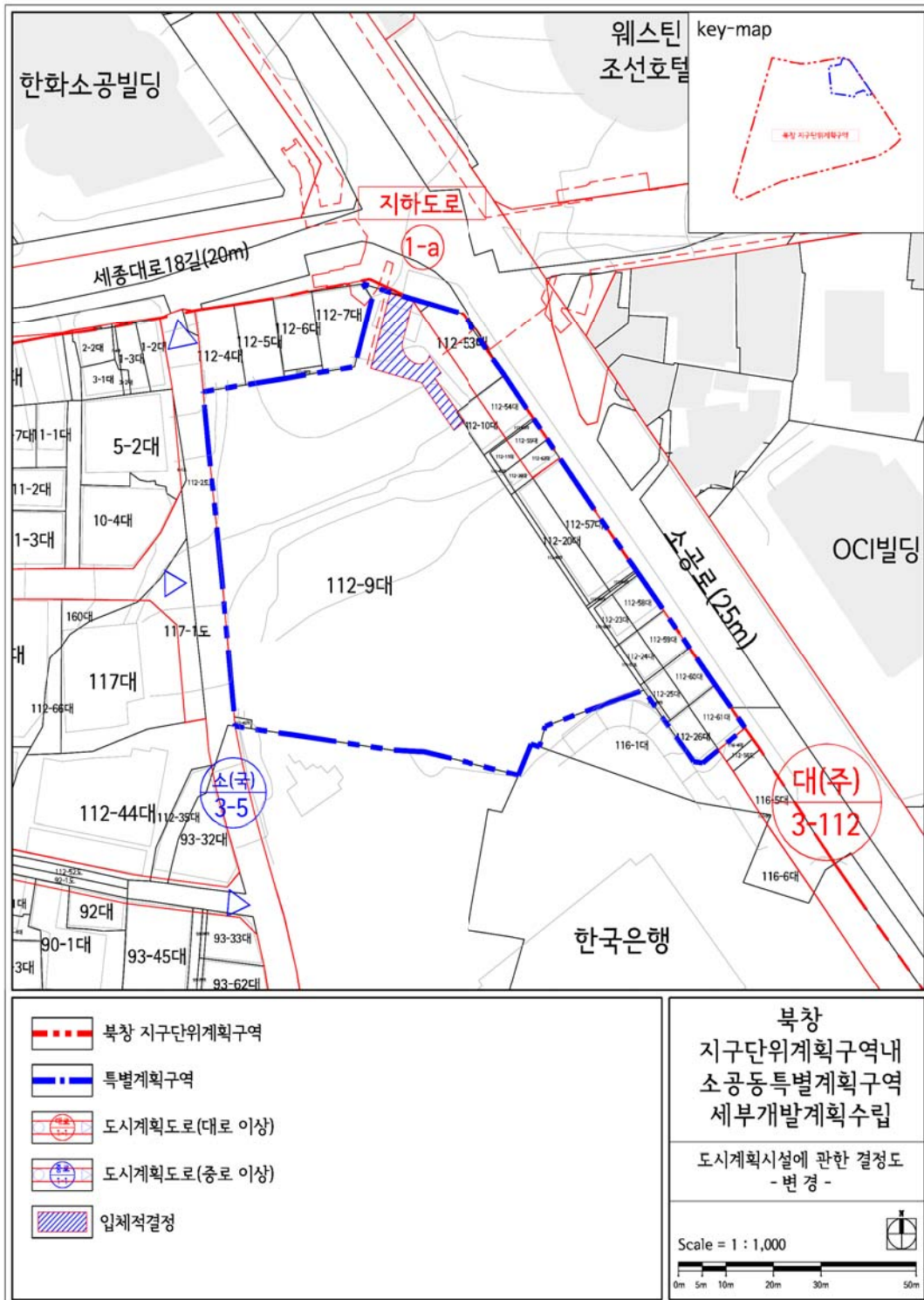
VI.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2), 중구 도심재생과(☎02-3396-578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북창 지구단위계획 및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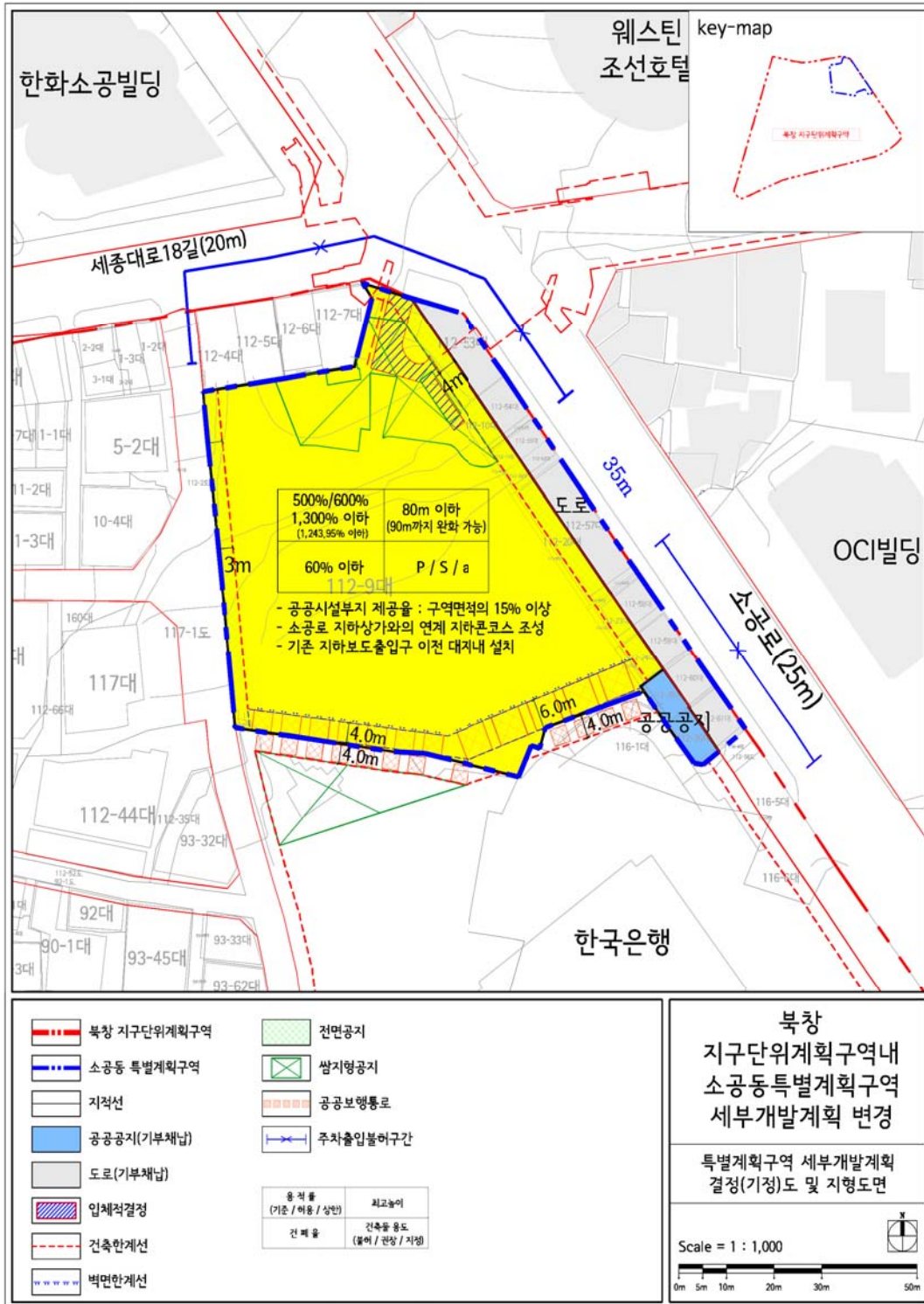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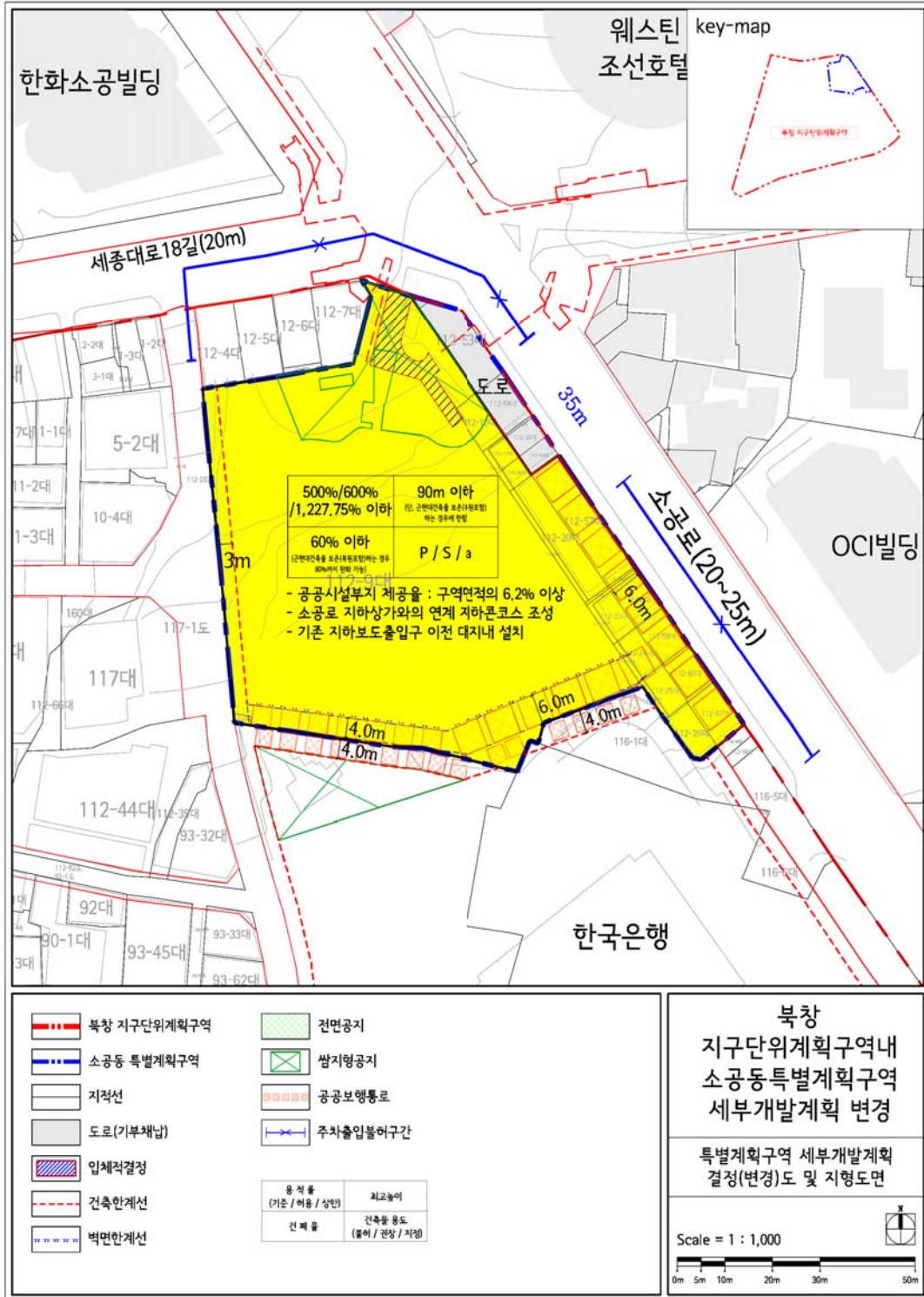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기정)도 및 지형도면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4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보통신공사업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 알림

당 사 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1	200252	(주)유경	윤성호	서울 노원구 월계로44길 5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계1인,기능계2인 부족)	정보통신공사업영업정지 사전통지서(3개월) (2016.12.23..)
2	201217	(주)유티티	김영중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4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계1인,기능계3인 부족)	정보통신공사업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서 (2016.12.30.)
3	202247	(주)원텔레콤기술	신창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4,607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계1인, 기능계3인 부족,)	정보통신공사업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서 (2016.12.30.)
4	202099	(주)엠아이씨앤씨	한창수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45,비동5층(가산동,마이크로오피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계1인,기능계2인 부족)	정보통신공사업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서 (2016.12.30.)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66조 제13호, 동법시행령 제21조, 제50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및 별표8의13

3. 공고기간 : 2016.12.30.

4. 문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담당자: 조용성 ☎(02)2133-2897, 전자우편 q369369@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61호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업체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규정 위반업체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연번	대 상 업 체				처분의 원인	예정된 처분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1	서울100100	범신종합건설㈜	이관연	강남구 도산대로 312(논현동) (등기상:성동구 아차산로11길 11, 307호(성수동2가))	등록요건 미달 (사무실 부존재, 전문인력 미충족 등)	등록취소
2	서울110038	옥도종합건설㈜	이영수	양천구 남부순환로 514, 304호(신월동)	등록요건 미달 (사무실 부존재, 전문인력 미충족 등)	등록취소
3	서울120026	인정건설산업㈜	이성준	성동구 아차산로 33, 8층(성수동1가)	등록요건 미달 (사무실 부존재, 전문인력 미충족 등)	등록취소
4	서울120036	㈜모스퍼실리티	오정현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0 (구로동)	등록요건 미달 (전문인력 미충족 등)	등록취소
5	서울110016	남명건설㈜	남명호	영등포구 선유로 146, 1310호 (양평동3가, 이앤씨드림타워)	등록요건 미달 (사무실 부존재, 전문인력 미충족 등)	등록취소
6	서울110104	㈜빌드드림	한기석	서초구 효령로52길 42, 2층(서초동)	등록요건 미달 (전문인력 미충족 등)	등록취소
7	서울110051	주암건설㈜	이원상	서초동 서초중앙로 63-8, 2층 (서초동, 복산빌딩)	등록요건 미달 (전문인력 미충족 등)	등록취소

2. 공고기간 : 2016. 12. 22. ~ 2017. 1. 10.(20일간)

3. 근거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32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4. 청문실시

- 기관명 : 서울특별시청 (부서 : 토지관리과, 담당자 : 허은정, 양미령)
- 주 소 :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서소문동)
(☎ 02-2133-4685~6, FAX 02-768-8920)
- 일 시 : 2017년 1월 12일(목) 14:00부터 17:00까지(3시간)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토지관리과
- 주재자 소속 및 성명 : 토지관리과 지방시설주사 윤기건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우편, FAX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FAX 이용하실 경우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청 토지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64호
서울도시철도 9호선 2단계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위한 열람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7호(2009.5.28)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00호(2010.7.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58호(2010.1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7호(2011.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9호('12.10.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3호(2013.2.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5호(2013.10.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7호(2014.8.1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87호(2015.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3호(2015.11.26.) 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1. 사업계획 개요

가. 도시철도 부지의 위치 및 주요경과지(변동없음)

노선명	기·종점	도시철도 용지의 위치 및 주요경과지	비고
9호선 2단계	강남구 논현동 ~ 강동구 둔촌동 (보훈병원) (L=13.753km)	서울특별시 논현동, 역삼동, 삼성동,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방이동, 오륜동, 방이동, 하남시 감북동, 둔촌동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철도건설사업
- (2) 명 칭 : 서울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1)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2) 성 명 : 서울특별시

라. 사업시행기간

- 송파구 잠실동 ~ 강동구 둔촌동
- 당 초: 2009.12.31 ~ 2015.12.31.
- 변 경: 2009.12.31 ~ 2018.12.31.

마. 사업계획 변경 사항

○ 사업기간 변경 :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 송파구 잠실동 ~ 강동구 둔촌동
- 당 초: 2009.12.31 ~ 2015.12.31.
- 변 경: 2009.12.31 ~ 2018.12.31.

○ 사업계획 변경 내용

[921공구]

- 토지
- 수 용 : 방이동88-24대는 수용에서 지하사용으로 변경
- 지하사용 : 방이동 88-33번지는 지하사용에서 수용으로 변경

- 일시사용 : 서울도시철도 9호선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
935정거장 수용면적(331.9㎡) 보상 전 일시사용 반영
- 935 정거장 출입구 및 환기구, 본선환기구 935S1, 935E1 등 돌출부 지번분할
- 2.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20일간
- 3. 열람도서 : 토지 및 물건조서, 용지도, 종·평면도 등
-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0층, ☎772-7131~2)
송파구청 도시계획과(☎2147-2995)
- ※ 공사관련 문의처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지하철921공구 담당(☎772-7236, 7237)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5호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항1
- 6. 기타사항 :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조서 (수용)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21공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권리의내용	비 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당초 변경	방이동94-3	도	14,565.3	152.0	도로	시	서울특별시				935정거장 출입구 #1 외부 E/V
2	당초 변경	방이동 4	도	1,787.1	118.0	도로	시	서울특별시				935정거장 출입구 #4 환기구 1,2
3	당초 변경	방이동 11	도	3,671.7	110.0	도로	시	서울특별시				935정거장 출입구 #3
4	당초 변경	방이동 88-17	도	39,408.6	22.0	도로	시	서울특별시				935정거장 외부 E/V
5	당초 변경	방이동 88-21	대	82,258.4 81,894.4	364.0 -	조각 전시장	서울올림픽기념국 민체육진흥공단	방이동 88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223-3	지상권	토지분할로 삭제
6	당초 변경	방이동 88-30	대	- 18.0	- 18.0	조각 전시장	서울올림픽기념국 민체육진흥공단	방이동 88				88-21에서분할 935정거장 외부 E/V
7	당초 변경	방이동 88-31	대	- 43.6	- 43.6	조각 전시장	서울올림픽기념국 민체육진흥공단	방이동 88				88-21에서분할 935정거장 환기구 3
8	당초 변경	방이동 88-32	대	- 113.7	- 113.7	조각 전시장	서울올림픽기념국 민체육진흥공단	방이동 88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지상권	88-21에서분할 935정거장 출입구 #2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권리의내용	비 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9	당초 변경	방이동 88-34	대	-	-	조각 전시장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 육진흥공단	방이동 88				88-21에서분할 935정거장 본선 및 정거장 환기구4
10	당초 변경	방이동 88-35	대	-	-	조각 전시장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 육진흥공단	방이동 88				88-21에서분할 935정거장 본선환기구
11	당초 변경	방이동 88-24	대	62.4	62.4	조각 전시장	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지상권	88-21에서 88-24, 88-36 으로 분할 935정거장본체 수용→지하사용
12	당초 변경	방이동 88-36	대	-	-	조각 전시장	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지상권	88-24에서분할 자전거주차장
13	당초 변경	방이동 88-33	대	-	-	조각 전시장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 육진흥공단	방이동 88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지상권	88-21에서분할 자전거주차장 지하사용→수용
14	당초 변경	방이동 88-25	대	86.1	86.1	체육 시설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지상권	88-21에서분할 본선 및 정거장 환기구
15	당초 변경	방이동 88-26	대	251.3	251.3	체육 시설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지상권	88-21에서분할 정거장 출입구
16	당초 변경	방이동 88-27	대	54.7	54.7	체육 시설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지상권	88-21에서분할 정거장 출입구
17	당초 변경	방이동 88-28	대	32.3	32.3	체육 시설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지상권	88-21에서분할 정거장 환기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권리의내용	비 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8	당초 변경	방이동 88-29	대	76.4	76.4	체육 시설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지상권	88-2에서본할 본선 및 정거장 환기구
19	당초 변경	방이동 88-23	대	269.7	269.7	출입구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88-2에서본할 외부출입구
20	당초 변경	방이동 89-27	공	8,762.3	578.3	도로 복지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936정거장 외부출입구 환기구3EA 자전거주차장 피난계단 대차출입구 외부EV
21	당초 변경	방이동 89-28	도	58,895.0	14.4	도로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936정거장 외부EV
합계	당초 변경			210,181.3	2,191.6							
				210,149.2	2,159.5							

토지조서 (지하사용)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21공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사용기간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도시철도 존속시까지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평균 해수면기준 (-)~(m)까지	비고
				지 적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단조 변경	방이동 4	도	1,787.1	1,033.0 1,033.0	도	시	서울특별시				6.34~6.58 (6.42)	8.62 ~ -6.48	935 정거장
2	단조 변경	방이동 94-3	도	14,565.3	940.0 940.0	도	시	서울특별시				6.34 ~6.58 (6.42)	8.62 ~ -6.48	935 정거장
3	단조 변경	방이동 11	도	3,617.7	397.0 397.0	도	시	서울특별시				6.34 ~6.58 (6.46)	8.62 ~ -6.54	935 정거장
4	단조 변경	방이동 88-17	도	39,408.6	1,673.0 1,673.0	도	시	서울특별시				6.52 ~6.60 (6.56)	8.74 ~ -6.42	935 정거장
5	당초 변경	방이동 88-21	대	82,258.4	7,131.3	조각 전시장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 육진흥공단	방이동 88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223-3	지상권	2.46~9.41 (5.83) 3.06~10.62 (8.21) 10.25~10.45 (10.35) 9.22~10.15 (9.68) 9.12~9.18 (9.15) 7.66~9.18 (8.42) 4.09~8.47 (6.84)	13.68 ~ -6.34 지열공(-6.34~-156.34) 15.84 ~ -0.35 5.81 ~ 0.71 6.84 ~ 1.01 7.33 ~ 1.67 8.79 ~ 1.67 8.57 ~ -11.42	935정거장 본체 출입구 #2 환기구 #3 환기구 #4 935S1 935E1 월드터널
6	단조 변경	방이동 88-24	대	-	-	조각 전시장	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지상권	2.46~9.41 (5.83)	13.68 ~ -6.34	935정거장 본체 수용 → 지하사용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 위평균해수면기준 (~)(m까지)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7	당초 변경	방이동 88-6	천	134,174.8	1,134.2 1,134.2	천	구	송파구				7.56 ~12.90 (8.98)	8.66 ~ -11.10	셀드터널 NATM	
8	당초 변경	방이동 88-3	공	440,063.6	3,022.5 3,022.5	공	구	송파구				7.64 ~19.24 (16.27)	9.14 ~ -10.98	셀드터널	
9	당초 변경	방이동 88-2	대	549,431.0	19,553.7 19,553.7	체육 시설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 육진흥공단	방이동 88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지상권	6.61~17.55 (10.84) 2.58~11.68 (4.46) 5.09~5.88 (5.55)	10.74 ~ -10.45 16.02 ~ -12.63 지열공(-162.63) 8.35 ~ -11.32	셀드터널 936 정거장 NATM	
10	당초 변경	방이동 89-27	공	8,762.3	2,689.2 2,689.2	공	시	서울특별시				2.58~11.68 (4.46) 8.47~23.55 (17.11)	16.02 ~ -12.63 10.73 ~ -11.09	936 정거장 터널	
11	당초 변경	방이동 89-28	도	58,895.0	505.7 505.7	도	시	서울특별시				3.31~5.29 (4.63)	15.75 ~ -5.79	936 정거장	
12	당초 변경	방이동 89-26	천	1,360.9	438.1 438.1	천	시	서울특별시				8.47 ~17.38 (12.24)	8.01 ~ -11.25	터널	
합계	당초 변경			1,334,324.7 1,333,992.8	38,517.7 38,517.7										

토지조서 (일시사용-본구조물)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21공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사용기간 당초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변경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당초 변경	방이동 94-3	도	14,565.3	641.0 641.0	도	시	서울특별시				935 정거장
2	당초 변경	방이동 4	도	1,787.1	1,012.0 1,012.0	도	시	서울특별시				935 정거장
3	당초 변경	방이동 11	도	3,617.7	90.0 90.0	도	시	서울특별시				935 정거장
4	당초 변경	방이동 88-17	도	39,408.6	1,778.0 1,778.0	도	시	서울특별시				935 정거장
5	당초 변경	방이동 88-21	대	82,258.4 81,894.4	3,932.6 3,900.5	육외 전시장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방이동 88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223-3	지상권	935 정거장
6	당초 변경	방이동 88-24	대	- 32.1	- 32.1	조각 전시장	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지상권	935 정거장
7	당초 변경	방이동 88-2	대	549,431.0	3,003.0 3,003.0	체육 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방이동 88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지상권	936 정거장
8	당초 변경	방이동 89-27	공	8,762.3	2,642.2 2,642.2	공	시	서울특별시				936 정거장
합계	당초 변경			699,830.4 699,498.5	13,098.8 13,098.8							

토지조서 (일시사용-부대시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사용기간 당초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변경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당초 변경	방이동 45-4	대	1,671.4	48.0	대	재단법인기독교대 한감리회유지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64-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서울농업협동조합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성내동 지점)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115-9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935 출입구 #1
2	당초 변경	방이동 94-3	도	14,565.3	557.0	도	시	서울특별시				935 출입구 #1
3	당초 변경	방이동 4	도	1,787.1	67.0	도	시	서울특별시				935 출입구 #4
4	당초 변경	방이동 11	도	3,617.7	463.0	도	시	서울특별시				935 출입구 #3
5	당초 변경	방이동 88-17	도	39,408.6	40.0	도	시	서울특별시				935 외부E/V
6	당초 변경	방이동 88-21	대	82,258.4	2,399.8	육외 전시장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방이동 88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223-3	지상권	935 출입구 #2 환기구3EA 외부E/V
7	당초 변경	방이동 89-28	도	58,895.0	652.1	도	시	서울특별시				936 환승통로 대체출입구
합 계	당초 변경			202,203.5	4,226.9							
				201,871.6	4,226.9							

토지조서 (일시사용 - 935정거장 수용 전 일시보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사용기간 당초 :

변경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수용 전 까지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당초 변경	방이동 88-30	대	- 18.0	- 18.0	조각 전시장	서울올림픽기념국 민체육진흥공단	방이동 88				88-21번지에서 분할 935 E/V #2
2	당초 변경	방이동 88-31	대	- 43.6	- 43.6	조각 전시장	서울올림픽기념국 민체육진흥공단	방이동 88				88-21번지에서 분할 935 환기구 #3
3	당초 변경	방이동 88-32	대	- 113.7	- 113.7	조각 전시장	서울올림픽기념국 민체육진흥공단	방이동 88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지상권	88-21번지에서 분할 935 출입구 #2
합 계	당초 변경			- 175.3	- 175.3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사용기간 당초 :

변경 : 2015년 12월 30일로부터 수용 전 까지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당초 변경	방이동 88-34	대	- 103.1	- 103.1	조각 전시장	서울올림픽기념국 민체육진흥공단	방이동 88				88-21번지에서 분할 935 환기구 #4, 본선환기구
2	당초 변경	방이동 88-35	대	- 53.5	- 53.5	조각 전시장	서울올림픽기념국 민체육진흥공단	방이동 88				88-21번지에서 분할 본선환기구
합 계	당초 변경			- 156.6	- 156.6							

서울시교육청공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16-19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 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업무를 취급할 차기 금고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지정은행 : 농협은행(주)
2. 지정기간 : 2017. 1. 1. ~ 2020. 12. 31.(4년)
3. 금고의 수 : 1금고(단일금고, 특정기금 포함)
5. 금고의 주요업무
 - 가. 교육비특별회계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보관, 세출금의 지급
 - 나. 세입세출외현금 및 각종 잡종금의 수납·보관 및 지급
 - 다.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사무, 여유자금의 예치 및 관리
 - 마. 교육전자금융서비스(e-교육금고) 제공
 - 바. 세입·세출내역 전산 기록유지
 - 사.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2016-118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0-92호(2010.12.02)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2-59호(2012.06.28.)로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을지로2가 161-1번지 일대 “명동 제3구역 지하연결통로 설치공사”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61-1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
- 2) 명 칭 : 명동 제3구역 지하연결통로 설치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1)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 폭 34.9m, 연장 42.1m, 면적 628.7㎡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이민석)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80-1, 10층(을지로2가, 보승빌딩)

마. 변경인가 신청일 : 2016.10.18

바. 변경인가 신청의 요지 : 건축설계변경 및 준공예정일 변경

사.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1)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개월內 ~ 착수일로부터 31개월內
- 2)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개월內 ~ 착수일로부터 65개월內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따로붙임

자.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준공 후 무상귀속(관련기관)

차.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재생과(☎3396-57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토지조서

번 호	위 치	지 번	지 목	면 적(m ²)		성 명	소유자		비 고
				지 적	편 입			주 소	
1	을지로2가	148-85	도	764.6	0.1	서울특별시			
2	을지로2가	149-10	도	5,899.8	96.6	국 건설부			
3	을지로2가	157-1	대	145.5	123.5	명동도시환경 정비사업(주)	서울 중구 을지로 80-1,10층 (을지로2가,보승빌딩)		
4	을지로2가	157-2	도	201.6	22.1	서울특별시			
5	을지로2가	159	도	228.1	25.9	국 건설교통부			
6	을지로2가	161-1	대	653.8	257.1	명동도시환경 정비사업(주)	서울 중구 을지로 80-1,10층 (을지로2가,보승빌딩)		
7	을지로2가	161-2	도	70.1	70.1	국 전매청			
8	을지로2가	162	대	469.7	33.3	명동도시환경 정비사업(주)	서울 중구 을지로 80-1,10층 (을지로2가,보승빌딩)		
합 계				8,433.2	628.7				

○ 구분지상권설정 조서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을지로2가	157-1	대	145.5	123.5	명동도시환경 정비사업(주)	서울 중구 을지로 80-1,10층 (을지로2가, 보승빌딩)	
2	을지로2가	161-1	대	653.8	257.1	명동도시환경 정비사업(주)	서울 중구 을지로 80-1,10층 (을지로2가, 보승빌딩)	
3	을지로2가	162	대	469.7	33.3	명동도시환경 정비사업(주)	서울 중구 을지로 80-1,10층 (을지로2가, 보승빌딩)	
합계				1,269	413.9			

◆ 중구고시 제2016-121호

도시관리계획(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430호(2001.12.26)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53호(2009.11.19) 및 동 고시 제2014-365호(2014.10.23)로 변경결정 고시된 우리구 약수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6년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6.12.01)를 통해 의결된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중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중구 신당동 368-62번지 일원 약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 도시기반시설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사항임

2.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사항)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류	179	5	국지 도로	74	신당동 368-101	신당동 368-75	일반 도로	-	서고 제2014-365호 (2014.10.23.)	
변경	소로	3류	179	5	"	"	"	"	"	"	"	선형 변경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179	소로3-179	• 일부구간 선형변경	• 현황상 도로로 사용 중인 368-111번지 전체를 도시계획도로에 편입하여 관리하고자 도로 선형 일부 변경함

- 획지 및 대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번호	면 적(㎡)	구 역	필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C11	1	2,805.4	RC11	신당동	367-12	141.1		공동개발 권장
					신당동	367-13	149.0		
					신당동	367-26	111.5		
					신당동	367-4	56.0	공동개발 지정	
					신당동	367-6	76.0		
					신당동	367-7	73.0		
					신당동	367-8	76.0		
					신당동	367-9	36.0		
					신당동	367-10	36.0		
					신당동	367-11	43.0		
					신당동	367-15	99.0		
					신당동	367-16	50.0		
					신당동	367-17	46.0		
					신당동	367-19	93.0		
					신당동	367-28	26.0		
					신당동	367-29	13.0		
					신당동	367-33	46.0		
					신당동	367-34	13.0		
					신당동	368-52	68.1		
					신당동	368-62	36.7		
					신당동	368-63	59.4		
					신당동	368-111	3.2		
					신당동	372-29	96.3		
					신당동	372-40	127.5		
					신당동	372-41	33.0		
					신당동	372-42	248.0		
					신당동	372-138 2	122.0		
					신당동	366-1	125.3	공동개발 지정	
					신당동	372-268 7	2.4		
					신당동	367-22	195.2	공동개발 지정	
신당동	366-179	48.3							
신당동	366-180	20.0							
신당동	367-20	56.0							
신당동	367-21	46.0							
신당동	368-120	4.0							
신당동	367-24	20.0	공동개발 지정						
신당동	368-73	20.0							
신당동	368-74	264.4							
신당동	368-119	26.0							

구분	가구번호	번호	면 적(㎡)	구 역	필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변경	C11	1	2,802.2	RC11	신당동	367-12	141.1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신당동	367-13	149.0	
					신당동	367-26	111.5	
					신당동	367-4	56.0	
					신당동	367-6	76.0	
					신당동	367-7	73.0	
					신당동	367-8	76.0	
					신당동	367-9	36.0	
					신당동	367-10	36.0	
					신당동	367-11	43.0	
					신당동	367-15	99.0	
					신당동	367-16	50.0	
					신당동	367-17	46.0	
					신당동	367-19	93.0	
					신당동	367-28	26.0	
					신당동	367-29	13.0	
					신당동	367-33	46.0	
					신당동	367-34	13.0	
					신당동	368-52	68.1	
					신당동	368-62	36.7	
					신당동	368-63	59.4	
					신당동	372-29	96.3	
					신당동	372-40	127.5	
					신당동	372-41	33.0	
					신당동	372-42	248.0	
					신당동	372-1382	122.0	
					신당동	366-1	125.3	공동개발 지정
					신당동	372-2687	2.4	
					신당동	367-22	195.2	공동개발 지정
					신당동	366-179	48.3	
					신당동	366-180	20.0	
					신당동	367-20	56.0	
					신당동	367-21	46.0	
					신당동	368-120	4.0	
					신당동	367-24	20.0	공동개발 지정
					신당동	368-73	20.0	
					신당동	368-74	264.4	
					신당동	368-119	26.0	

※ 상기 필지 외 기 결정내용 변경 없음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당동 368-62번지 일원	- C11 가구면적 축소 : 2,805.4㎡ → 2,802.2㎡, 감) 3.2㎡ - 신당동 368-111번지에 대한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삭제	현황상 도로로 사용 중이고,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공동개발 추진이 어려운 신당동 368-111번지를 도시계획도로로 편입 · 관리함으로써 재난위험시설물인 약수시장의 원활한 정비를 도모 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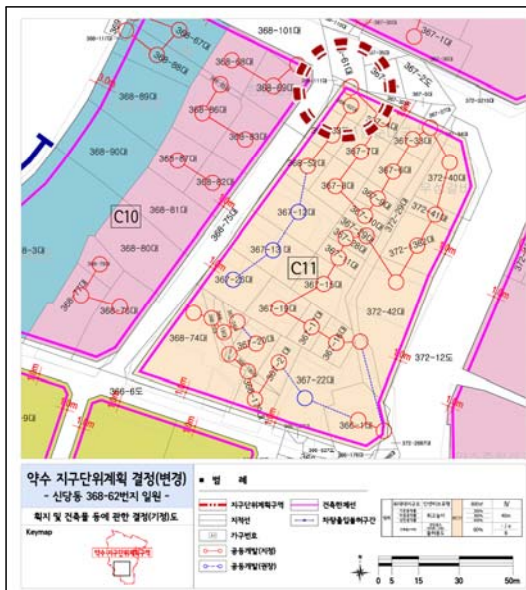
3. 관계도면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8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 중랑구고시 제2016-6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529-2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중랑구청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의한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중랑구 망우동 529-2일대	0	1,178	1,178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나.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주차장	○ 위치 : 중랑구 망우동 529-2일대 ○ 면적 : 1,178㎡ 신설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3. 관계도서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지형도면(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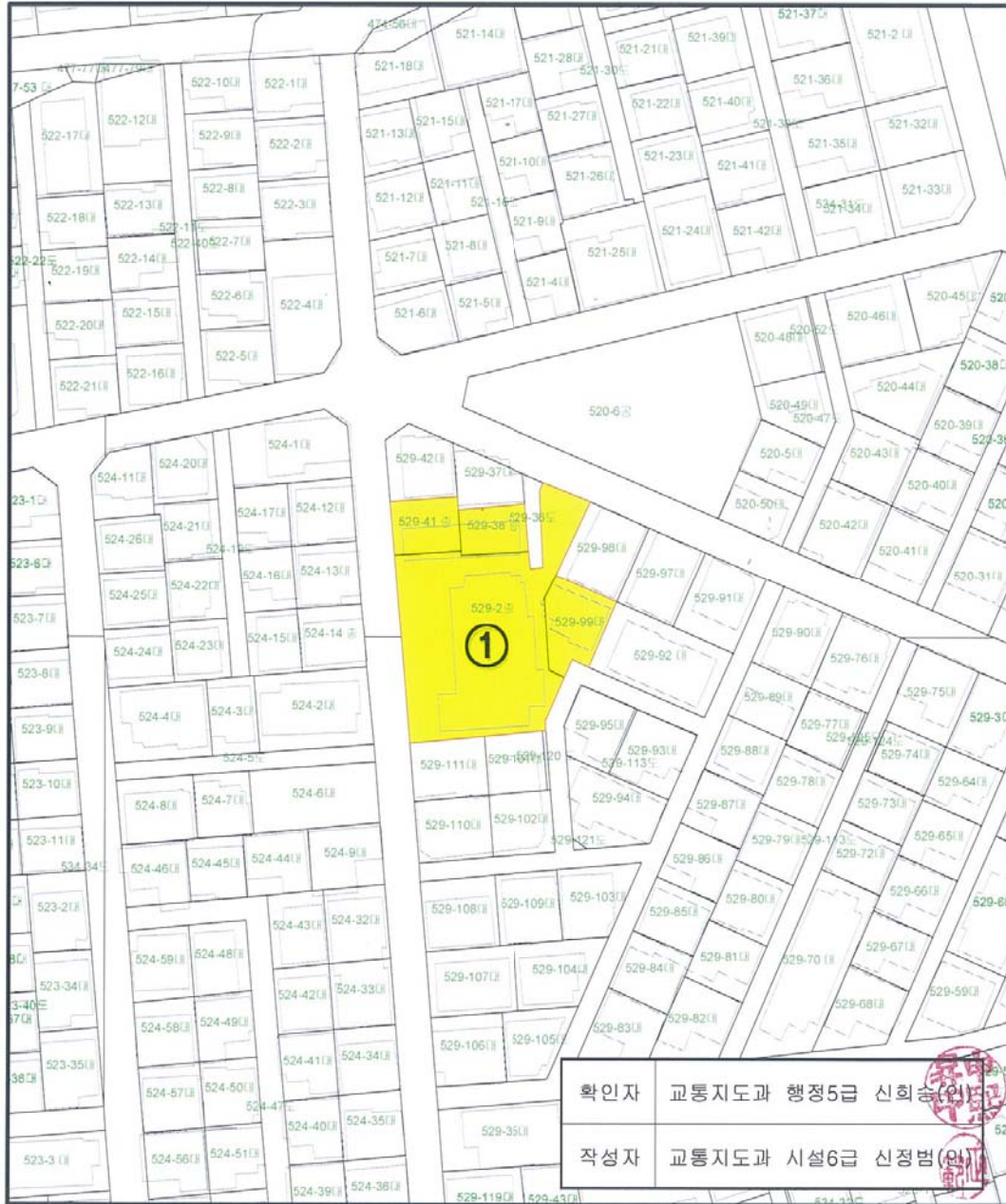
※ 붙임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4.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개발과(☎ 2094-2179) 및 교통지도과(☎ 2094-265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

(위치 : 중랑구 망우동 529-2일대, 축척 : 1/1,000)



확인자 교통지도과 행정5급 신희승(인)
 작성자 교통지도과 시설6급 신정범(인)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중랑구 망우동 529-2 일대	0	1,178	1,178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범 례	
주차장(신설)	

◆ 성북구고시 제2016-183호

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고시 전까지 계획방향과 상충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지역환경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성 북 구 청 장

1. 제한구역

- 구역명 : 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 위 치 : 성북구 정릉동 465-1번지 일대
- 면 적 : 63,100m²

2. 제한사유

- 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계획방향과 상충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 등 지역환경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3.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한 것으로 봄

4. 제한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허가(단,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사항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제3항에 의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 제외)
- 건축법 제83조에 의한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 지적법 제19조에 의한 토지의 분할

5. 제한 예외대상

-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기착공된 사업

- 기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사항
-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의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
- 성북구에서 발주하는 시설물의 건축 및 대수선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3개층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8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규모 이외의 건축물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① 화재, 천재지변에 따라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 ②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 ③ 건축하고자 하는 획지의 건축계획이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 및 수립 중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④ 공공시설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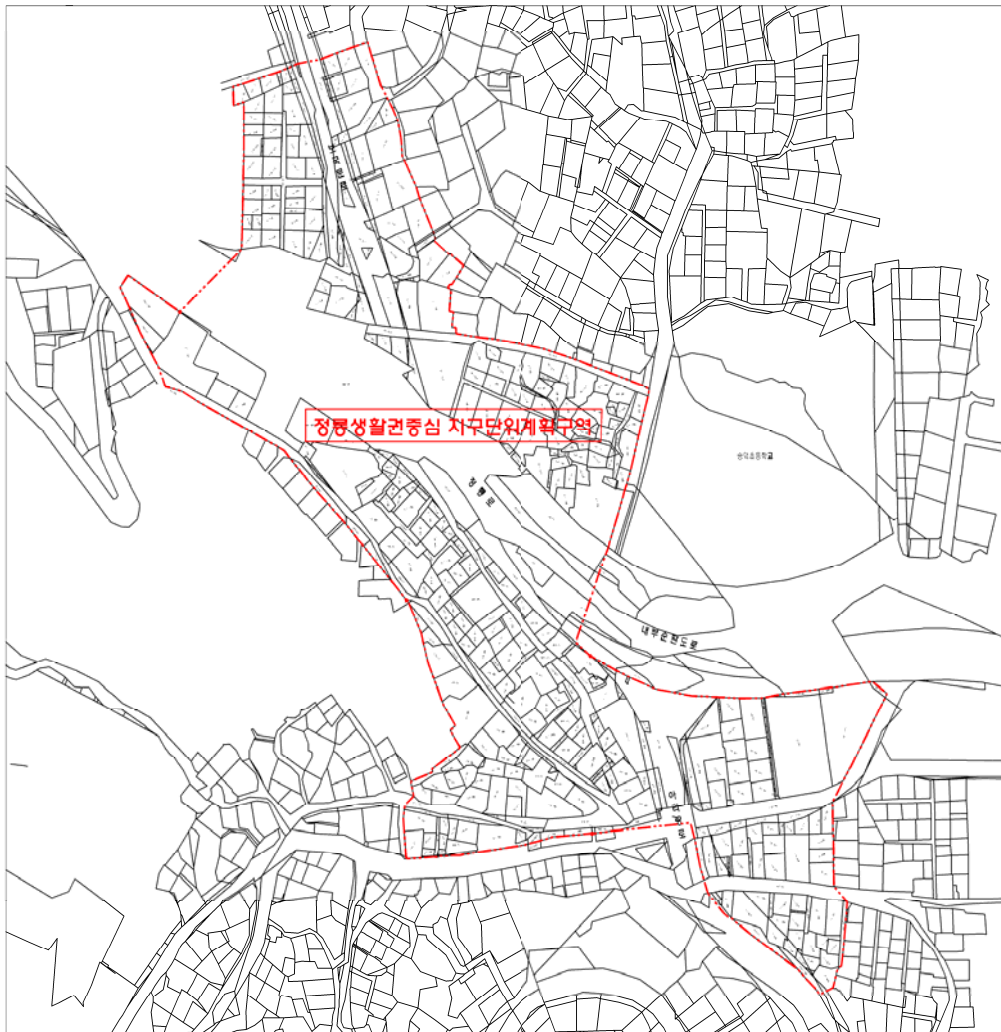
6.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본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재생디자인과(☎2241-2765)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도봉구고시 제2016-163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16-148호(2016.11.17.)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16-1144호(2016.12.01.)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 한 『전형필가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교통지도과(☎2091-4212)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22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방학동 산 58-13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명칭 : 전형필가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다. 사업규모

- 주차장조성 : 지상평면식 주차장 15면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720번지)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17.12.31까지

바. 토지 및 물건조서 : 별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교통지도과(☎2091-4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명 : 진형필가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관리의 내용	
1	방학동 산58-13	임야	739	739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221(도곡동)			김우형		

물 건 조 서

사업명 : 진형필가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권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관리의 내용	
1	방학동 산58-13	헬스		39m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221 (도곡동)	김우형				
		담장	블록	35m						
		문주	블록	1개						
		콘크리트 포 장		739㎡						

◆ 노원구고시 제2016-11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1992-6호(1992. 2. 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1993-49호(1993. 9. 15.)로 지적승인고시 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공고 제2016-537호(2016. 6. 30.)로 열람공고를 완료한 『중계본동 현대6차아파트앞 삼거리 도로선형개량』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 합니다.
2.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토목과에 비치하며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22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업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규모	결정 고시일자	지형도면 고시일자
노원구 중계동 34-1 ~ 중계동 37-4	중계본동 현대6차아파트앞 삼거리 도로선형개량	B=0.5~3.5m L=30m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1992-6호 (1992. 2. 28.)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1993-49호 (1993. 9. 15.)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수

- 성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701-1)

다. 사업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1년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토목과(전화 : 02-2116-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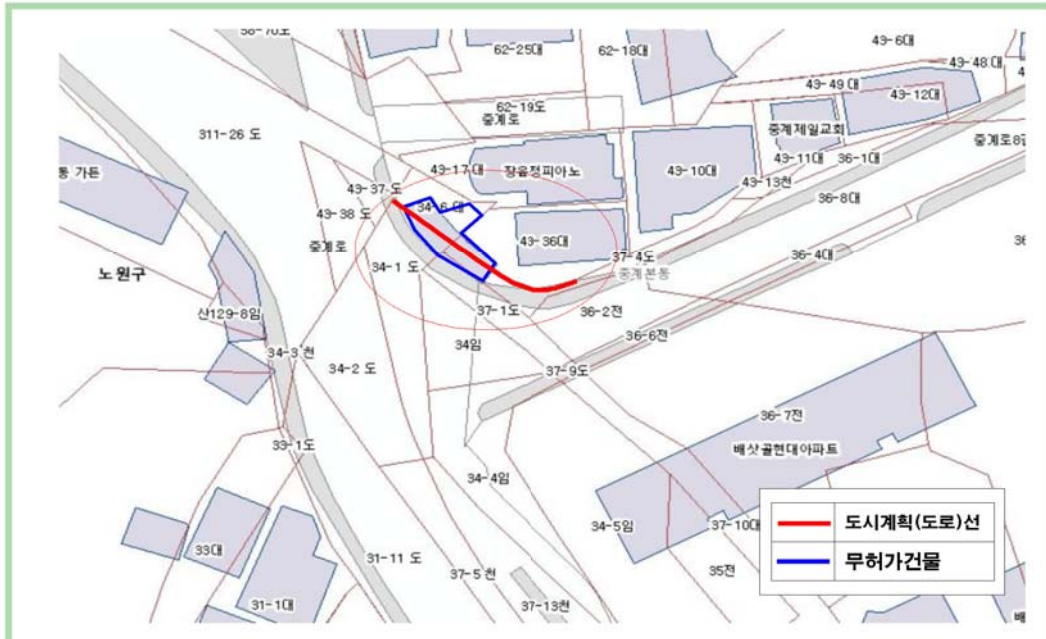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1	노원구 중계동 34-1	도로			도로 및 건물점유	건설부						
2	노원구 중계동 37-1	도로			도로 및 건물점유	노원구						
3	노원구 중계동 37-4	도로			도로 및 건물점유	노원구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34-1 외2필지	건축물 (1층)	세멘조	41㎡	음식점 (주점)	김오수	노원구 중계로 116 (노원구 중계동 34-1호)					무허가
2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34-1 외2필지	수조 등		1		김오수	노원구 중계로 116 (노원구 중계동 34-1호)					집 영

선형개량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현 황 사 진

◆ 마포구고시 제2016-165호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2014-146(2014.4.17)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마포구 동교동 167-13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마 포 구 청 장

1. 변경 결정 취지

-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마포구 동교동 167-13 일대 획지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함.(경미한 사항)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중 ‘공동개발결정(변경)조서’ : 첨부 참조
-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 변경내용 없음

3. 관계도면 : 첨부 지형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임으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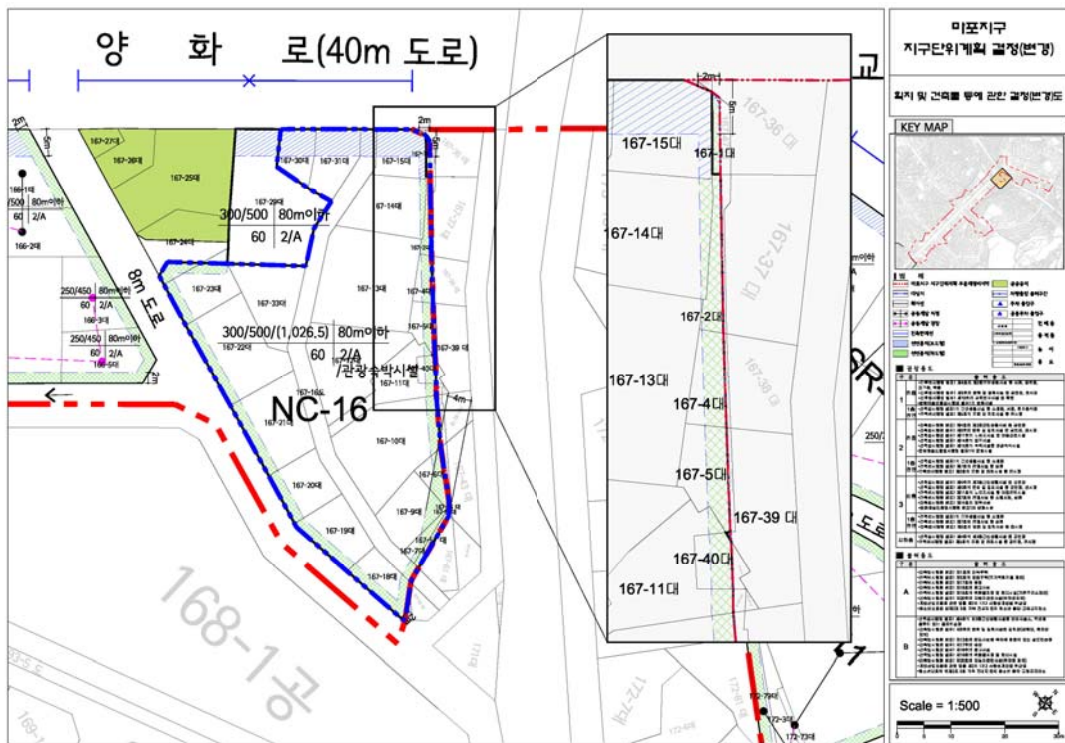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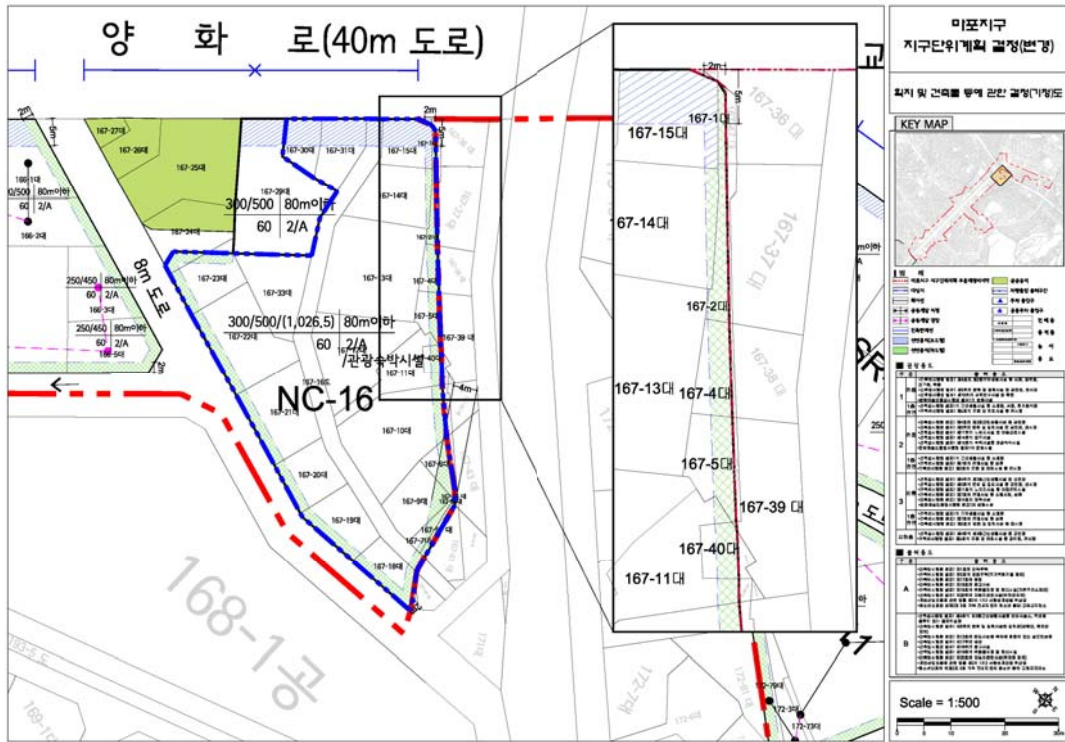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7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중 ‘공동개발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NC-16	3,605.4	동교동	167-1	5.6	2,745.0	획지계획	토지소유자간 공동개발 미합의에 따른 획지변경
			동교동	167-2	21.4			
			동교동	167-4	28.6			
			동교동	167-5	36.9			
			동교동	167-6	36.5			
			동교동	167-7	18.2			
			동교동	167-9	101.8			
			동교동	167-10	270.4			
			동교동	167-11	102.4			
			동교동	167-12	215.9			
			동교동	167-13	308.1			
			동교동	167-14	141.2			
			동교동	167-15	80.7			
			동교동	167-16	281.1			
			동교동	167-18	76.5			
			동교동	167-19	105.1			
			동교동	167-20	98.5			
			동교동	167-21	173.9			
			동교동	167-22	211.2			
			동교동	167-23	99.4			
			동교동	167-24	15.4			
			동교동	167-30	57.5			
			동교동	167-31	93.9			
			동교동	167-33	135.9			
			동교동	167-39	0.2			
			동교동	167-40	15.4			
			동교동	167-55	0.9			
			동교동	167-56	0.1			
			동교동	167-57	12.3			
			동교동	167-29	326.0	326.0	획지계획	
동교동	167-24	74.0	469.7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동교동	167-25	293.9						
동교동	167-26	74.4						
동교동	167-27	27.4						
동교동	167-23	7.0	64.7	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동교동	167-24	57.7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 면적(㎡)	계획내용	비고
변경	NC-16	3,605.4	동교동	167-2	21.4	2,739.2	획지계획	국유지 매각 불가에 따른 획지변경
			동교동	167-4	28.6			
			동교동	167-5	36.9			
			동교동	167-6	36.5			
			동교동	167-7	18.2			
			동교동	167-9	101.8			
			동교동	167-10	270.4			
			동교동	167-11	102.4			
			동교동	167-12	215.9			
			동교동	167-13	308.1			
			동교동	167-14	141.2			
			동교동	167-15	80.7			
			동교동	167-16	281.1			
			동교동	167-18	76.5			
			동교동	167-19	105.1			
			동교동	167-20	98.5			
			동교동	167-21	173.9			
			동교동	167-22	211.2			
			동교동	167-23	99.4			
			동교동	167-24	15.4			
			동교동	167-30	57.5			
			동교동	167-31	93.9			
			동교동	167-33	135.9			
			동교동	167-40	15.4			
			동교동	167-55	0.9			
			동교동	167-56	0.1			
			동교동	167-57	12.3			
			동교동	167-1	5.6	5.6	-	국유지
			동교동	167-39	0.2	0.2	-	
			동교동	167-29	326.0	326.0	획지계획	(변경없음)
			동교동	167-24	74.0	469.7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없음)
			동교동	167-25	293.9			
			동교동	167-26	74.4			
			동교동	167-27	27.4	64.7	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없음)
			동교동	167-23	7.0			
			동교동	167-24	57.7			

■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 구로구고시 제2016-18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81-98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구로구청장

가. 결정취지

- 녹지 및 휴게장소 확충을 위한 「생활권 공원녹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오류동 텃밭 공원을 사업취지에 맞게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하는 사항임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신설	-	공공공지	오류동 81-98 외 2필지	463	-	녹지 및 휴게장소 확충을 위한 「생활권 공원녹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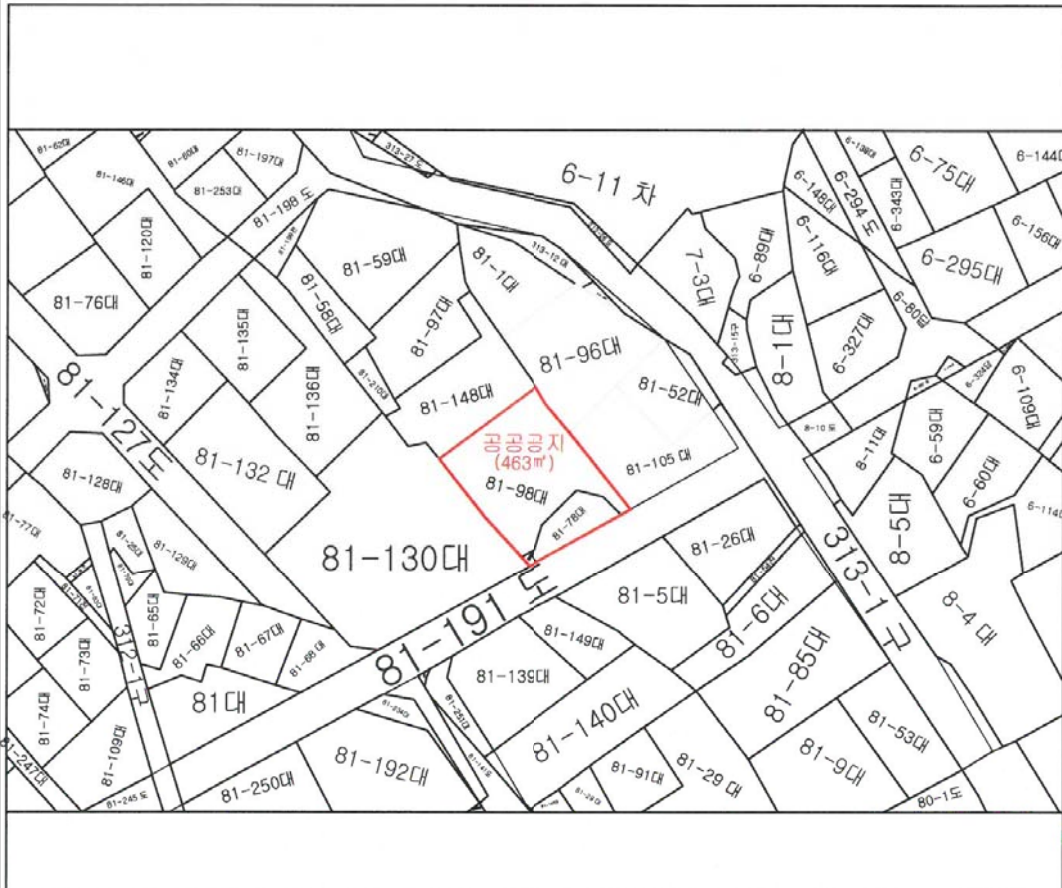
다.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구로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습니다.
-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관계도서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 도시계획과(☎02-860-295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S = 1:1,000



구분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구로구 도시계획과	구로구 도시계획과	구로구 도시계획과
직위	-	도시계획 팀장	도시계획 과장
직명	지방시설 주사보	지방시설 주사	지방시설 사무관
성명	유인오	민광식	이기호
확인인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공지	오류동 81-98 외 2필지	-	증463	463	-	

범례 : 신설 —

◆ 강동구고시 제2016-18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85호(2006.5.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329호(2006.9.2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6-40호 (2016.3.31.)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95번지 외 1필지 암사역사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강 동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95 외 1필지
-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강동구청장
-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암사역사공원 조성
- 라. 사업의내용 : 공원조성(토지보상)
- 마. 규 모 : 토지보상 3,451㎡
- 바. 사업기간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6. 12. 31.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7. 12. 31.
-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생략
-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구 공 고

◆ 마포구공고 제2016-1242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공고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 도시계획과(☎3153-9355) 및 사업부서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22일

마 포 구 청 장

☐ 단계별집행계획 총괄표

시설별	시행기간												비고
	계			1단계(1~3년차)			2-1단계(4~5년차)			2-2단계(6년차이후)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계	19	228,682	187,857	2	2,860	1,500	15	223,706	185,203	2	2,116	1,154	
도로	15	56,964	66,784	2	2,860	1,500	11	51,988	64,130	2	2,116	1,154	
공원	4	171,718	121,073	-	-	-	4	171,718	121,073	-	-	-	

☐ 단계별집행계획 조서

(단위: 백만원)

사업 · 시설 부분	우선 순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실효 시기
		사업명	사업 기간	기타 주요 내용	총 사업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재정적			비재 정적	1단계			2-1단계		2-2단 계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6	'17	'18		'19	
도로	1	망원동 211-43 ~ 망원동 453-1	'18 ~'19	B=10m L=780m A=7,800㎡	1,500	1,500	-	1,500	-	-	-	-	500	1,000	-	-	'20.07.
도로	2	대흥동 50-2 ~ 대흥동 338	'18 ~'19	B=8m L=540m A=4,320㎡	16,620	16,620	-	16,620	-	-	-	-	1,000	15,620	-	-	'20.07.

사업 · 시설 부분	우선 순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실효 시기	
		사업명	사업 기간	기타 주요 내용	총 사업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재정적			비재 정적	1단계			2~1단계		2~2단 계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6	'17	'18		'19		'20
도로	3	망원동 401-4 ~ 망원동 34	'20	B=6m L=188m A=1,128㎡	330	330	-	330	-	-	-	-	-	-	330	-	'20.07.	
도로	4	망원동 57-33 ~ 망원동 57-207	'20	B=6m L=530m A=3,180㎡	7,909	7,909	-	7,909	-	-	-	-	-	-	7,909	-	'20.07.	
도로	5	용강동 112-6 ~ 용강동 120-1	'20	B=6m L=62m A=372㎡	106	106	-	106	-	-	-	-	-	-	106	-	'20.07.	
도로	6	노고산동 109-4 ~ 신수동 81-121	'20	B=12m L=334m A=4,008㎡	400	400	-	400	-	○	-	-	-	-	400	-	'20.07.	
도로	7	성산동 150-12 ~ 성산동 150-14	'20	B=10m L=40m A=360㎡	613	613	-	613	-	-	-	-	-	-	613	-	'20.07.	
도로	8	상수동 318 ~ 서교동 365	'20	B=15~35m L=700m A=19,300㎡	25,406	25,406	-	25,406	-	-	-	-	-	-	25,406	-	'20.07.	
도로	9	성산동 349-1 ~ 성산동 340-1	'20	B=25m L=350m A=8,750㎡	1,750	1,750	-	1,750	-	-	-	-	-	-	1,750	-	'20.07.	
도로	10	동교동 193-1 ~ 망원동 453-7 (동교로)	'20	도로가각 A=1,500㎡	8,692	8,692	-	8,692	-	-	-	-	-	-	8,692	-	'20.07.	
도로	11	염리동 38-25 ~ 염리동 81-77	'20	B=6m L=61m A=366㎡	320	320	-	320	-	-	-	-	-	-	320	-	'20.07.	
도로	12	염리동 148-9 ~ 염리동 128-19	'20	B=10m L=110m A=1,100㎡	1,328	1,328	-	1,328	-	-	-	-	-	-	1,328	-	'20.07.	
도로	13	염리동 154-31 ~ 염리동 173-4	'20	B=8 L=333 A=2,664㎡	656	656	-	656	-	-	-	-	-	-	656	-	'20.07.	
도로	14	염리동 81-96 ~ 염리동 81-8	'21 ~'24	B=4 L=101 A=404㎡	604	604	-	604	-	-	-	-	-	-	-	604	'35.05.	
도로	15	염리동 89일대 ~ 염리동 139일대	'21 ~'24	B=8 L=214 A=1,712㎡	550	550	-	550	-	-	-	-	-	-	-	550	'35.05.	
공원	1	샛터근린공원	'17 ~'20	면적 31,100㎡	17,306	17,306	-	17,306	-	-	-	-	-	-	8,653	8,653	-	'20.07.
공원	2	노고산근린공원	'17 ~'20	면적 52,936㎡	95,995	95,995	-	95,995	-	-	-	-	-	-	47,997	47,998	-	'20.07.
공원	3	와우근린공원	'17 ~'20	면적 87,432㎡	7,272	7,272	-	7,272	-	-	-	-	-	-	3,886	3,386	-	'20.07.
공원	4	양지어린이공원	'17 ~'20	면적 250㎡	500	500	-	500	-	-	-	-	-	-	-	500	-	'20.07.

◆ 동작구공고 제2016-1103호

용봉정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된 용봉정근린공원의 조성(변경)계획을 수립 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동 작 구 청 장

가.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산3-9번지 일대

나. 공원면적 : 80,890㎡

다.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

- 녹지 및 기타 : 42,201.9㎡
- 휴양시설 : 3,126㎡ → 3,277.54㎡ (증151.54㎡)
 - 휴게소 151.54㎡ (신설)
- 운동시설 : 2,276㎡ → 2,600.80㎡ (증324.80㎡)
 - 체육관 증축 1,126.97㎡_연면적 (신설)
 - 체육관 증축 324.80㎡_건축면적 (신설)
- 편익시설 : 2,644㎡ → 2,735.91㎡ (증91.91㎡)
- 녹지 및 기타 : 39,597.2㎡ → 39,028.95㎡ (감568.25㎡)

라. 관계서류 : 열람장소에 비치

마.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로부터 14일간(2016.12.23.~2017.1.5.)

바. 열람장소 : 동작구 공원녹지과(☎820-9846)

사. 본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공고 제2016-1523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초구고시 제70호(2016.07.21.)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반포동 520-3번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사업(공공청사)공사가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 초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 나. 명칭 : 서울지방조달청 대수선 및 용도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서울지방조달청장
- 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17(반포동520-3번지)
3. 공사완료(준공)현황

시설명 (위치)	사업규모	실시계획인가	공사기간	공사준공 (준공검사일)
서울지방조달청 (서초구 반포동 520-3번지일대)	- 대지면적 : 27,720㎡ - 건축물규모 : 2개동 · 건축면적 : 3,468.93㎡ · 연면적 : 22,921.2㎡ - 사업세부내용(별관동) · 보 해체 · 용도변경(구내매점1,332㎡, 1층근린생활시설(의원) 108㎡) · 수위실철거(40㎡)	서초구 고시 제2016-70호	2016.7. ~ 2016.12.	2016.12.15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7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공고 제2016-148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09호(2015. 10. 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강일삼거리 확장공사」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2일
강 동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37-4 ~ 강일동 601-4
-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다. 사업의 명칭 : 강일삼거리 확장공사
- 라.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폭 25 → 38m, 연장 300m
-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바.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8. 12. 31일 까지
- 사. 열람기간 : 공보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아. 열람장소 :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45)

-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 ☐ 사업명 : 강일삼거리 확장공사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연번	소재지번	지 적(㎡)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1	고덕동 137	9	9	전	9/2141	심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3* 명일엔지아파트 10*-18**				
					2132/2141	에스에이치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236/2057	이상*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1*** 그렌델 시에이 콩포스트리트 31*				
2	고덕동 산18	944	944	임	236/2057	이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0* 효자촌 6**-8**				
					236/2057	이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52*, 10*동 12**호(풍납동)				
					236/2057	이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30*-2 은마아파트 3*동 10**호				
					1113/2057	에스에이치공 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연번	소재지번	지 적(㎡)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3	강일동 600-6	205	205	임	51.25/214	이상*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1*** 그렌델 시에이 콩포드스트리트 31*				
					51.25/214	이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0* 효자촌 6**~8**				
					51.25/214	이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52*, 10*동 12**호(풍납동)				
					51.25/214	이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30*-2 은마아파트 3*동 10**호				
					9/214	에스에이치공 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4	강일동 600-14	23	23	임	5.75/45	이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52*, 10*동 12**호(풍납동)				
					39.25/45	에스에이치공 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5	강일동 606	45	45	답		김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 4**동 2**호(장동, 아울림****)	강동농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31(암사동) (강일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뽕촌지점)	근저당권	

연번	소재지번	지 적(㎡)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의관리	
6	강일동 607-1	200	200	답	김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 4**동 2**호 (중동, 어울림****)		강동농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31(암사동) (강일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7	강일동 605	84	84	답	최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2*길 **, 52*동 7**호 (묵동, 신내**아파트)	84/59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평촌지점)	근저당권	
		507/591			에스에이치공 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수용 및 사용할 물건조서

- ☐ 사업명 : 강일삼거리 확장공사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류	용도	구조 및 규격	평면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1	고덕동 산18	지장물	비닐 하우스	철골 및 천막 6m×5m	24		이상*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1*** 그렌델 시에이 콩코드스트리트 31*				
							이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0* 호자촌 6**-8**				
							이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52*, 10*동 12**호(풍납동)				
							이민*	서울 강남구 대치동 30*-2 은마아파트 3*동 10**호				
							에스케이 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지장물	수목	-	61주		이상*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1*** 그렌델 시에이 콩코드스트리트 31*				
							이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0* 호자촌 6**-8**				
							이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52*, 10*동 12**호(풍납동)				
							이민*	서울 강남구 대치동 30*-2 은마아파트 3*동 10**호				
							에스케이 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2	강일동 607-1	지장물	비닐 하우스	철골 및 천막 10m×20m	107		김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27, 403동 201호(중동, 어울림타운하우스)				

◆ 강동구청고 제2016-149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09호(2015. 10. 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강일삼거리 확장공사」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의견 청취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2일

강 동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37-4 ~ 강일동 601-4
-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다. 사업의 명칭 : 강일삼거리 확장공사
- 라.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폭 25 → 38m, 연장 300m
-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바.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8. 12. 31일 까지

2. 열람 및 주민의견 제출방법

- 가. 열람기간 : 공고한 날부터 14일간
- 나. 열람장소 :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45)
- 다.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의견서 제출
- ※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로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28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케이앤피인베스트 먼트(주) (대표 황윤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21	- 수상 : 1,200㎡ - 육상 : 571.9㎡	여의도유선장 대체건조	2016.12.15. ~ 2017.4.30	2016. 12.14.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28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49-7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174-1	선박 4척 (부선 4척)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대기	2016.12.19. ~ 2016.12.31.	2016. 12.19.

사업소공고

◆ 관악소방서공고 제2016-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관 악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업 종 (등급 및 분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방시설관리업	제관악2016-1호 (2016.12.19.)	주식회사 관악소방안전 (110111-6242616)	최영재 (1977.6.1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128, 3층(신림동)	(02) 6268-1119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악소방서 위험물안전팀(☎ 883-790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고시 제2016-1호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고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분담금 부과·징수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단위 : 원/톤)

폐기물 종류	반입수수료	시행일	비고
생활소각재	44,985	2017. 1. 1.	생활폐기물과 동일
	55,005	2018. 1. 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446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장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당인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초구 반포동 일원
 - 면적 : 영구 30,664㎡, 일시 15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열배관 매설 1식

- 내역 : · 열배관 매설 1식(변경없음)
 - 열배관 보수공사를 위한 관로 주변 일시 점용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4.10.21.~2019.10.20.(2016.12.14.~2017.01.13.)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456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케이티 대표이사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34 KT 수서지사 3층 액세스망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613-14번지
 - 면적 : 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이동통신용 전주설치
 - 내역 : 전주설치(H=16m, 근입깊이 2.5m) 1개소
5. 점용기간 : 2016.01.16.~2021.01.15.(5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457호**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공사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고양권관리단장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주로 326(신항동 300)
3. 공사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536-1, 487-320, 139, 138번지

- 면 적 : 영구 12,111㎡, 일시 328.69㎡
-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일산신도시 및 고양시 일원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도관 매설
 - 내 역 : 상수도관 매설(D=1,500mm) L=3,196m(219m 이설)
- 5. 공사기간 : <당초>2016.08.01.~2016.12.31.
<변경>2016.08.01.~2017.01.25.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